경제기획원 통계국 조사통계과 서관상서

指定統計調査票集

1 9 7 8

통계청자료실
B0003192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경제기획원 통계국 접 시행령 시행 시분 수

指定統計調査票集

1 9 7 8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을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에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을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에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머 리 말

이 조사표집은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각종 통계에 대하여 어떤 통계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작성 발표되고 있는가를 집약적으로 수록 소개한 "한국통계 조사현황" 보완편입니다.

한국통계조사현황에서는 각종 통계의 작성 방법과 결과 공표내용을 편리하게 볼수 있도록 해설하여 통계자료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이들 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 양식은 소개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이들 각종 통계조사의 조사표를 수집 정리하여 한권의 책에 수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조사되는 가를 알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통계의 조사표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1972년도에 이어 두번째로 지정통계로 지정된 통계조사 32종의 조사표만을 수록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주요일반통계의 조사표도 아울러 수록하여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사표집이 한국통계조사현황과 더불어 통계의 바른 이용에 널리 도움되기 바랍니다.

1978. 10.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장 황 진 현

차 례

지정통계	제 1 호	인구센서스(경제기획원)	5
〃	제 2 호	주택센서스(〃)	5
〃	제 3 호	인구동태조사(〃)	15
〃	제 4 호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기획원)	21
〃	제 5 호	농업센서스(농수산부)	22
〃	제 6 호	광공업센서스(경제기획원)	24
〃	제 7 호	상주인구조사(서울시·부산시·도)	28
〃	제 8 호	농가경제조사(농수산부)	30
〃	제 9 호	농산물생산비조사(농수산부)	43
〃	제 10 호	가계조사(경제기획원)	51
〃	제 11 호	생산동태조사(경제기획원)	53
〃	제 12 호	농촌물가및 임료금조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55
〃	제 13 호	전국소매물가조사(경제기획원)	57
〃	제 14 호	도소매업센서스 (〃)	63
〃	제 15 호	식량작물생산량조사(농수산부)	64
〃	제 16 호	농업기본통계조사(농수산부)	68
〃	제 17 호	광공업통계조사(경제기획원)	71
〃	제 18 호	사업체노동실태조사(노동청)	75
〃	제 19 호	매월노동통계조사(노동청)	76
〃	제 20 호	직종별임금조사(노동청)	77
〃	제 21 의 1 호	국부통계조사(정부, 공공단체자산부문조사) (한국은행)	80
〃	제 21 의 2 호	국부통계조사(법인자산부문조사) (한국산업은행)	84

지정통계	제 21 의 3 호	국부통계조사(개인자산부문조사) (농수산부)	89
〃	제 21 의 3 호	국부통계조사(개인자산부문조사) (중소기업은행)	95
〃	제 21 의 3 호	국부통계조사(개인자산부문조사) (국민은행)	103
〃	제 21 의 4 호	국부통계조사(가계부문조사) (경제기획원)	107
〃	제 22 호	어업센서스(농수산부)	111
〃	제 23 호	광공업동태조사(경제기획원)	113
〃	제 24 호	어업생산고조사(농수산부)	120
〃	제 25 호	어업기본통계조사(농수산부)	129
〃	제 26 호	재고통계조사(경제기획원)	130
〃	제 27 호	건설업통계조사(경제기획원)	131
〃	제 28 호	건축물착공통계(건설부)	134
〃	제 29 호	건설업수주통계조사(경제기획원)	135
〃	제 30 호	가축통계조사(농수산부)	68
〃	제 31 호	철강통계조사(한국철강협회)	136
〃	제 32 호	한국전자공업실태조사(한국정밀기기센터)	142

인구 및 주택 센서스 5

1975년인구및주택센서스 지정통계제1호 및 제2호

조사표 (전수용)

인구에 관한 사항	(특별)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전화)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매중 매

주택에 관한사항	※조사 통계국 기입란	가구구분	가족구성 핵가족	가족구성 세대구성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		혼인상태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요. (조사원 확인사항) 가구원 기입이 완료된 후 아래 확인사항을 꼭 질문하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장남의 장녀, 하숙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사실상의 나이는 몇살이며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읍니까? (※ 5세 이상자에게 질문)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 15세 이상자에게 질문)
	❶	❷	❸	❹	❺	❻	❼
01			1 남 2 여	월 일 년 만 살 음 양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02			1 남 2 여	월 일 년 만 살 음 양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03			1 남 2 여	월 일 년 만 살 음 양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04			1 남 2 여	월 일 년 만 살 음 양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05			1 남 2 여	월 일 년 만 살 음 양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06			1 남 2 여	월 일 년 만 살 음 양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07			1 남 2 여	월 일 년 만 살 음 양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08			1 남 2 여	월 일 년 만 살 음 양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조사원 성명 ㊞

응답자 성명 ㊞

확인사항 기재된 가구원 이름을 응답자에게 다시한번 반복하여 읽어주고 다음사항을 확인하시요.

조사되어야 할 사람

1. 댁의 어린이(특히 1년미만)들중 빠진아이는 없읍니까?
   1 있음 → 조사대상 2 없음
2. 댁의 식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정부, 친지, 하숙인 혹은 동거인중 빠진사람은 없읍니까?
   1 있음 → 조사대상 2 없음
3. 댁의 식구중 친지방문이나 사업상 잠시 출타한 분은 없읍니까?
   1 있음 → 조사대상 2 없음
4. 댁의 식구중 항공기나 배를 타는 탑승원은 없읍니까?
   1 있음 → 조사대상 2 없음

1.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❶ **거처의 종류**
- 1 일반주택
- 2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5 토목공사 현장 등
- 6 기타( )

❷ **주택의 종류**
- 1 독립주택 3 아파트
- 2 연립주택 4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

❸ **주택의 건축시기**
- 1 1970년 이전 2 1970년 이후( )

❹ **주택의 소유관계**
- 1 자기집 3 월 세
- 2 전 세 4 세없이 빌려든 집

❺ **주택의 총방수 및 동거가구수**
- 1 총방수 개
- 2 주가구사용방수 개
- 3 동거가구수 가구
- 4 동거가구사용방수 개
- 5 주택의 총건평 평

2. 주가구 이외의 모든 동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❻ **거처의 종류**
- 1 일반주택
-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 5 토목공사 현장등
- 6 기타( )

❼ **거처의 점유형태**
- 1 전 세 3 세 없이 빌려든 집
- 2 월 세 4 기 타

❽ **사용방수** 개

조사에서 빼야 할 사람

5. 댁의 방문객이나 손님으로서 잠시와 계시는 분은 없읍니까?
   1 있음 → 대상에서 제외 2 없음
6. 댁의 식구중 외지에 정착하여 취업 농학(하숙), 입영, 분가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읍니까?
   1 있음 → 대상에서 제외 2 없음

197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표 (조사구용 본) (속) 신설 및 구 분

지정통계 제1호 및 제2호

인구에 관한사항

시·도	구·시·군	읍·면·동	리	반	조사구번호	지역번호	가구번호	배출 매

※ 조사통계국 기입란

가구구분	가구구성	
	세대주	세대구성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	혼인상태	5년전 거주지		출생 및 사망아수				경제활동 (지난 1주간(9. 22~9. 28)-상태용 14세이상자에게만-질문)							소득
													활동상태	취업여부	구직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취업형태	취업시간	추가취업희망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없이 알음하여 주십시요. (조사원 확인사항) 가구원기입이 완료된 후 아래 확인사항을 꼭 질문하시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의 처 장남의 장녀, 하숙인 등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사실상의 나이는 몇살이며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읍니까? (※ 5세이상자에게 질문)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15세 이상자에게 질문)	5년전에도 (1970. 10. 1) 이곳에서 사셨읍니까? (※ 5세이상자에게 질문)	다른 구, 시 군과 외국에서 살던 곳은어디입니까?	언제 결혼하셨읍니까? (15세 이상 기혼남녀에게만 질문)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들중에 현재 함께 살고있는 자녀는 몇 사람입니까? (※ 15세 이상 기혼여자에게만 질문)	현재 다른 곳에 살고있는 자녀는 모두 몇 사람입니까?	현재까지 낳으신 자녀중 사망한 자녀는 몇 사람입니까?	부인께서 낳으신 자녀는 모두 몇 사람 입니까?	지난 1주간 (9. 22~9. 28)주로 무엇을 하였읍니까?	조금이라도 일하신 적이 있읍니까?	일하지 않았다면 일거리를 구해 보았거나 구할 의사가 있었읍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체 또는 분야에서 일하셨읍니까? (신청자는 전자 입용, 쓰고 없으면 빈 "칸용"으로 기입) (예) 내가 경작하는 논	하셨던 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신청자는, 전직 입용 쓰고 없으면 빈 "없음"으로 기입) (예) 벼를 베었음.	하셨던 일에서 의지위는 무엇 입니까?	어떤 형태의 사업체에서 일하셨읍니까?	지난 1주 동안 몇 시간이나 일하셨읍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원하십니까?	지난 한달(9. 1~9. 30) 동안의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신청과 ●직업란에 동일으로 표시되는 경우 소득은 질문하지 않음. 단 임금 농업종사자는 질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㉒
01			1. 남 2. 여	년 월 일 (음·양) 만 살 미	1. 안다님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 전문대학이상 → 1. 재학 2. 중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집 2. 같은구, 시, 군 3. 다른구, 시, 군 4. 외국 → 시도 구시군국		년 월 일 (음·양)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명	1. 임금받는 일하셨음. 2. 가족사업체 또는 농업에서 일하셨음. 3. 학교에 다니셨음. 4. 집안일 5. 기타	1. 있다 2. 없다	1. 구체적으로 있지만 일거리가 없었음. 2. 일거리를 구하는 중이었음. 3. 일거리를 구하지 않았음. 4. 구체적으로 없음.			1. 고용주 2. 정세자영업주 3.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5. 임시직 6. 일용직	1. 자기개인 또는 가족(가구)사업체 2. 가족사업체이거나 또는 남의농장, 상점, 사업체에서 3. 양쪽 모두에서	시간	1. 원하지 않는다 2. 원한다	1. 임금받는 일 ..... 원 2. 사업이윤(예인사업소득 등) ..... 원 3. 기 타 ..... 원 계 ..... 원
02			1. 남 2. 여	년 월 일 (음·양) 만 살 미	1. 안다님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 전문대학이상 → 1. 재학 2. 중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집 2. 같은구, 시, 군 3. 다른구, 시, 군 4. 외국 → 시도 구시군국		년 월 일 (음·양)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명	1. 일하였음. 2. 일거리가 있었음. 3. 실직 4. 전부 실업	1. 있다 2. 없다	1. 구체적으로 있지만 일거리가 없었음. 2. 일거리를 구하는 중이었음. 3. 일거리를 구하지 않았음. 4. 구체적으로 없음.			1. 고용주 2. 정세자영업주 3.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5. 임시직 6. 일용직	1. 자기개인 또는 가족(가구)사업체 2. 가족사업체이거나 또는 남의농장, 상점, 사업체에서 3. 양쪽 모두에서	시간	1. 원하지 않는다 2. 원한다	1. 임금받는 일 ..... 원 2. 사업이윤(예인사업소득 등) ..... 원 3. 기 타 ..... 원 계 ..... 원
03			1. 남 2. 여	년 월 일 (음·양) 만 살 미	1. 안다님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 전문대학이상 → 1. 재학 2. 중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집 2. 같은구, 시, 군 3. 다른구, 시, 군 4. 외국 → 시도 구시군국		년 월 일 (음·양)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명	1. 일하였음. 2. 일거리가 있었음. 3. 실직 4. 전부 실업	1. 있다 2. 없다	1. 구체적으로 있지만 일거리가 없었음. 2. 일거리를 구하는 중이었음. 3. 일거리를 구하지 않았음. 4. 구체적으로 없음.			1. 고용주 2. 정세자영업주 3.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5. 임시직 6. 일용직	1. 자기개인 또는 가족(가구)사업체 2. 가족사업체이거나 또는 남의농장, 상점, 사업체에서 3. 양쪽 모두에서	시간	1. 원하지 않는다 2. 원한다	1. 임금받는 일 ..... 원 2. 사업이윤(예인사업소득 등) ..... 원 3. 기 타 ..... 원 계 ..... 원
04			1. 남 2. 여	년 월 일 (음·양) 만 살 미	1. 안다님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 전문대학이상 → 1. 재학 2. 중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집 2. 같은구, 시, 군 3. 다른구, 시, 군 4. 외국 → 시도 구시군국		년 월 일 (음·양)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명	1. 일하였음. 2. 일거리가 있었음. 3. 실직 4. 전부 실업	1. 있다 2. 없다	1. 구체적으로 있지만 일거리가 없었음. 2. 일거리를 구하는 중이었음. 3. 일거리를 구하지 않았음. 4. 구체적으로 없음.			1. 고용주 2. 정세자영업주 3.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5. 임시직 6. 일용직	1. 자기개인 또는 가족(가구)사업체 2. 가족사업체이거나 또는 남의농장, 상점, 사업체에서 3. 양쪽 모두에서	시간	1. 원하지 않는다 2. 원한다	1. 임금받는 일 ..... 원 2. 사업이윤(예인사업소득 등) ..... 원 3. 기 타 ..... 원 계 ..... 원
05			1. 남 2. 여	년 월 일 (음·양) 만 살 미	1. 안다님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 전문대학이상 → 1. 재학 2. 중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집 2. 같은구, 시, 군 3. 다른구, 시, 군 4. 외국 → 시도 구시군국		년 월 일 (음·양)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명	1. 일하였음. 2. 일거리가 있었음. 3. 실직 4. 전부 실업	1. 있다 2. 없다	1. 구체적으로 있지만 일거리가 없었음. 2. 일거리를 구하는 중이었음. 3. 일거리를 구하지 않았음. 4. 구체적으로 없음.			1. 고용주 2. 정세자영업주 3.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5. 임시직 6. 일용직	1. 자기개인 또는 가족(가구)사업체 2. 가족사업체이거나 또는 남의농장, 상점, 사업체에서 3. 양쪽 모두에서	시간	1. 원하지 않는다 2. 원한다	1. 임금받는 일 ..... 원 2. 사업이윤(예인사업소득 등) ..... 원 3. 기 타 ..... 원 계 ..... 원
06			1. 남 2. 여	년 월 일 (음·양) 만 살 미	1. 안다님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 전문대학이상 → 1. 재학 2. 중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집 2. 같은구, 시, 군 3. 다른구, 시, 군 4. 외국 → 시도 구시군국		년 월 일 (음·양)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명	1. 일하였음. 2. 일거리가 있었음. 3. 실직 4. 전부 실업	1. 있다 2. 없다	1. 구체적으로 있지만 일거리가 없었음. 2. 일거리를 구하는 중이었음. 3. 일거리를 구하지 않았음. 4. 구체적으로 없음.			1. 고용주 2. 정세자영업주 3.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5. 임시직 6. 일용직	1. 자기개인 또는 가족(가구)사업체 2. 가족사업체이거나 또는 남의농장, 상점, 사업체에서 3. 양쪽 모두에서	시간	1. 원하지 않는다 2. 원한다	1. 임금받는 일 ..... 원 2. 사업이윤(예인사업소득 등) ..... 원 3. 기 타 ..... 원 계 ..... 원
07			1. 남 2. 여	년 월 일 (음·양) 만 살 미	1. 안다님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 전문대학이상 → 1. 재학 2. 중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집 2. 같은구, 시, 군 3. 다른구, 시, 군 4. 외국 → 시도 구시군국		년 월 일 (음·양)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명	1. 일하였음. 2. 일거리가 있었음. 3. 실직 4. 전부 실업	1. 있다 2. 없다	1. 구체적으로 있지만 일거리가 없었음. 2. 일거리를 구하는 중이었음. 3. 일거리를 구하지 않았음. 4. 구체적으로 없음.			1. 고용주 2. 정세자영업주 3.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5. 임시직 6. 일용직	1. 자기개인 또는 가족(가구)사업체 2. 가족사업체이거나 또는 남의농장, 상점, 사업체에서 3. 양쪽 모두에서	시간	1. 원하지 않는다 2. 원한다	1. 임금받는 일 ..... 원 2. 사업이윤(예인사업소득 등) ..... 원 3. 기 타 ..... 원 계 ..... 원
08			1. 남 2. 여	년 월 일 (음·양) 만 살 미	1. 안다님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 전문대학이상 → 1. 재학 2. 중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집 2. 같은구, 시, 군 3. 다른구, 시, 군 4. 외국 → 시도 구시군국		년 월 일 (음·양)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남자 명 여자 명	명	1. 일하였음. 2. 일거리가 있었음. 3. 실직 4. 전부 실업	1. 있다 2. 없다	1. 구체적으로 있지만 일거리가 없었음. 2. 일거리를 구하는 중이었음. 3. 일거리를 구하지 않았음. 4. 구체적으로 없음.			1. 고용주 2. 정세자영업주 3. 무급가족종사자 4. 상용직 5. 임시직 6. 일용직	1. 자기개인 또는 가족(가구)사업체 2. 가족사업체이거나 또는 남의농장, 상점, 사업체에서 3. 양쪽 모두에서	시간	1. 원하지 않는다 2. 원한다	1. 임금받는 일 ..... 원 2. 사업이윤(예인사업소득 등) ..... 원 3. 기 타 ..... 원 계 ..... 원

조사원 성명

응답자 성명

확인사항: 기재된 가구원 이름을 응답자에게 다시한번 반복하여 읽어주고 다음사항을 확인하시요.

조사되어야 할 사람

1. 내의 혈친이(특히 1년미만)출생 빠진아이는 없읍니까?
   1 있음 → 조사대상 2 없음
2. 내의 식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가정부, 친지, 라우인 또은 동거인중 빠진사람은 없읍니까?
   1 있음 → 조사대상 2 없음
3. 내의 식구중 친지방문이나 사업상 잠시 출타한 분은 없읍니까?
   1 있음 → 조사대상 2 없음
4. 내의 식구중 장물기나 배를 타는 입승원은 없읍니까?
   1 있음 → 조사대상 2 없음

조사에서 빼야 할 사람

5. 내의 방문객이나 손님으로서 잠시 와 계시는 분은 없읍니까?
   1 있음 → 대상에서 제외 2 없음
6. 내의 식구중 외국에 정착하여 취업, 유학(기족), 입양, 군사한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읍니까?
   1 있음 → 대상에서 제외 2 없음

주택에 관한 사항

1. 모든 주택의 주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❶ 거처의 종류
- 1 일반주택
-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기숙사 및 특수사회 시설
- 5 토목공사 현장등
- 6 기타( )

❷ 주택의 종류
- 1 독립주택
- 2 연립주택
- 3 아파트
- 4 비거주용건물내의 주택

❸ 주택의 건축시기
- 1 1970년 이전
- 2 1970년 이후( )

❹ 주택의 소유관계
- 1 자기집
- 2 전 세
- 3 월 세
- 4 세 없이 빌려든 집

❺ 주택의 총 방수 및 등거가구수
- 1 총 방 수 개
- 2 주가구사용방수 개
- 3 등 거 가 구 수 가구
- 4 등거가구 사용방수 개
- 5 주택의 총 건평 평

❻ 주택의 외벽에 사용된 주건축재료
- 1 나 무
- 2 흙 흙벽돌
- 3 시멘트 부벽
- 4 벽돌, 돌
- 5 철근콘크리트
- 6 기 타

❼ 주택의 지붕에 사용된 재료
- 1 짚 갈대등
- 2 함석(양철)
- 3 스레이트
- 4 기 와
- 5 스 라 브
- 6 기 타

❽ 가구의 문화시설 및 가재
- 1 신 문
- 2 텔레비젼
- 3 전축(혹은 녹음기)
- 4 전 화
- 5 전기냉장고
- 6 전기세탁기
- 7 피아노, 올갠
- 8 수도 펌프시설
- 9 전기시설

❾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연료
- 1 연 탄
- 2 나무 짚 초목류
- 3 석 유
- 4 깨 스
- 5 전 기
- 6 기 타

2 주가구 이외의 모든 등거가구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

● 거처의 종류
- 1 일반주택
- 2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3 호텔 여관등 숙박업소
- 4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5 토목공사 현장등
- 6 기타( )

● 거처의 점유형태
- 1 전 세
- 2 월 세
- 3 세 없이 빌려든 집
- 4 기 타

● 등거가구 사용방수 개

● 가구의 문화시설 및 가재
- 1 신 문
- 2 텔레비젼
- 3 전축(혹은 녹음기)
- 4 전 화
- 5 전기냉장고
- 6 전기세탁기
- 7 피아노 올갠
- 8 수도 펌프시설
- 9 전기시설

●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연료
- 1 연 탄
- 2 나무, 짚, 초목류
- 3 석 유
- 4 깨 스
- 5 전 기
- 6 기 타

※ 조사상태 기입란

조사구	구	분

주택주명	주소

이 ① 름	가구주와의관계 ②	성 ③ 별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④ 오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기입하시오	이분은 어느 학교까지 다니셨읍니까? ⑤ 해당한 숫자에 O표하시오	이분의 과는 사상(혼례 출입에를 기입하시오 예:(22)후에수 ※15세 미만이라도 혼례한 사실 있을 때 기입하시오	현재 가족이 살고있는 집의 소재지를 기입하시오 ※ 가족이 없을 때는 귀국하여 살 생 원근거지의 주소를 기입하시오	현재 근무 하고있는 곳에서 무슨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하시오 예: 2등서기관 (경제행정) 3등서기관 (수입업무)	현재 근무 하고있는 곳이 어떤 산업에 속합니까? 예: 일반행정 사법 ※만 14세 미만인 자는 직업 없음 기입하시오	현재 가족이 살고있는 집이 (아니면자기 집)인가? 예: 자기집	이분은 가족 중 어떤 관계입니까? 예: 가구주 처 장남
10일 1일현재 이곳에 있는 가구원의 이름을 모두 기입하시오 예: 김 권 동 녀 이 순 녀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01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02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03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04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05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06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07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08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09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10		1 남 2 여	년 월 일 양 음	1 안다님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 6 대학원	1 미혼자이 2 미혼자이 3 미혼자이 4 미혼자이 5 미혼자이 6 미혼자이 7 미혼자이 8 미혼자이 9 미혼자이 10 미혼자이	1 혼인관계 2 혼인관계 3 혼인관계 4 혼인관계 5 혼인관계 6 혼인관계 7 혼인관계 8 혼인관계 9 혼인관계 10 혼인관계			1 시 2 도 3 읍 4 면 5 리 6 동	1 가구주 2 처 3 장남 4 차남 5 기타

197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사 표 (동거가구용)

기입자	인
검열	

개요: 1975년 10월 1일 0시를 기하여 실시하게될 인구 및 주택센서스는 우리나라의 중요정책자료를 얻기 위하여 매5년 내지 10년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간이 센서스는 11번째로서 국민 누구나가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하며 통계법 제3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실시하는 것임으로 한사람도 빠짐없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다음 요령을 정확히 읽어보신후 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구 원

(1) '75년 10월 1일 0시현재 이곳(주재국)에 와있는 식구를 말하며 짧은 기간 잠시 다니러온 식구는 제외해야 한다.

(2)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주재국에서 제3국 또는 공무, 휴가로 잠시 귀국한 자는 주재국에서 조사해야 한다.

2. 생년월일

(1) 호적과는 관계없는 실제 태어난 년월일를 기입한다.

(2) "띠" 와 "년"중 어느한곳은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3. 교 육

실제 다녔던 학교의 교육정도를 말하며 "미취학아동"은 [1] 안다녔음에 ○표하고 재학, 졸업, 중퇴난에 사선「\」한다.

4. 혼인상태

호적과는 관계없이 현재의 혼인상태를 말하며 본국에 "처"가 있으면 "[2]유배우"에 해당한다.

5. 본가의 현주소

(1) 우리나라에 있는 본가(집)의 현주소를 기입한다.

(2) 본가가 없을경우에는 주재국에 부임하기전의 주소를 기입하거나 귀국하여 거주할곳의 주소를 기입한다.

6. 산업 및 직업

(1)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기입한다.

(2) 14세 이상인자중 직업이 없는 부인은 직업과 산업란에 각각 "없음"으로 기입하며 취학인자는 "취학"으로 각각 기입한다.

197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조 사 표 (해외 주재관용)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순) 9

Dear Foreign Citiz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Statistical Law, conducting 1975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as of October 1, 1975.

A Census of this type, as you are very well aware, is conducted in ery countr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the most basic information needed for national plans and policy-making.

You are kindly requested to answer to the census questions as precisely as possible in accordance with the best of your knowledge. The Statistical Law provides that all of the informations contained in the census questionnaires are kept confidential and will not be disclosed outside the Bureau of Statistics.

Your kind cooperation is very much appreciated.

Chang, Shin Kyu
Director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各 位 外 僑

韓国政府 定於十月 一日起 実施 1975年 全国 人口 及 住宅普査.

衆行週知此項 人口 及 住宅普査 目的 及 是 做為 国家 施政 及 政策 立案, 所需必要之 基礎資料 任何国家都需採用 這項実施.

我納期望 各 位 外僑能将称 仍 発揮所 瞭解的知識, 竝在可能的 範囲之下, 対我門 普査的 事項 給予 正確的 答覆.

至於有関本調査中所有 答覆的 内容作成統計後, 竝将絶対保障秘密, 在統計目的以外 絶対 不作任 何使用

謝謝

経済企劃院 調査統計局長

* NOTE

You will be visited again by the census enumerator who will collect this form If you are failed to hand over this form to the enumerator, please mail to the following address;

Director
Bureau of Statistics
Economic Planning Board
Gyong Woon Dong, Jongro Gu,
Seoul

1975 CENSUS of POPULATION and HOUSING

(Conducted as of Oct. 1. 1975)

1975年 全國 人口 及 住宅普査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大 韓 民 國 政 府

On Population 人口

City, Province 市, 道	Gu, Shi, Gun 区, 市, 郡	Dong, Eub, Myeon 洞, 邑, 面	No. 番地	TEL. No. 電話

On Housing 住宅

ED. No. 調査区番号	Living quarter No. 住宅番号	Household No. 家口番号

	Name 姓名	Sex 性別	Age and birthday 年齢及出生年月日	Nationality 国籍	Purpose of stay in Korea 滞留目的	Duration of staying 滞留期間
	Please write the name of each person in your household in the following order. 据下列順序填写家族姓名 Head of household (戸長) Wife of head (戸長之妻) Children of head 戸長之子女) Other persons (同居人)	Please mark one of the following. 男女之間以適当的番号碼以○来記入 Example: [1] Male 男 [2] Female 女	Please write age and date of birth in decimal character. 填写出生年月日及年齢	Please print the name of the country of your nationality. Example: Australia 記載国籍	Please mark one of the following. 在滞留目的中適当番号碼以○来記入	Please write the date of your arrival and intended date of departure. 入国日期及出国予定日字記入
01		[1] Male 男 [2] Female 女	.....月 Month .....年 Year .....年齢 Age		[1] Permanent imigration (永住) [2] Commercial business (事業目的) [3] Religious mission or educational purpose (宗教活動及教育目的) [4] Sight-seeing or visit to relatives (観光及親戚訪問) [5] Other purpose (其他)	入国日期 Date of arrival ..... 出国予定日字 Intended date of departure .....
02		[1] Male 男 [2] Female 女	.....月 Month .....年 Year .....年齢 Age		[1] Permanent imigration (永住) [2] Commercial business (事業目的) [3] Religious mission or educational purpose (宗教活動及教育目的) [4] Sight-seeing or visit to relatives (観光及親戚訪問) [5] Other purpose (其他)	入国日期 Date of arrival ..... 出国予定日字 Intended date of departure .....
03		[1] Male 男 [2] Female 女	.....月 Month .....年 Year .....年齢 Age		[1] Permanent imigration (永住) [2] Commercial business (事業目的) [3] Religious mission or educational purpose (宗教活動及教育目的) [4] Sight-seeing or visit to relatives (観光及親戚訪問) [5] Other purpose (其他)	入国日期 Date of arrival ..... 出国予定日字 Intended date of departure .....
04		[1] Male 男 [2] Female 女	.....月 Month .....年 Year .....年齢 Age		[1] Permanent imigration (永住) [2] Commercial business (事業目的) [3] Religious mission or educational purpose (宗教活動及教育目的) [4] Sight-seeing or visit to relatives (観光及親戚訪問) [5] Other purpose (其他)	入国日期 Date of arrival ..... 出国予定日字 Intended date of departure .....
05		[1] Male 男 [2] Female 女	.....月 Month ..... Year .....年齢 Age		[1] Permanent imigration (永住) [2] Commercial business (事業目的) [3] Religious mission or educational purpose (宗教活動及教育目的) [4] Sight-seeing or visit to relatives (観光及親戚訪問) [5] Other purpose (其他)	入国日期 Date of arrival ..... 出国予定日字 Intended date of departure .....
06		[1] Male 男 [2] Female	.....月 Month .....年 Year .....年齢 Age		[1] Permanent imigration (永住) [2] Commercial business (事業目的) [3] Religious mission or educational purpose (宗教活動及教育目的) [4] Sight-seeing or visit to relatives (観光及親戚訪問) [5] Other purpose (其他)	入国日期 Date of arrival ..... 出国予定日字 Intended date of departure .....

Type of living quarter 住居型態

In which living quarter are you living? Please mark one of the following.

[1] Housing unit (Ordinary house) 住宅 [2] Hotel or Inn 旅館

[3] Dormitory, hospital or other similar institution 寄宿舎, 病院, 公共建物

[4] Other living quarter 其他 (Specify 記載.....)

2. How many rooms are occupied by your household? 住戸内房数

.....Rms 房数

3. Is the living quarter occupied by one household, or by two or more households? 住戸数)

[1] By one household 単独住戸 — Go to

[2] By two or more households 同居住戸 — Go to

4. Type of building 住宅型態

Which best describes this building in the following?

[1] One family house completely detached from other house 独立住宅

[2] Attached house 聯立住宅

[3] Apartment 公寓

5. Ownership of living quarter 住宅所有関係

[1] Owned 自家

[2] Rented 租家

[3] Occupied at free of rent 免費租家

6. How many rooms are there in the house? 房数

..... Rms

4. Type of building 住宅型態

Which best describes this building in the following?

[1] One family house completely detached from other house 独立住宅

[2] Attached house 聯立住宅

[3] Apartment 公寓

5. Ownership of living quarter 住宅所有関係

[1] Owned 自家

[2] Rented 租家

[3] Occupied at free of rent 免費租家

6. How many rooms are there in the house? 房数

.....Rms

7. What is the approximate floor area of this building in square meters?

建物総面積.....Square meters 坪

준조사구 조 사 표

1975년 인구 및주택센서스

조사구명 (기관명)		구 분		매 중 매 ___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일련번호	❶ 이름 이름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❷ 성별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⑪ 남	❸ 생년월일 생년 월일은 언제 입니까? 호적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❹ 교육 어느 학교까지 다니셨읍니까? 이 학교를 중퇴, 졸업하셨읍니까?		❺ 혼인상태 호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❻ 본가의 현주소 현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의 소재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01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02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03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04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05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06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07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08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09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10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11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12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13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14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15		1 남 2 여	월 일 년 생 띠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중퇴 3 졸업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시 도 구 시 동 읍 면 미상

성별 남자 여자 ⑪

시 세 8 우

1975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 사후조사표

조사원 인

검사원 인

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전화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배중 배	가구원수 계	남	여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	혼인상태	이주년월	1975년 10월 1일 거주지: 거주지	이주전의 거주지	가구주의 동일여부	조사여부	방문연고지		동거인의 본가	사망여부
	1975년11월 1일 현재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빠짐 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요. ※ 가구원 기입이 완료될후 아래 확인사항을 꼭 질문하시요.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관계 입니까? ※ 가구주, 처, 장남, 부모, 동거인 순서로 기입하십시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② 여	사실상의 나이는 몇살이며 생년월일은 언제 입니까? ※ 호적상의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요.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읍니까? ※ 만 5세 이상자 에게만 물습니다. ※ 학교란 정규학교를 말 합니다.	사실상의혼인 상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 만 15세 이상자에게만 물습니다.	이집에 이사온 년월일은 언제 입니까? ※ 1 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반드시 월을 기입하십시요.	이분은1975년10월1일 현재 어디서 살고 있었읍니까? ※ 4 1975년10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는 ③란 이후 물을 필요없이 ↖ 합니다.	지난 10월 1일 당시 이분의 정확한 주소는 어디 입니까? ※ ⑤란의 1 현재와같은집에 해당하는 사람은 ⑩란은 ↖ 을합니다.	지난10월1일의 조사 당시 이분은 현재와 같은 가구주와 살았읍니까? ※ 10월 1일 조사 되지 않은 사람은 ↖ 을 합니다.	이분은 지난 10월 1일 조사때 조사 되었읍니까? ※ 1 안 되었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이유(여행, 친척방문등) 를 질문하여 주십시요.	지난 10월 1 ~10일 사이에 ⑨란 및 ⑩란 거주지 이외의 본가나 친척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그 주소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 10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제외한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십시요.	동거인의 경우 본가의 주소는 어디이며 가구주의 이름은 무엇 입니까? ※ 가구주, 처, 자녀, 부모를 제외한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십시요. ※ 자취생을 포함하여 질문해 주십시요.	이때에살았던 분으로 금년중 사망하신 분은 안계십니까? ※ 10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하여는 그 달부터 7년 까지 기입하십시요.
01			1 남 2 여	년 월 일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1975년 월 2 1974년 이전	1 현재와 같은집 2 다른 집 3 외국 4 75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국	1 같은 가구주 2 다른 가구주 지난조사시 가구주 이름 관계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1 예 년 월 일 2 아니
02			1 남 2 여	년 월 일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1975년 월 2 1974년 이전	1 현재와 같은집 2 다른 집 3 외국 4 75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국	1 같은 가구주 2 다른 가구주 지난조사시 가구주 이름 관계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1 예 년 월 일 2 아니
03			1 남 2 여	년 월 일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1975년 월 2 1974년 이전	1 현재와 같은집 2 다른 집 3 외국 4 75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국	1 같은 가구주 2 다른 가구주 지난조사시 가구주 이름 관계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1 예 년 월 일 2 아니
04			1 남 2 여	년 월 일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1975년 월 2 1974년 이전	1 현재와 같은집 2 다른 집 3 외국 4 75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국	1 같은 가구주 2 다른 가구주 지난조사시 가구주 이름 관계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1 예 년 월 일 2 아니
05			1 남 2 여	년 월 일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1975년 월 2 1974년 이전	1 현재와 같은집 2 다른 집 3 외국 4 75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국	1 같은 가구주 2 다른 가구주 지난조사시 가구주 이름 관계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1 예 년 월 일 2 아니
06			1 남 2 여	년 월 일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1975년 월 2 1974년 이전	1 현재와 같은집 2 다른 집 3 외국 4 75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국	1 같은 가구주 2 다른 가구주 지난조사시 가구주 이름 관계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1 예 년 월 일 2 아니
07			1 남 2 여	년 월 일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1975년 월 2 1974년 이전	1 현재와 같은집 2 다른 집 3 외국 4 75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국	1 같은 가구주 2 다른 가구주 지난조사시 가구주 이름 관계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1 예 년 월 일 2 아니
08			1 남 2 여	년 월 일 만 살	1 안다녔음 2 국민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1975년 월 2 1974년 이전	1 현재와 같은집 2 다른 집 3 외국 4 75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국	1 같은 가구주 2 다른 가구주 지난조사시 가구주 이름 관계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 통 반 부근 가구주이름	1 예 년 월 일 2 아니

※ 이 란은 기입하지 마시오.

센서스 내용

가구원번호 1	가구주와의관계 2	성별 3	생년월일 4	교육 5	6	혼인상태 7	대조결과 8	적요 9
01							1 2	1 비전입자 2 전입자 3 방문면접자 4 본가
02							1 2	1 비전입자 2 전입자 3 방문면접자 4 본가
03							1 2	1 비전입자 2 전입자 3 방문면접자 4 본가
04							1 2	1 비전입자 2 전입자 3 방문면접자 4 본가
05							1 2	1 비전입자 2 전입자 3 방문면접자 4 본가
06							1 2	1 비전입자 2 전입자 3 방문면접자 4 본가
07							1 2	1 비전입자 2 전입자 3 방문면접자 4 본가
08							1 2	1 비전입자 2 전입자 3 방문면접자 4 본가

확인사항 거처된 가구원 이름을 중 빠진사람이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읽어 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조사되어야 할 사람

1. 댁의 어린이(특히 1년미만)들 중 빠진아이는 없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2. 댁의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정부, 친지, 하숙인등 동거인중 빠진 사람은 없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3. 댁의 가족중 친척방문이나 직업상 잠시 출타한 분은 없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4. 댁의 가족중 학문이나 배움 타는 탐증원은 없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조사에서 빼야 할 사람

5. 댁의 방문객이나 손님으로서 잠시 와 계시는 분은 없읍니까?
   1 있음→대상에서 제외 2 없음
6. 댁의 가족중 외지에 장사하여 취업, 취학(하숙), 입영, 군가한 사람은 조임되어 있지 않읍니까?
   1 있음→대상에서 제외 2 없음

인구 및 주택 센서스(속)13

1975년 총인구 및 주택조사

평가조사표 (대도시) (I)

조사원 ㊞

주의

⑨란의 [2] 및 ⑫란의 [1][2][3] (즉 ※가 표시 되어 있는것) 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한 주소에 대하여 조사표(Ⅱ)를 한장씩 작성한다. —— 한 가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두개 이상의 다른 주소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조사표(Ⅱ)를 작성하며 한 가구에사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이 같은 주소인 경우에는 조사표(Ⅱ)를 한장만 작성한다.

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매중 매	가구원수 계	남	여

센서스당시 가구주의 이름

	❶ 이름	❷ 가구주와의 관계	❸ 성별	❹ 생년월일	❺ 교육	❻ 혼인상태	❼ 현거주지	❽ 센서스당시거주지	❾ 다른주소	❿ 조사여부	⓫ 조사가능성여부 연고지	⓫ 조사가능성여부 주소	⓬ 변동여부
	현재살고있는 모든가구원의 이름과 센서스당시에 살았든 사람으로서 현재 이집에 살지 않는 사람의이름도 말씀해 주십시요.	이분은 가구주와 어떤관계입니까? ● 가구주, 처, 장남, 부모, 등기인 순서로 기입하십시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① 남 [2] 여	사실상의 나이는 몇살이며 생년월일은 언제 입니까? ● 호적상의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나이와 생년월일을 기입하십시요.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읍니까? ● 만 5세 이상자 에게만 묻습니다. ● 학교란 정규학교를 말 합니다.	사실상의혼인 상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 만 15세 이상자에게만 묻습니다.	이때사일 현재 이분은 어데에 살고 있읍니까?	이분은 1975년10월 1일 당시 어디서 살고 있었읍니까? ● [4]1975년10월 1일 이후 출생 자에 대하여는 ⑨란 이후 물 을 필요없이 합니다	센서스 이후에 이곳에서 전출하여 현재 국내 다른 곳에 살고있는 사람(⑧란의[2]) 또는 센서스 이후에 국내 다른 곳에서 전입하여 이곳에서 살고있는사람(⑨란의[2])에 한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 센서스 이후에 전출했을경우(⑧란 [2])에는 전출한곳을 기입하고 전입하였을 경우에는 센서스일(10. 1)에 살고 있었던 곳을 기입한다.	이분은 지난 10월 1일 조사때 조사 되었읍니까? ● [1] 안 되었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이유(여행, 친척방문등) 를 질문하여 주십시요.	이분은 앞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센서스에 조사될 가능성이 있는 연고자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다른곳에서 조사될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 주소는 어디입니까?	센서스 이후에 전출입하였을 경우나 사망했을 경우에 그 날자를 말씀해 주시시요.
01		가구주	[1] 남 [2] 여	월 일 살 [03] 년 만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 집 [2] 국내의 다른곳 [3] 외국 [4] 센서스이후 사망	※[1] 현재와 같은집 [2] 국내의 다른곳 [3] 외국 [4] 75년10월 1일 이후출생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1] 10. 1에 임시로 살고있었든 곳 ※[2] 다른곳에 살고 있는 배우자 ※[3]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살고 있는곳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변동없음 [2] 전출 [3] 전입 [4] 사망 월 일
02			[1] 남 [2] 여	월 일 살 [03] 년 만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 집 [2] 국내의 다른 곳 [3] 외국 [4] 센서스이후 사망	※[2] 현재와 같은집 [3] 국내의 다른곳 [4] 75년10월 1일 이후출생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1] 10. 1에 임시로 살고있었든 곳 ※[2] 다른곳에 살고 있는 배우자 ※[3]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살고 있는곳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변동없음 [2] 전출 [3] 전입 [4] 사망 월 일
03			[1] 남 [2] 여	월 일 살 [03] 년 만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 집 [2] 국내의 다른 곳 [3] 외국 [4] 센서스이후 사망	※[2] 현재와 같은집 [3] 국내의 다른곳 [4] 75년10월 1일 이후출생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1] 10. 1에 임시로 살고있었든 곳 ※[2] 다른곳에 살고 있는 배우자 ※[3]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살고 있는곳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변동없음 [2] 전출 [3] 전입 [4] 사망 월 일
04			[1] 남 [2] 여	월 일 살 [03] 년 만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 집 [2] 국내의 다른 곳 [3] 외국 [4] 센서스이후 사망	※[2] 현재와 같은집 [3] 국내의 다른곳 [4] 75년10월 1일 이후출생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1] 10. 1에 임시로 살고있었든 곳 ※[2] 다른곳에 살고 있는 배우자 ※[3]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살고 있는곳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변동없음 [2] 전출 [3] 전입 [4] 사망 월 일
05			[1] 남 [2] 여	월 일 살 [03] 년 만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 집 [2] 국내의 다른 곳 [3] 외국 [4] 센서스이후 사망	※[2] 현재와 같은집 [3] 국내의 다른곳 [4] 75년10월 1일 이후출생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1] 10. 1에 임시로 살고있었든 곳 ※[2] 다른곳에 살고 있는 배우자 ※[3]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살고 있는곳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변동없음 [2] 전출 [3] 전입 [4] 사망 월 일
06			[1] 남 [2] 여	월 일 살 [03] 년 만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 집 [2] 국내의 다른 곳 [3] 외국 [4] 센서스이후 사망	※[2] 현재와 같은집 [3] 국내의 다른곳 [4] 75년10월 1일 이후출생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1] 10. 1에 임시로 살고있었든 곳 ※[2] 다른곳에 살고 있는 배우자 ※[3]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살고 있는곳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변동없음 [2] 전출 [3] 전입 [4] 사망 월 일
07			[1] 남 [2] 여	월 일 살 [03] 년 만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 집 [2] 국내의 다른 곳 [3] 외국 [4] 센서스이후 사망	※[2] 현재와 같은집 [3] 국내의 다른곳 [4] 75년10월 1일 이후출생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1] 10. 1에 임시로 살고있었든 곳 ※[2] 다른곳에 살고 있는 배우자 ※[3]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살고 있는곳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변동없음 [2] 전출 [3] 전입 [4] 사망 월 일
08			[1] 남 [2] 여	월 일 살 [03] 년 만 띠 살	[1] 안다녔음 [2] 국민 [3] 중학 [4] 고등 [5] 초대전문 [6] 대학이상	[1] 재학 [2] 졸업 [3] 중퇴	[1] 미혼 [2] 유배우 [3] 사별 [4] 이혼	[1] 같은 집 [2] 국내의 다른 곳 [3] 외국 [4] 센서스이후 사망	※[2] 현재와 같은집 [3] 국내의 다른곳 [4] 75년10월 1일 이후출생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안 되었음. [2] 이집에서 되었음. [3] 다른집에서 되었음.	※[1] 10. 1에 임시로 살고있었든 곳 ※[2] 다른곳에 살고 있는 배우자 ※[3] 부모 또는 자녀 등이 살고 있는곳	[1] 도시 [2] 농촌 시도 구시군	[1] 변동없음 [2] 전출 [3] 전입 [4] 사망 월 일

확인사항

1. 맥의 어린이(특히 1년미만)들 중 빠진아이는 없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2. 맥의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정부, 친지, 하숙인등 동거인중 빠진 사람은 없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3. 맥의 가족중 친지방문이나 사업상 잠시 출타한 분은 없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4. 맥의 가족중 항공기나 배를타는 탑승원은 없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5. 생활 본거지가 없는 사람으로서 조사당일 현재 이 가구에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있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6. 생활 본거지가 없는 사람으로서 센서스일(10. 1)에 같이 살던 분이 있읍니까?
   [1] 있음→조사대상 [2] 없음

종 합 표

1975년 인구및주택센서스

조사구 번호		조사표 매수	매	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	매중	매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❶ 거처 번호	❷ 가구 번호	❸ 가구주 또는 대표자 성명	❹ 주소	❺ 가구원 계	남	여	❻ 거처의 종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❼ 공가	❽ 가구구분 농가	비농가	❾ 비고

인구동태조사 15

혼 인 신 고

상 귀하 년 월 일

	구 분		부(夫)	처
1	당사자	본적		
2			호주 성명 / 호주와의 관계	호주 성명 / 호주와의 관계
3		주소		
			세대주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본	본
4		출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5	부모성명 및 본적	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6	양친성명 및 본적	양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양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7	혼인해소년월일			
8	신본적			
9	수반입적자		성명 / 분가자와의 관계	성명 / 분가자와의 관계
10	기타사항			
11	증인	본적		서명날인
		주소		출생년월일

※ 이 신고용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1	증인	본적		서명날인
		주소		출생년월일
12	동의자	부(夫)의 부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부(夫)의 모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처의 부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처의 모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13	신고인	부(夫) 서명날인		처 서명날인

비고 1. 처가에 입적하는 혼인 또는 서양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명칭에 표시한다.
2. 제8란에는 법정분가 장소를 기재한다.
3. 제10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당사자가 동성동본인지라도 동인 친족이 아닌때에는 "혼인당사자는 시조를 달리함"이라는 취지.
나.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재혼하는 때에는 친가의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그 본적.
다. 민법 제811조 단서 기나 호적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항.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 제 3 호)

14	실제상동거년월일	서기 19 년 월 일 부터 동거			
15	성혼과정	1. 자유 2. 중매 3. 절충			
16	혼인장소	1. 자택 2. 예식장 3. 기타			
17	직업	부		처	
18	교육정도	부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처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19	혼인종류	부	1. 초혼 2. 재혼	처	1. 초혼 2. 재혼

비고 1. 성혼과정, 혼인장소, 교육정도 및 혼인종류란은 해당하는 곳에 「○」으로 표시한다.
2. 직업은 실제상 동거당시의 직업을 기입한다.

출 생 신 고

시
구
읍
면 장 귀하

19 년 월 일

1	출생자	본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2		주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성명		본	혼인중의자(남 · 녀) 혼인외의자(남 · 녀)
4		출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 시 분		
5		출생장소			1.자택 2.병원 3.기타
6	부모성명	부	본	모	본
7	기타사항				
8	신고인	본적		호주 성명	
		주소		자격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년 월 일

읍·면·동 접수	
주민등록 표정리	월 일 ㊞
주민등록 부표작성	월 일 ㊞
주민등록번호부여	
대장정리	월 일 ㊞
번호	
주민등록 지관할시 구청송부	월 일 ㊞
관할시·구청접수	
본적지 송부	월 일 ㊞
본적지 접수	
호적부 정리	월 일 ㊞
호적부에 주민등록 번호기재	월 일 ㊞
주거표 정리	월 일 ㊞
주민등록 지통보	월 일 ㊞
인구동태 신고서 송부	월 일 ㊞

인구동태사항

(지정통계 제3호)

9	부모의 출생년월일	부	년 월 일	모	년 월 일
10	부모의직업	부		모	
11	부모의 교육정도	부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모	1.미취학 2.국민학교 3.중·고교 4.대학교
12	부모의동거 년월일	서기 년 월 일부터 동거			
13	모의출산 회수	총출산 명	생존 명	사망 명	사산 회
14	임신월수 및 태수	임신 만 개월	태수	1.단태아 2.쌍태아 3.3태아이상	
15	조산자	1. 의사	2. 조산원	3. 기타	

⊙ 신고서 작성전에 뒷면 주의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주의사항

1. 문자는 한글로 쓰되 성명은 한자 또는 한글을, 숫자는 壹, 貳, 拾의 문자를 써야 한다.
2. 출생자가 들어가기로 정하여진 가의 본적을 제1란에 기재하고 부가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는 모의 본적표시는 기타란에 한다.
3. 출생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에는 제1란에 기재를 하지아니하고 제7란에 그 취지 및 원인과 장소를 기재한다.
4. 제5란 출생장소의 구분중 해당숫자에는 ○인을 표시한다.
5. 모(母)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6란중 부에 관한 부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6. 호적법 제53조에 의하여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란중 부의 성명에만 부 미정이라 기재한다.
7. 제3란중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자의 구별에 따라 남녀로 기재한다.
8. 제7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무능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사람의 성명, 출생년월일, 본적 및 무능력의 원인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사유.
   나. 기타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유.
9. 신고인의 자격은 부, 모, 호주, 동거자, 후견인, 분만관여의사, 기타 해당자격을 기재한다.
10. 부모의 출생년월과 동거년월일은 사실상의 년월일로 기입한다.
11. 조산자 부, 모의 교육정도 및 태수의 난은 해당하는 곳에 「○」으로 표시한다.
12. 모의 출산회수는 실제로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이제까지 낳은 수를 각각 기입하며 재혼인 경우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도 포함한다.
13. 신고서는 본적지신고 2부(신고해태시 3부) 비본적지신고 3부(신고해태시 4부)를 제출한다.

공무원 주의사항

1. 출생신고는 본적지, 주소지 시, 구, 읍, 면 또는 주민등록지 동에서 접수처리한다.
2.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접수할 경우 업무처리요령.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할일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할일
출생신고서접수 → 호적부정리 → 주거표정리 → 주민등록지에 통보(24호 양식) → 호적부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통보서접수 → 주민등록표등재 → 주민등록부표작성 → 주민등록번호부여 → 주민등록번호, 본적지에 통보

3.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접수한 경우 업무처리요령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할일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할일
출생신고서접수 → 주민등록표에등재 → 주민등록부표작성 → 주민등록번호부여(출생신고서번호 부여란에도 등재) → 관할시·구청 송부(단 동에서 접수한 경우에 한함) → 본적지에 출생신고서송부	출생신고서접수 → 호적부정리(주민등록 번호도 기재) → 주거표 정리

4. 신고서 1부는 인구동태조사용으로 시도(통계담당관실) 경유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에 제출한다.

인구동태조사(속)17

사 망(호주상속) 신 고

시구읍면 장 귀하

19 년 월 일

1	사망자	본 적				
		호주 성명		호주와의 관계		
2		주 소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성 명		성별	남·녀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4	사망년월일시	서기 년 월 일 시 분				
5	사망장소		1. 자택 2. 병원 3. 기타			
6	기타사항					
7	호주상속인	본 적				
		성 명		전호주와의 관계		
8	신고인	본 적		호주 성명		
		주 소		자 격		
		서명날인		출생년월일		

읍·면·동 접수	
주민등록표정리	월 일 ㊞
주민등록부표정리	월 일 ㊞
주민등록증회수	월 일 ㊞
관할 시·구청송부	월 일 ㊞
관할시·구청접수	
본적지송부	월 일 ㊞
본적지접수	
호적부정리	월 일 ㊞
주거표정리	월 일 ㊞
주민등록지통보	월 일 ㊞
인구동태신고서송부	월 일 ㊞

인 구 동 태 사 항

(지정통계 제3호)

9	사망전직업	
10	사망진단자	1. 의사 2. 한의사 3. 기타
11	혼인상태	1. 미혼 2. 유배우 3. 이혼 4. 사별
12	교육정도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13	사망의종류	1. 병사 2. 외인사 (가. 불여의 중독 나. 기타의 재해사 다. 자살 라. 타살 마. 기타 및 불상) 3. 기타 및 불상
14	사망의원인	1. 직접사인
		2. 중간선행사인
		3. 선행사인

◎ 신고서 작성전에 뒷면 주의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주의사항

1. 제3란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번호부여가 되어있지 않은 자는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2. 제7란은 호주상속신고를 동시에 할때에 기재한다.
3. 제6란에는 호적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3란중 성별, 제5란, 제10란, 제11란, 제12란은 해당하는곳에 "○"으로 표시한다.
5. 신고인 자격은 호주, 동거하는 친족, 기타의 동거인, 건물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등 해당자격자를 기재하며 호주상속을 동시에 신고할 경우는 호주상속인이라 기재한다.
6. 제13란, 제14란은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다만, 진단서 또는 검안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란을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7. 신고서는 본적지신고 2부(신고해태시 3부), 비본적지신고 3부(신고해태시 4부)를 제출한다.

공무원 주의사항

1. 사망신고는 본적지, 주소지 시, 구, 읍, 면 또는 주민등록지 동에서 접수처리한다.
2.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접수할 경우 업무처리요령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할일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할일
사망신고서접수 → 호적부정리 → 주거표정리 → 주민등록지에 통보(서식24호)	통보서접수 → 주민등록표정리 → 주민등록부표 정리

3.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접수할 경우 업무처리 요령

주민등록지 읍, 면, 동에서 할일	본적지 시, 구, 읍, 면에서 할일
사망신고서접수 → 주민등록표정리 →주민등록부표정리 →관할 시, 구청송부(단, 동에서 접수할 경우에 한함) → 본적지에 사망신고서 송부	사망신고서 접수 →호적부정리 →주거표정리

4. 신고서 1부는 인구동태조사용으로 시도(통계담당관실) 경유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에 제출한다.

이 혼 신 고

장 귀하

년 월 일

1	구 분		부(夫)	처
2	당사자	본 적		
			호주 성명 / 호주와의 관계	호주 성명 / 호주와의 관계
3		주 소		
			세대주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본	본
4		출생 년월일	서기 년 월 일	서기 년 월 일
5	부모성명 및 본적	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6	양친성명 및 본적	양부	본적	본적
			성명	성명
		양모	본적	본적
			성명	성명
7	복적할가		본적	호주 성명
8	신본적			
9	수반입적자		성 명 / 분가자와의 관계	성 명 / 분가자와의 관계
10	기타사항			
11	재판확정 년월일			
12	일가창립원인		장 소	

※ 이 신고용지는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13	부흥장소			
14	증인	본 적		서명 날인
		주 소		출생 년월일
		본 적		서명 날인
		주 소		출생 년월일
15	동의자	부(夫)의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부(夫)의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처의 서명날인		출생 년월일
16	신고인	부 (夫) 서명날인		처 서명날인

비고 1. 제8란에는 법정분가 장소를 기재한다.
2. 제10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혼가를 떠난자가 일가창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나. 친가를 부흥하는 때에는 그 취지.
다. 기타 호적법 제29조 제2항. 제34조에 해당하는 사항.

인구동태사항

(지정통계 제3호)

17	실제상동거 년월일	서기 19 년 월 일부터 동거			
18	실제상이혼 년월일	서기 19 년 월 일에 이혼			
19	성혼과정	1. 자 유 2. 중 매 3. 절 충			
20	이혼사유	1. 부부불화 2. 가족간불화 3. 건강상 4. 경제문제 5. 기타			
21	교육정도	부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처	1. 미취학 2. 국민학교 3. 중·고교 4. 대학교

비고 1. 17란과 18란은 사실상의 년월일을 기입한다.
2. 성혼과정, 이혼사유 및 교육정도란은 해당하는 곳에 「○」으로 표시한다.

변동사항 종합표	조사구번호	매 월별로 변동보고서의 ③란과 ④란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한다.	출장자 확인

	1 월	증가	감소	출생	2 월	증가	감소	출생	3 월	증가	감소	출생	4 월
가 구 수													
변동가구 가구원수				사망				사망				사망	
변동가구원수													
인 구 수													

	4 월	증가	감소	출생	5 월	증가	감소	출생	6 월	증가	감소	출생	7 월
가 구 수													
변동가구 가구원수				사망				사망				사망	
변동가구원수													
인 구 수													

	7 월	증가	감소	출생	8 월	증가	감소	출생	9 월	증가	감소	출생	10월
가 구 수													
변동가구 가구원수				사망				사망				사망	
변동가구원수													
인 구 수													

	10월	증가	감소	출생	11월	증가	감소	출생	12월	증가	감소	출생	1 월
가 구 수													
변동가구 가구원수				사망				사망				사망	
변동가구원수													
인 구 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 ] 내는 조사때 기입하지 않음

인구동태표본조사표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가구주이름
—	—	

② 확인 및 가구표 정리		
조사 담당자	지도구 책임자	담당

1 출생

① 본적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주성명 :

② 발생건수	③ 모의이름	③ 가구원번호	④ 출생아이름	⑤ 출생년월일	⑥ 성별	⑦ 출산당시 모의연령	⑧ 출산순위	⑨ 임신기간	⑩ 모의교육정도	⑪ 조산자
1				197 년 월 일				개월		1. 병원 2. 조산원 3. 기타( )
2				197 년 월 일				개월		1. 병원 2. 조산원 3. 기타( )
3				197 년 월 일				개월		1. 병원 2. 조산원 3. 기타( )

2 사망

① 본적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가	번지	호주성명

② 사망건수	③ 사망자이름	④ 가구원번호	⑤ 성별	⑥ 사망년월일	⑦ 사망당시연령	⑧ 사망자의교육정도	⑨ 직업	⑩ 혼인상태	⑪ 진단자	⑫ 사망원인
1				년 월 일					1. 의사 2. 한의사 3. 기타( )	
2				년 월 일					1. 의사 2. 한의사 3. 기타( )	
3				년 월 일					1. 의사 2. 한의사 3. 기타( )	

3 혼인 (조사당시 가구표상에 있는 가구원의 혼인만을 기록한다)

② 혼인건수	③ 夫의성명	④ 夫의가구원번호또는연령※	⑤ 妻의성명	⑥ 妻의가구원번호또는 연령	⑦ 혼인년월일
1					년 월 일
2					년 월 일

※ ④및 ⑥란은 夫 또는 妻가 조사구내의 거주자가 아닐때는 연령을 기입

4 이혼·사별·별거등 배우관계변화

② 건수	③ 夫의성명	④ 夫의가구원번호또는 연령	⑤ 妻의성명	⑥ 妻의가구원번호또는 연령	⑦ 구분※
1		년 월 일		년 월 일	
2		년 월 일		년 월 일	

※ ⑦ 구분 란은 이혼·사별·별거등을 기입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조사표(21)

경 제 활 동 인 구 조 사 표

제 회 조사
지정통계 제4호
통계법 제10조 (비밀의 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한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매중
	—	매

가구구분
1. 농 가
2. 비 농 가

농가구분이유		
1. 논 평	5. 온실 평	9. 가금 수
2. 밭 평	6. 대가축 두	10. 누에 상
3. 과수원 평	7. 중가축 두	11. 벌 통
4. 특수재배 평	8. 소가축 두	12. 기타

가구원상황	연령별 / 성별	14세 이상	14세 미만	계
	남 자			
	여 자			
	계			

	인적사항						경제활동사항													
	이름 ①	가구주와의관계 ②	성별 ③	연령 ④	배우관계 ⑤	교육정도 ⑥	활동상태 ⑦	취업여부 ⑧	구직여부 ⑨	실직기간 ⑩	직업 ⑪	산업 ⑫	종사상의지위 ⑬	취업시간 ⑭	취업정도 ⑮	취업정도 ⑯	전직희망여부 ⑰	전직희망여부 ⑱
	가구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4세이상자에게 만묻습니다)	가구주와 어떤관계가 있읍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몇살입니까?	결혼하셨읍니까?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읍니까?	지난 일주일간에 주로 무엇을 하셨읍니까?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신 적이 있읍니까?	조금도 일하지 않았는데 일거리를 구하여 보았읍니까?	실직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무슨 일을 하셨읍니까?	일을 하셨다면 어디에서 하셨읍니까?	하셨던 일에서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조사주간에 몇시간이나 일하셨읍니까? (36시간 미만인자)	평상시에도 이렇게 적게 일 하셨읍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적게 일하셨읍니까?	앞으로도 현재하던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거나 다른일로 바꾸고자 원하십니까?	왜 더 많이 또는 다른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01			1 남자 2 여자	만 세	1 유배우 2 사 별 3 이 혼 4 미 혼	1 불취학 2 국 졸 3 중 졸 4 고 졸 5 대 졸	1 [redacted] 6 연 로 2 일시휴직 7 불 구 3 가 사 8 불로소득 4 통 학 9 기 타 5 실직(업) (이유)	1 있 다 2 없 다	1 구하여 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하여보지 못했음 3 구하여 보지 않았음	일 (개월)			10 고용주 영업 21 단독 40 상용고 세업 22 평상 50 임시고 자주 23 노정 60 일 고 24 내직 70 없 음	시간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1 더 많이 할일거리가 없어서 2 주로하는일이가사나통학이므로 3 일시휴직 4 실직이나 새로운 직업을 구했으므로 5 기타	1 더 많이 하고싶다 2 다른 곳(일)으로 바꾸고 싶다 3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	1 수입(소득)을 더 높이기 위하여 2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3 직업의 장래성이나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4 기타 ( )
02			1 남자 2 여자	만 세	1 유배우 2 사 별 3 이 혼 4 미 혼	1 불취학 2 국 졸 3 중 졸 4 고 졸 5 대 졸	1 [redacted] 6 연 로 2 일시휴직 7 불 구 3 가 사 8 불로소득 4 통 학 9 기 타 5 실직(업) (이유)	1 있 다 2 없 다	1 구하여 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하여보지 못했음 3 구하여 보지 않았음	일 (개월)			10 고용주 영업 21 단독 40 상용고 세업 22 평상 50 임시고 자주 23 노정 60 일 고 24 내직 70 없 음	시간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1 더 많이 할일거리가 없어서 2 주로하는일이가사나통학이므로 3 일시휴직 4 실직이나 새로운 직업을 구했으므로 5 기타	1 더 많이 하고싶다 2 다른 곳(일)으로 바꾸고 싶다 3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	1 수입(소득)을 더 높이기 위하여 2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3 직업의 장래성이나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4 기타 ( )
03			1 남자 2 여자	만 세	1 유배우 2 사 별 3 이 혼 4 미 혼	1 불취학 2 국 졸 3 중 졸 4 고 졸 5 대 졸	1 [redacted] 6 연 로 2 일시휴직 7 불 구 3 가 사 8 불로소득 4 통 학 9 기 타 5 실직(업) (이유)	1 있 다 2 없 다	1 구하여 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하여보지 못했음 3 구하여 보지 않았음	일 (개월)			10 고용주 영업 21 단독 40 상용고 세업 22 평상 50 임시고 자주 23 노정 60 일 고 24 내직 70 없 음	시간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1 더 많이 할일거리가 없어서 2 주로하는일이가사나통학이므로 3 일시휴직 4 실직이나 새로운 직업을 구했으므로 5 기타	1 더 많이 하고싶다 2 다른 곳(일)으로 바꾸고 싶다 3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	1 수입(소득)을 더 높이기 위하여 2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3 직업의 장래성이나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4 기타 ( )
04			1 남자 2 여자	만 세	1 유배우 2 사 별 3 이 혼 4 미 혼	1 불취학 2 국 졸 3 중 졸 4 고 졸 5 대 졸	1 [redacted] 6 연 로 2 일시휴직 7 불 구 3 가 사 8 불로소득 4 통 학 9 기 타 5 실직(업) (이유)	1 있 다 2 없 다	1 구하여 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하여보지 못했음 3 구하여 보지 않았음	일 (개월)			10 고용주 영업 21 단독 40 상용고 세업 22 평상 50 임시고 자주 23 노정 60 일 고 24 내직 70 없 음	시간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1 더 많이 할일거리가 없어서 2 주로하는일이가사나통학이므로 3 일시휴직 4 실직이나 새로운 직업을 구했으므로 5 기타	1 더 많이 하고싶다 2 다른 곳(일)으로 바꾸고 싶다 3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	1 수입(소득)을 더 높이기 위하여 2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3 직업의 장래성이나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4 기타 ( )
05			1 남자 2 여자	만 세	1 유배우 2 사 별 3 이 혼 4 미 혼	1 불취학 2 국 졸 3 중 졸 4 고 졸 5 대 졸	1 [redacted] 6 연 로 2 일시휴직 7 불 구 3 가 사 8 불로소득 4 통 학 9 기 타 5 실직(업) (이유)	1 있 다 2 없 다	1 구하여 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하여보지 못했음 3 구하여 보지 않았음	일 (개월)			10 고용주 영업 21 단독 40 상용고 세업 22 평상 50 임시고 자주 23 노정 60 일 고 24 내직 70 없 음	시간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1 더 많이 할일거리가 없어서 2 주로하는일이가사나통학이므로 3 일시휴직 4 실직이나 새로운 직업을 구했으므로 5 기타	1 더 많이 하고싶다 2 다른 곳(일)으로 바꾸고 싶다 3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	1 수입(소득)을 더 높이기 위하여 2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3 직업의 장래성이나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4 기타 ( )
06			1 남자 2 여자	만 세	1 유배우 2 사 별 3 이 혼 4 미 혼	1 불취학 2 국 졸 3 중 졸 4 고 졸 5 대 졸	1 [redacted] 6 연 로 2 일시휴직 7 불 구 3 가 사 8 불로소득 4 통 학 9 기 타 5 실직(업) (이유)	1 있 다 2 없 다	1 구하여 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하여보지 못했음 3 구하여 보지 않았음	일 (개월)			10 고용주 영업 21 단독 40 상용고 세업 22 평상 50 임시고 자주 23 노정 60 일 고 24 내직 70 없 음	시간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1 더 많이 할일거리가 없어서 2 주로하는일이가사나통학이므로 3 일시휴직 4 실직이나 새로운 직업을 구했으므로 5 기타	1 더 많이 하고싶다 2 다른 곳(일)으로 바꾸고 싶다 3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	1 수입(소득)을 더 높이기 위하여 2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3 직업의 장래성이나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4 기타 ( )
07			1 남자 2 여자	만 세	1 유배우 2 사 별 3 이 혼 4 미 혼	1 불취학 2 국 졸 3 중 졸 4 고 졸 5 대 졸	1 [redacted] 6 연 로 2 일시휴직 7 불 구 3 가 사 8 불로소득 4 통 학 9 기 타 5 실직(업) (이유)	1 있 다 2 없 다	1 구하여 보았음 2 불가피한 사유로 구하여보지 못했음 3 구하여 보지 않았음	일 (개월)			10 고용주 영업 21 단독 40 상용고 세업 22 평상 50 임시고 자주 23 노정 60 일 고 24 내직 70 없 음	시간	1 그렇다 2 그렇지않다	1 더 많이 할일거리가 없어서 2 주로하는일이가사나통학이므로 3 일시휴직 4 실직이나 새로운 직업을 구했으므로 5 기타	1 더 많이 하고싶다 2 다른 곳(일)으로 바꾸고 싶다 3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	1 수입(소득)을 더 높이기 위하여 2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므로 3 직업의 장래성이나 직장분위기가 좋지 않으므로 4 기타 (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 번호	

(비) 지정통계제5호 농업센서스 서식제1－1호

'75간이농업센서스

조 사 표

12. 1

농 수 산 부

시 도	구시군	조사구 연련번호	총번호	농가번호		조사자	검토자
					0		

Ⅰ 농 가 인 구

① 가 구 원

	총 수	남 자	여 자
12월 1 일현재 3 개월이상 동거 및 동거할 사람은 몇명입니까? (고용원, 하숙생, 가정부등 포함)			
지난 1 년간(74. 12. 1 ～ 75. 11. 30)가구원중에서 군인, 학생, 직장등으로 집을 나아가 살고있는 사람은 몇명입니까?			
지난 1 년간(74. 12. 1 ～ 75. 11. 30)외지로부터 들어온 사람이 있읍니까?			

만 14 세 이 상 만 ⑥⑦⑧ 란을 조사 ⇨

	가구원이름 (고용원, 하숙생, 가정부등포함)	경영주와의 관계	연령 (만)	성별 (하나만 ○표) 남	여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	고용원	하숙생	가정부	기타	농사에 종사한 일이 있읍니까? (하나만 ○표) 1개월미만	1～2	2～3	3개월이상	농사이외에 종사한일이 있읍니까? (하나만 ○표) 1개월미만	1～3	3～6	6개월이상	종사한 분야는 주로 어느것입니까? (하나만 ○표) 농업	농업이외의일	가사	학생	기타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1		경 영 주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2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3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4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5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6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7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8		1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9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0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1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2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3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4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5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6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7		2		1	2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② 겸 업 ❼ 란 2, 3, 4에 ○표있는 가구만조사)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수입은 어느것이 많읍니까?

300	00	1

⇨ ○표 있으면 ○표 있으면 아래 1에 ○표

- 농업수입이 많다 ⇨ 1
- 겸업수입이 많다 ⇨ 2

(하나만 ○표)

Ⅱ 농 경 지

		없다 V표		천	백	십	평
논 면 적 (402+403)			401				
소유 관계	자 기 소 유 논		402				
	남 의 논(국공유포함)		403				
'75년에 2 회이상 작물을 심은논			404				
밭 면 적 (406+407)		없다 V표	405				
소유 관계	자 기 소 유 밭		406				
	남 의 밭(국공유포함)		407				
수원지면적	(409+410+411+412 =413+414)	없다 V표	408				
	과 수 원		409				
	뽕 밭		410				
	묘 포		411				
	기 타 (화훼, 관상수목등)		412				
	소유 관계 자 기 수 원 지		413				
	소유 관계 남 의 수 원 지 (국공유포함)		414				

Ⅲ 작 물

만 이상인 경우는 천 단위에 합해 기입한다 ⇨ 23,560

천	백	십	평
23	5	6	0

	없다 V표		천	백	십	평
논 벼		501				
그중 통일벼		502				
밭 벼		503				
보 리		504				
그중 논보리		505				
쌀 보 리		506				
그중 논쌀보리		507				
밀		508				
그 중 논 밀		509				
호 밀		510				
그중 논호밀		511				
그중 사료용 및 녹비용 호밀		512				
조		513				
옥 수 수		514				
기장, 수수, 피, 메밀		515				
콩		516				

	없다 V표		천	백	십	평
팥		517				
땅 콩		518				
녹두, 채두, 완두, 기타콩		519				
고 구 마		520				
감 자		521				
담 배		522				
인 삼		523				
참 깨		524				
들 깨		525				
유 채		526				
김 장 배 추		527				
김 장 무 우		528				
마 늘		529				
파		530				
양 파		531				
고 추		532				

Ⅳ 가축·가금

	없다 V표		천	백	십	마리		없다 V표		천	백	십	마리		없다 V표		천	백	십	마리
① 젖소 (602+605+608+611)		601					② 소		618					③ 고기소		631				
만 2 세 미 만		602							619							632				
그 중 암컷		603							620							633				
그 중 수컷		604							621							634				
만 2 세 이 상 ~ 만 5 세 미 만		605							622							635				
그 중 암컷		606							623							636				
그 중 수컷		607							624							637				
만 5 세 이 상 ~ 만 8 세 미 만		608							625							638				
그 중 암컷		609							626							639				
그 중 수컷		610							627							640				
만 8 세 이 상		611							628							641				
그 중 암컷		612							629							642				
그 중 수컷		613							630							643				

품종	홀스타인	614				
	저지	615				
	건지	616				
	기타	617				

품종	부라만	644				
	애버딘앵거스	645				
	헤어포드	646				
	교잡종 (F1)	647				
	기타	648				

	없다 V표		천	백	십	마리
④ 댁지		649				
6 개 월 미 만		650				
그 중 암컷		651				
그 중 수컷		652				
6 개월이상~10개월미만		653				
그 중 암컷		654				
그 중 수컷		655				
10 개 월 이 상		656				
그 중 암컷		657				
그 중 수컷		658				

품종	버크샤	659				
	요크샤	660				
	햄프샤	661				
	랜드레이스	662				
	기타	663				

부화된후 20일을 경과하지 않은 병아리는 제외한다.

⇩

	없다 V표		천	백	십	마리
⑤ 닭		664				
3 개 월 미 만		665				
3개월이상~6개월미만		666				
그 중 암컷		667				
그 중 수컷		668				
6 개 월 이 상		669				
그 중 암컷		670				
그 중 수컷		671				

용도	산란용	672				
	육용	673				

1 일 산 란 량		674				

	없다 V표		천	백	십	마리
⑥ 토끼		675				
그 중 앙고라		676				
그 중 기타		677				

Ⅶ 지붕개량및연료

하나만 ○표	지붕개량 연도		시설자재 기와	시설자재 함석	시설자재 스레이트	시설자재 기타
800			1	2	3	4

연료 연탄	연료 연탄혼용	연료 기타
1	2	3

하나만 ○표

• **지붕개량**
연도는 70년도 및 그 이전은 70으로 그 이후는 71, 72, 73, 74, 75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연 료**
가구에서 사용하는 주된 연료를 말한다.
연탄혼용은, 연탄과 나무, 짚, 초목류를 혼용하는것.
기타는, 나무, 짚, 초목류만을 연료로 사용하는것

Ⅵ 업태별농가구

하나만 ○표		답작	전작(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축산	양잠	임금농업노동	기타	조사지역 조사구내	조사지역 조사구외
700	00	1	2	3	4	5	6	7	8	9	0	1

Ⅷ 문화시설

해당란에 ○표	전기	신문	라디오	전축(음향기포함)	재봉틀	선풍기	테레비전	냉장고	자전거	오토바이
900	0	1	2	3	4	5	6	7	8	9

Ⅴ 농기구

	없다 V표		자기소유 공동소유인경우 12. 1현재보유자 앞으로 조사 총대수	그 중 인력	그 중 동력	빌려쓴일이있으면 1표
분무기		701				
살분무기		702				
탈곡기		703				
동력경운기		704		0	0	
동력양수기		705		0	0	

경지면적, 가축 가족사항 등을 기초로 하여 농가의 농업수입중 가장 많은 수입이 되는 것을 조사하여 1농가 1업태로 구분한다.

기 타 : 농업부대 써비스업

(양수, 탈곡 화훼, 양표, 양송이)

소 속 도사무소 시군출장소

조사자

직급_____ 성명_____

검토자

직급_____ 성명_____

비 고

1973년
광공업센서스조사표〔I〕

지정통계 제6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자본계층
—		☆	☆	☆	☆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부산직할시 시 동 번지 호
도 군 읍·면 리 (통 반)

2. 본사명 및 소재지

본 사 명

대표자명 (전화)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부산직할시 시 동 번지 호
도 군 읍·면 리 (통 반)

3. 창설년 월 일

19 년 월 일

4.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1)주식회사( ) (2)기타법인( )
(3)개 인(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하여 1973.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주요생산품명 : ① ②
(2)생 산 공 정 :

7. 종업원수

○. 사업주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주당 24시간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자를 말한다.
○. 피고용자에는 상용, 임시 및 일고 종업원과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하되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3,6,9,12월 가운데 휴업한 월에는 피고용자수 앞에 △ 표시를 한다)

구 분		3 월 말	6 월 말	9 월 말	12 월 말		
					계	남	여
(1)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2)피고용자	①생산종업원						
	②사무 및 기타종업원						
합 계							

8. 월별 조업일수

○. 조업일수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한다.
○.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을 제외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9. 연간 급여액
(1973. 1. 1 ~12. 31)

○.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물로 지급한 것과 미불액을 포함한다. (임금, 봉급, 수당및 상여금, 생계보조금등)
○. 퇴직위로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한다.

(1)생 산 종 업 원								(2)사무 및 기타 종업원								(3)합 계〔(1)+(2)〕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주(註)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10. 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1973. 1. 1 ~12. 31)

○. 완제품 출하액은 직접생산한 완제품과 위탁생산한 완제품 중에서 1973년간에 출하한 것을 기입한다. (외상판매, 견본및 선물용, 사무용및 급여용,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도 포함)
○. 완제품 출하액은 13의(1)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완 제 품 출 하 액 : 공장 인도가격으로 물품세, 주세, 석유류세, 직물류세 등이 포함된 금액.								
(2)폐 품 판 매 액 :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합격품 및 제품등의 판매액.								
(3)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 수탁생산하고 받은 가공임, 수리대금으로 받은금액.								
합 계								

11. 연초·연말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973. 1. 1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3. 12. 31현재로 소재장소에 관계없이 사업체소유의 제고품 전부를 장부가격으로 기입한다.
○. 위탁생산으로 인한 제고품은 포함하고 수탁생산으로 인한 제고품은 제외한다.
○. 완제품의 제고액은 13의 (2),(3)의 합계와, 원재료의 제고액은 14의 (2),(3)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구 분	(1) 연 초 재 고 액								(2) 연 말 재 고 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완 제 품																
②반제품 및 재공품																
③원 재 료																
④연 료																
합 계																

12. 연간주요생산비
(1973. 1. 1 ~12. 31)

○. 1973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비용중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 자가생산된 중간제품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최초의 원재료만 기입한다.
○. 원재료비는 14(1)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원 재 료 비 : 생산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운임포함)										
(2)연 료 비 가열용, 동력용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를 말한다.	①석 탄 류	M/T								
	②유 류	ℓ								
	③기타연료									
	연 료 비 소 계									
(3)구입전력비 : 전기요금(사무실포함), 미불금포함.		1,000 KWH								
(4)구입용수비 :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										
(5)위탁생산비 : 가공임(위탁생산을 위해 제공한 원재료비는 제외)										
(6)수리유지비 : 유형 고정자산의 수리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										
합 계										

13.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품목명 및 수량단위는 법제「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 분류표에 없거나 구분하기 힘든 품목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수량단위로 기입하고 적요란에 명기한다.
○ 출하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는 10(1)과, 품목별 완제품 연초·연말 재고액합계는 11의①과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완 제 품 명	☆	단위	(1)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수 량								(2)품목별 완제품 연초 재고액 수 량								(3)품목별 완제품 연말 재고액 수 량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합 계																												

14.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품목명 및 수량단위는 법제「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 분류표에 없거나 구분하기 힘든 품목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수량단위로 기입하고 적요란에 명기한다.
○ 사용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생산된 완제품과 무입된 원재료의 연관성에 유의하여 기입한다.
○ 구입사용한 원재료가 수입품이면 I에 국산품이면 2에 ○표한다. (수입품과 국산품이 혼합된 품목은 일련번호를 달리하여 줄을 바꾸어 기입)
○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합계는 12의(1), 품목별 원재료 연초·연말 재고액 합계는 11의③과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원 재 료 명	구분 수입	구분 국산	☆	단위	(1)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수 량								(2)품목별 원재료 연초 재고액 수 량								(3)품목별 원재료 연말 재고액 수 량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1	2																								
②			1	2																								
③			1	2																								
④			1	2																								
⑤			1	2																								
⑥			1	2																								
⑦			1	2																								
⑧			1	2																								
⑨			1	2																								
⑩			1	2																								
⑪			1	2																								
⑫			1	2																								
⑬			1	2																								
⑭			1	2																								
⑮			1	2																								
⑯			1	2																								
⑰			1	2																								
⑱			1	2																								
⑲			1	2																								
합 계																												

15. 동력시설

○ 수리중인 것과 예비용을 포함하여 1973. 12. 31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력시설의 능력을 기입한다.
○ 전동기에는 사무용 기계나 실내장치에 부착된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에는 차량용과 선박용을 제외한다.

(1)전 동 기							(2)원 동 기							(3)자가발전능력						
단위	십만	만	천	백	십	일	단위	십만	만	천	백	십	일	단위	십만	만	천	백	십	일
HP							HP							KW						

16. 건설가계정

○ 건설가계정은 유의한다.
○ 연간 증가액이 액을 기입한다.

연도별 자본 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 표시를 하고 그 차

(1)건설가계정 연간증가								(2)건설가계정 연간감소								(3)연간증감〔(1)−(2)〕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7. 조사표 작성근거

○ 출하액 및 재고액과 제18항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해당 ( ) 안에 ○표 한다.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장부는 복식부기를 말한다.

(1)출하액 및 재고액	(2)유형 고정 자산
①장 부 ( )	①장 부 ( )
②일부기억 ( )	②일부추정 ( )
③기 억 ( )	③추 정 ( )

18(A). 유형고정자산
(법인사업체용)

○ 본란은 제17항 (2)란에서①에 ○표한 모든 사업체에 해당한다.
○ 자산분류 「3.건물부속설비」는장부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 「2.건물」에 포함한다.
○ (2)란의 신품에는 모든 수입품(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 포함)과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 (3)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에서 연간처분액이 연간취득액보다 많을 경우 △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 (5)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에는 1965년 1월 1일이후 화근의 재평가 결과를 기입한다.
○ 1973년 및 1968년말 현재 총평가액은 연말현재로 기입하되 작성이 곤란할 경우 등 회기연도말
○ 해당사항이 없는 난에는 사선(\)으로 표시한다.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 설 년	조직형태	자본계층
		☆	☆	☆	☆	☆

포함한다.
기입한다.
장부가액을 기입한다.

자산분류	(1)1973년말 현재총평가액	(2)1973년 유형고정자산취득액 및 처분액 — 연간취득액 — 신품	연간취득액 — 중고품	연간처분액 — 신품	연간처분액 — 중고품	연간상각액	(3)연도별 순자산취득액(연간취득액-연간처분액) —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4)1968년말 현재 총평가액	(5)19□□년 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 — 재평가직전 기말잔고	재평가직후 기말잔고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지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2 건물													
①철근·석조 및 철골조													
②토벽·목조 및 목골조													
3. 건물부속설비													
4. 구축물													
①자가발전 및 급수시설													
②교통시설 및 기타													
5. 기계 및 기치													
6. 공구·기구및비품													
7. 차량 및 운반구													
8. 선박													
합계													

주의
1. 본조사표는 조사표[I]에 계속되는 것이므로 실사과정에서부터 조사표 제출 및 심사과정까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본 조사표 우측상단의 「조사구번호」와 「조사표번호」를 반드시 기입한다. (☆란은 제외)

18(B). 유형고정자산
(개인 사업체용)

○ 본란은 제17항(2)란에서 ② 또는 ③에 ○표한 모든 사업체에 해당된다.
○ 자산분류「4.기계 및 장치」,「5.공구, 기구 및 비품」,「6.차량,선박 및 운반구」에는 가격이 큰 수량 및 금액순으로 기입하고 나머지는 합산하여 기타란에 기입한다.
○ (2)란의 신품에는 모든 수입품(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 포함)과 중 개축액을
○ (3)사업목적에 사용되는 비율에는 해당 유형고정자산이 생산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비중을 백
○ (1)소유관계 및 (2)신·중고 구분은 해당번호에 ○표한다. (예 : 토지는 중고품으로서 2에 ○
○ 해당사항이 없는 난에는 사선(/)으로 표시한다.

자산부터 자산명.
포함한다.
분을로 표시한다.
표)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 설 년	조직형태	자본계층
		☆	☆	☆	☆	☆

☆분류번호	자산분류	수량	(1)소유관계 — 소유	차량	(2)취득시기및신고구분 — 취득시기	신·중고구분 — 신품	중고품	(3)사업목적에 사용되는 비율	(4)1973년말 현재 총평가액(현시가)	연간 신품	(5) 1973년 유형고정자산 취득액 — 중고품	연간처분액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00	토지	평	1	2	19 년	1	2	%				
200	건물(부속시설포함)											
210	①철근·석조 및 철골조	동 평	1	2	19 년	1	2	%				
220	②토벽·목조 및 목골조	동 평	1	2	19 년	1	2	%				
400	구축물	건	1	2	19 년	1	2	%				
500	기계 및 장치											
	①		1	2	19 년	1	2	%				
	②		1	2	19 년	1	2	%				
	③		1	2	19 년	1	2	%				
	④		1	2	19 년	1	2	%				
	⑤		1	2	19 년	1	2	%				
599	기타	건										
600	공구·기구 및 비품											
	①		1	2	19 년	1	2	%				
	②		1	2	19 년	1	2	%				
	③		1	2	19 년	1	2	%				
	④		1	2	19 년	1	2	%				
	⑤		1	2	19 년	1	2	%				
699	기타	건										
700	차량·선박 및 운반구											
	①		1	2	19 년	1	2	%				
	②		1	2	19 년	1	2	%				
	③		1	2	19 년	1	2	%				
779	기타	건										
000	합계											

적요 : 구분이 힘든 품목명, 사업체 사용단위, 유고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입한다.

※자산분류

1.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垈地) 사택대지(社宅垈地), 운동장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토지개량비 [정지, 배축(埋築)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 부담금]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2. **건 물(건물부속설비 포함)**
사람들이 거주 사용등의 목적으로 건축한 것과 건물사용의 필요상 또는 사용을 편리하게할 목적으로 건물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예 :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냉방장치, 조명장치등 부속설비.

3. **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모든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예 : 도로, 철도, 정거장(停車場) 설비등 교통시설, 발전 및 송배전시설, 저수지, 상 하수도, 수조(水槽) 탱크, 갱도(坑道) 등

4. **기계 및 장비**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反射炉), 가열로(加熱炉), 분류탑 (分溜搭) 및 전도장치 (伝導装置) 등을 포함한다.
예 : 보일러, 선반, 직기, 여과기, 롤러레서, 롤베어, 전동기, 인쇄기계, 제분기등 자중 동력기계, 제조 및 가공기계

5. **공구·기구 및 비품**
공구란 기계 또는 수공에 의하여서 직접 물건을 제작 또는 가공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용구를 말하고, 기구 및 비품은 공구 이외의 용구품(用具品)을말한다.
예 : 재봉틀, 확차, 캇터(절단기), 전기드릴, 만력(만리끼), 오스타(톱파는것), 진열장, 실내장식품, 의료용구, 캐비넷, 금고, 책상, 의자 등.

6. **차량·선박 및 운반구**
이동하는 모든 운반기관(運搬機関) 및 운반용구를 말하며 통상 필요한 범위의 부속물을 포함한 다.
예 : 철도차량,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선박, 자전거, 리아카등 자쿳운반구.

①작성년월일	②응답자소속	③응답자성명	④조사원성명	⑤지도원성명
1974년 월 일	전화 (과)	㊞	㊞	㊞

주의
1. 본 조사표는 조사표[I]에 계속되는 것이므로 실사과정에서 부터 조사표제출 및 심사과정까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본 조사표 우측상단의 「조사구번호」와 「조사표번호」를 반드시 기입한다. (☆란은 제외)

지정통계 제6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3년 광공업 센서스조사표 (Ⅱ)

(본사·본점 조사용)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 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조직형태	창설년	자본계층
		☆	☆	☆	☆	☆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부산직할시 시 동 번지 호
도 군 읍·면 리(통 반)

2. 창설년월일

19 년 월 일

3.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1) 주식회사 ( ) (2) 기타법인 ( )
(3) 개 인

4.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하며 1973. 12. 31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5.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자를 말한다.
○ 피고용자에는 상용, 임시 및 일고종업원과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하되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휴업한 월에는 피고용자수 앞에 △표시를 한다).
○ 연간 급여액에는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물로 지급한 것과 미불액을 포함한다. (퇴직위로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

구 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계	12월말 남	12월말 여	연간급여액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	×	×	×	×
(2) 피 고 용 자												
합 계												

6.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 본사 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 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 연초 재고액은 1973. 1. 1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3. 12. 31현재로 기입한다.
○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는 각각 시가로 평가한다.

구 분	(1) 연초재고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 연말재고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원 재 료																
② 연 료																
합 계																

주(註)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7. 관할 사업체명부

○ 1973. 12. 31현재 본사(본점)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를 기입한다.
○ 경제활동구분란에는 사업체의 해당 경제활동에 ○표 한다.
○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 비(非)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비고난에 주요 생산품명을 기입한다.
○ 기타(비광공업)의 경우에는 비고난에 해당 경제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도매업, 무역업, 건설업등)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종업원수	경제활동구분 광공업	겸업	기타	비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8. 건설가계정

○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3) 연간증감 [(1)−(2)]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9. 조사표 작성근거

○ 제6항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과 제10항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해당 ( ) 안에 ○표 한다.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장부는 복식부기를 말한다.

(1)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	(2) 유형고정자산
① 장 부 ( )	① 장 부 ( )
② 일부기억 ( )	② 일부추정 ( )
③ 기 억 ( )	③ 추 정 ( )

10. 유형고정자산

○ 자산분류중 「3. 건물부속설비」는 장부상 구분이 곤란할 경우 「2 건물」에 포함한다.
○ (2)란의 신품에는 모든 수입품(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포함)과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에서 연간처분액이 연간취득액보다 많을 경우 「△」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 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에는 1965년 1월 1일 이후 최근의 재평가 결과를 기입한다.
○ 1973년 및 1968년말 현재 총평가액은 연말현재로 기입하되 작성이 곤란할 경우 동 회계연도말 장부가액을 기입한다.
○ 해당 사항이 없는 난에는 사선(\)으로 표시한다.

자산분류	(1) 1973년말 현재총평가액	(2) 1973년 유형고정자산 취득액 및 처분액: 연간취득액 신품	중고품	연간처분액 신품	중고품	연간감가상각액	(3)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연간취득액−연간처분액):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4) 1968년말 현재총평가액	(5) 19□□년 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 재평가직전 기말잔고	재평가직후 기말잔고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 지	평	××××××××	평	××××××××	평	××××××	평	평	평	평	평	××××××××	××××××××
		××××××××		××××××××		××××××							
2. 건 물 (주거·비주거용)													
① 철근·석조 및 철골조													
② 토벽·목조 및 목골조													
3. 건물부속설비													
4. 구 축 물													
① 자가발전 및 급수시설													
② 교통시설 및 기타													
5. 기계 및 장치													
6. 공구·기구 및 비품													
7. 차량 및 운반구													
8. 선 박													
합 계													

적 요 : 유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입한다.

① 작성년월일	② 응답자소속	③ 응답자성명	④ 조사원성명	⑤ 지도원성명
1974년 월 일	(전화 과)	㊞	㊞	㊞

지정통계 제 6 호

1973년
광공업센서스조사표(Ⅲ)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영 세 사 업 체 용)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조업월수		
		☆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명과 소재지만 기입한다.

사업체명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구 로·동 가

부산직할시 시 동 번지 호

도 군 읍·면 리(통 반)

2.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주요생산품명 :

(2) 생 산 공 정 :

3. 연간조업월수 :

조업월이라 함은 월 15일이상 작업한 달을 말한다.

(1) 조업월수 : ( )개월

(2) 해당란에 ○표 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 종업원수 및 월평균 급여액

○. 사업주및 무급 가족종사자는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않는자를 말한다.
○. 1973. 12. 31현재의 연말종업원수와 1973년 조업기간중 평균종업원수의 해당숫자에 ○표한다.
○. 월평균 급여액에는 현물로 지급한 것도 지급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구 분	연말종업원수 (1973. 12. 31 현재)	조업기간중 평균 종업원수 (1973. 1. 1~12. 31)	월평균 급여액		
			십만	만	천원
(1) 사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	0 1 2 3 4	0 1 2 3 4	×	×	×
(2) 유 급 종 업 원	0 1 2 3 4	0 1 2 3 4			
합 계	1 2 3 4	1 2 3 4			

5. 완제품의 월평균 판매량 및 판매액

○.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한 완제품중에서 조업기간중 월평균 판매액이 큰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타광공업 사업체로 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제조한 완제품은 제6항에 기입한다.
○. 품목명및 수량 단위는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완제품명	☆	단위	월평균 판매량	월평균 판매액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②										
③										
④										
합 계										

주(註(: ☆ 란은 기입하 지않는다.

6. 수탁제조의 월평균 생산량 및 수입액

○. 타 광공업 사업체로 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제조한 완제품 중에서 수탁제조 수입액(가공임)이 큰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타 산업부문(무역업, 도매업등)으로 부터의 수탁제조인 경우에는 직접 원재료를 구입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5항에기 입한다.
○. 품목명및 수량단위는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완제품명	☆	단위	월평균 생산량	월평균 수입액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②										
③										
④										
합 계										

7. 월평균 주요 생산비

○. 제5항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업기간중 사용한 월평균 생산비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 기타란에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월평균 지불액을 기입하며 가구사용분이 생산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구분되는 경우이를 제외한다.

구 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원 재 료 비 : 제5항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재료비					
(2) 연 료 비 제 : 항5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석탄류, 유류 및 기타 연료비					
(3) 기 타 :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월평균 지불액					
합 계					

8. 유형고정자산

○. 연말총액란은 1973. 12. 31현재의 금액으로, 기타의 란에는 1973년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 외국으로부터 직접수입한 중고품은 신규취득액에 포함한다.
○. 연간처분액에는 매각, 양도. 재해등에 의한 처분및 감소액을 기입한다.

구 분	(1) 연말총액					(2) 연간신규취득액					(3) 연간중고취득액					(4) 연간처분액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토지·건축물및구축물																				
② 기계·기구및장치																				
③ 차량·선박및운반구																				
합 계																				

적 요 : 구분이 힘든 품목명, 사업체 사용단위, 유고사유, 기타 참고사항등을 기입한다.

① 작성년월일	② 응답자연락처	③ 응답자성명	④ 조사원성명	⑤ 지도원성명
1974년 월 일	(전화)	㊞	㊞	㊞

지정통계 제7호

통 계 법

제8조.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9조.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78 년상주인구조사표

조사원성명	㊞
지도원성명	㊞

충 청 북 도 시군 동읍면 리 (매통 매)

일련번호																											계
가구주성명																											
가구의구분	보통가구	2인이상가구																									
		단독가구(1인)																									
	준 가 구																										
성별 연령별 계급별 인구	총 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1977.10.1 ~1978.9.30	남																								
			여																								
	1	1976.10.1 ~1977.9.30	남																								
			여																								
	2	1975.10.1 ~1976.9.30	남																								
			여																								
	3	1974.10.1 ~1975.9.30	남																								
			여																								
	4	1973.10.1 ~1974.9.30	남																								
			여																								
	5	1972.10.1 ~1973.9.30	남																								
			여																								
	6	1971.10.1 ~1972.9.30	남																								
			여																								
	7	1970.10.1 ~1971.9.30	남																								
			여																								
	8	1969.10.1 ~1970.9.30	남																								
			여																								
	9	1968.10.1 ~1969.9.30	남																								
			여																								
	10	1967.10.1 ~1968.9.30	남																								
			여																								
	11	1966.10.1 ~1967.9.30	남																								
			여																								
	12	1965.10.1 ~1966.9.30	남																								
			여																								
	13	1964.10.1 ~1965.9.30	남																								
			여																								
	14	1963.10.1 ~1964.9.30	남																								
			여																								
	15	1962.10.1 ~1963.9.30	남																								
			여																								
	16	1961.10.1 ~1962.9.30	남																								
			여																								
	17	1960.10.1 ~1961.9.30	남																								
			여																								
	18	1959.10.1 ~1960.9.30	남																								
			여																								
	19	1958.10.1 ~1959.9.30	남																								
			여																								
	20	1957.10.1 ~1958.9.30	남																								
			여																								
	21	1956.10.1 ~1957.9.30	남																								
			여																								
	22	1955.10.1 ~1956.9.30	남																								
			여																								
	23	1954.10.1 ~1955.9.30	남																								
			여																								
	24	1953.10.1 ~1954.9.30	남																								
			여																								
	25	1952.10.1 ~1953.9.30	남																								
			여																								
	26	1951.10.1 ~1952.9.30	남																								
			여																								
	27	1950.10.1 ~1951.9.30	남																								
			여																								
	28	1949.10.1 ~1950.9.30	남																								
			여																								
	29	1948.10.1 ~1949.9.30	남																								
			여																								
	(0~29) 소 계		남																								
			여																								
	30-34	1943.10.1 ~1948.9.30	남																								
			여																								
	35-39	1938.10.1 ~1943.9.30	남																								
			여																								
	40-44	1933.10.1 ~1938.9.30	남																								
			여																								
	45-49	1928.10.1 ~1933.9.30	남																								
			여																								
	50-54	1923.10.1 ~1928.9.30	남																								
			여																								
	55-59	1918.10.1 ~1923.9.30	남																								
			여																								
	60~64	1913.10.1 ~1918.9.30	남																								
			여																								
	65-69	1908.10.1 ~1913.9.30	남																								
			여																								
	70-74	1903.10.1 ~1908.9.30	남																								
			여																								
	75-79	1898.10.1 ~1903.9.30	남																								
			여																								
	80-84	1893.10.1 ~1898.9.30	남																								
			여																								
	85세 이상	1893.9.30	남																								
			여																								
	(30~85이상) 소계		남																								
			여																								
경제활동사항(5인미만의광공업사업체)	산업구분	광 업																									
		제조업																									
	종 업 원 수																										
	주요생산품명																										
가 구 주 인																											

(주) 1. 총계란의( ) 내에는 부재중인 상주자 인구를 기입할것.
2. 총계에는 부재중인 상주자를 포함할것.

'78상주인구조사요령

1. 목 적
   1) 지역별 상주 인구의 변동사항 및 연령구조를 파악
   2) 가구에 대하여 보통 가구(2 인이상가구, 단독가구)와 준 가구로 구분 조사
   3) 주민소득 추계 및 광공업부문의 계획수립에 기본자료인 5인미만 사업체 파악 으로 지방행정기관의 제반 시책에 기본자료를 제공함.
2. 조사기준시점
   78. 10. 1. 0시 현재
3. 조사범위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 전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조사함.
4. 조사기간
   78. 10. 1~78. 10. 7 (7 일간)
5. 조사대상
   78. 10. 1. 0 시를 기준 시점으로하여 조사지역내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을 조사대상으로함.

가. 개 념
   1) 상주 인구란 가구를 단위로 하는 그 가구원으로서 조사기준일을 중심으로 그 곳에서 3 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3개월 이상을 거주하려고 하는자 또는 통산 3 개월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상주자에는 상주자와 부재중인 상주자로구분함.
   2) 가구란 1 인 또는 2 인 이상이 모여서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를 말하며 이는 보통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함. 조사 편의상 보통가구를 2 인이상 가구와 단독가구(1 인가구)로 재분류 하였음.

가) 보통가구
   가구주를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가구로서 가구주와 그 가족만이 살고 있는 가구. 가구주 및 그 가족과 친척 또는 그밖의 사람(하숙생, 동거인, 가정부, 머슴, 점원등)이 같이 살고 있는 가구, 혼자 살림하는 단독 가구를 말한다
   1. 2 인이상가구
      2 인 이상이 모여 취침, 취사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로 일반 가정과 같이 주로 가족이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하며 5 인 이하의 동거인 가사 사용인 및 하숙집에 거주하는 자들도 이에 포함된다
   2. 단독가구(1 인가구)
      1 인이 취침·취사 및 생계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관, 하숙집등에서 단신으로 별도의 생계를 하고 있을 때에도 주인 가구에 포함치 않고 단독 가구로 조사함.

나) 준 가구
   보통가구(1 인가구•2 인이상 가구)와 달리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모여 거주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기숙사·합숙소·양육원·수도원·사찰·요양소등을 말함.
   나. 다음과 같이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의 사람은 부재중인 상주자로 본가에서 조사하여야 함.
      1) 국군의 주둔지 요새, 기지, 함상 및 관련시설의 군인 및 상주하는 민간인
      2) 전투경찰대
      3)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의 재소자
         (다, 경찰서의 유치인은 본가에서 상주자로 조사하여야 함)
      4) 공무로 해외에 파견된자및 그 수행원과 그 가족
   다. 다음과 같은 외국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1) 외국인중 군인 군속 및 가족
      2) 외국의 외교관과 국제연합 및 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중인자 및 그 수행원과 가족
      3)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관광 여행을 목적으로 체류중인자
   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가구로 파악하여 2 인가구 단독가구 또는 준 가구로 구분함.
      1) 숙박업소에 투숙하여 생계를 독립으로 하는 독신자 또는 2 인 이상의 모임.
      2) 다방, 음식점, 상점, 공장등의 영업장소에서 주인 가구와 별도로 숙식을 하는 종업원
      3) 1 인 또는 2 인 이상이 같이 자취하는 사람
      4) 외국인 가구 또는 사업소에서 숙식을 하는 한국인 종업원.
6. 조사사항(별첨참조)
   가. 가구주 성명
   나. 가구의 구분
      1) 보통가구
         가) 2 인이상 가구
         나) 단독가구
      2) 준 가구
   다. 성별 및 연령별 인구
      1) 0~29세까지는 각 세별로,
      2) 30~84세까지는 5 세 계급별로
      3) 그이상은 85세 이상으로 함
   라. 경제활동 상황(5 인 미만 광공업 사업체)
      1) 주소 2) 경제활동 구분
      3) 종업원수 4) 주요생산품명
      5) 사업체명(별첨조사표) 6) 대표자명(별첨조사표)
   마. 시부에서는 가구원의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생년월일의 항목에 대하여 보조조사표를 사용할수있음.
7. 조사상 주의사항
   가. 본조사의 조사항목은 인구 및 가구와 5 인미만광공업 사업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조사에 부가하여 농. 어 가구수 및 직업관계 도서수, 도서별면적, 토지소유관계등을조사할 수 없음
   나. 예전의 조사와 달리 가구를 보통가구(2 인이상가구, 단독가구)와 준가구로 구분하여 조사하게됨으로 개념에 유의하여 가구의 구분란에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본 요령에서 지정한 사항외에는 75년 인구 센서스 정의에 준하여 실시하여 함
   라. 군인의 경우 영외 거주권이 있는 하사관 이상은 현주지에서 상주자로 조사하고 영외 거주권이 없는 사병은 본가에서 부재중인 상주자로 조사하여야 함
   마. 국내외에 여행중인자는 본가에서 상주자로 조사되어야 하며 동원훈련중인 예비군., 방위소집 근무자는 본가에서 상주자로 조사되어야 함.
   바. 접대부, 걸인, 행상인이라 할지라도 상주개념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일정한 거처가 없을 경우는 조사시에 발견된 장소에서 조사함.
   사.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와 그 보호자는 본가의 상주자로 조사하고 요양소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준가구로 조사됨.
   아. 선박, 항공기, 철도의 합승승무원, 경찰서 보호실(유치인), 구치소에 있는자 등은 본가의 상주자로 조사되어야 함.
   자. 외국인은 국적별 조사하며 외국인이 한국인 가구에 숙식하고 있거나 한국인이 외국인 가구에 숙식하고 있을때는 별도의 가구로 조사하여야 함
   차) 하숙인이 6 인이상의 경우에는 주인가구와 별도의 가구로 준가구에 포함하여 조사되어야 함
   카. 취업 또는 취학으로 타지에서 숙식(자취 또는 하숙) 하고 있는자의 경우 본가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숙식하고 있는 곳에 상주자로 조사되어야 함
   타. 동거가구(특히 1 인가구)를 주인가구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파. 호적과는 다르더라도 실제 만세 연령으로 조사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생후 만1 년이 못된 유아(0 세)를 1 세로 조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하. 다음 사항은 누락의 여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함.
      1) 0 세 어린이
      2) 가정부, 친지, 하숙인, 동거인
      3) 항공기나 배를 타는 자
      4) 사업상 잠시 출타나 친지 방문으로 출타한 자
   갸. 다음 사항은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함
      1) 방문객인 손님
      2) 외지에 취업 취학등으로 정착하여 생활하는 자
      3) 분가한 자
8. 조사원이 유의해야 할 기타사항
   가.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조사원증을 휴대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조사원은 조사구내의 매가구를 빠짐없이 순방하여 조사요령에 의거 조사하되 가구원중에서 가구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응답자를 선정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다. 본 조사 이외에 어떠한 사항도 이조사와 함께하여서는 안된다.
   라. 이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점을 잘 이해 시켜야 다.
9. 조사표기재요령
   가. 조사표 각란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고 청·흑색볼펜으로 작성한다
   나. 일련번호란 : 조사구단위로 각가구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다. 가구주성명란 : 가구주 성명은 한글로 기입하고 준가구에 있어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자' 하고 표시하고 성명을 기입한다.
   라. 가구의 구분 및 산업구분란 : 해당란에 ○표로 기입할것
   마. 성별, 연령별, 계급별인구란 : 가구주를 포함한 전가구원(부재중인상주자포함)을 남녀별, 년령, 계급별로 조사하여 해당란에 기입하되 총계란에 남녀합계를 기입하고( )내에는 부재중인 상주자 인구를 기입한다
   바. 가구주인란 : 가구주의 인장을 필히 날인받아야 한다
   사. 경제활동사항란 : 가구주와 사업주가 동일하고 동일장소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입하고 가구와 사업체가 분리된 별개의 장소에 소재하는 경우와 가구주와 사업주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 조사표(상주인구조사부표) 를 활용한다
   아. 란외기입사항 : 조사구단위로 조사표가 2 매 이상일때 에는 몇매중 몇매라고 기입하고 조사구단위 행정구역명을 기입한다
   자. 조사구 단위로 조사표마다 소계를 기입하고 최종조사표 에는 소계 다음에 합계를 기입한다.
   차. 조사표 우측상단에는 조사원의 성명을 기입날인하고 지도원은 이를 확인 서명 날인한다
10. 조사표제출
   조사원은 조사표 제출전에 최종검토하여 누락, 착오 불실기재 등이 발견될시 즉시 보완 정리한후 읍면동 지도원에게 제출한다.

일계부 기입상 유의점

1. 수입표, 지출표, 작업표 및 작업시 소비한 현물표는 이틀에 한번씩 꼭 기입하십시오.

   그리고 수확량표, 도정량표, 자가생산물 자가소비표 및 음식용 양곡소비량표는 열흘 (10일)에 한번씩 기입하십시오.

2. 그날에 기입할 사항이 너무 많아 칸수가 모자라면 날자에 관계없이 다음 장이나 앞장의 같은 표의 남은 칸에 기입하십시오.

3. 자표의 "수량" 단위는 가능한 한 kg, ℓ, cc 등으로 표시하시되 잘 모르시면 "가마" "말" "되" "홉" 등 잘 아는 단위로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4. 기입상에 의문이 있으시면 본 일계부 뒤에 있는 백지에 기입하셨다가 조사원에게 물어 보십시오.

5. 귀하가 제공하는 자료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귀중한 자료임을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본 자료는 법에 의하여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니 안심하시고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 조사원 기입란

시도번호	
지구번호	
농가번호	
경지규모	

경 고

이 장부는 통계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 조사원이나 이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외의 사람은 보지못함

농가경제조사

일 계 부

78년 월

농 수 산 부

가 구 원 표

경영주와의관계	성별	노동능력	취업사항		주 업	부 업	최종학력	연령
			영 농	비영농				

농가방문기록표 (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경지개황표

지목		경작면적	자작면적	차용면적
논	일모	평	평	평
	이모			
밭				
과수원				
묘포				
뽕밭				
기타				

가축개황표

종류	수량	평가액
한우		
젖소		
말		
돼지		
염소		
오리		
닭		
토끼		
꿀벌		
양잠		
뽕나무		

이들에 한번씩 꼭 기입하여 주십시오

월 일
날씨 _____

수입표

수입의 종류	판매처 수입처	수량	현금	실물 평가액	외상금액
			원	원	원

※ 수입표에는 무엇(품목)을 어디에 (수입처 혹은 판매처) 얼마만큼(수량)을 얼마에 팔았는지 기입하시고 현물수입인 경우는 평가액(실물평가액)을 써주십시오.

지출표

지출의 종류	용도	구입처 지출처	수량	현금	실물평가액	외상금액
				원	원	원

※ 에는 무엇 (품목)을 어디에 쓰려고 (용도) 어디서 (구입처) 얼마에 구입했는지 기입하시고 현물 지우는 그 평가액(실물평가액)을 써주십시오. 오늘 집에 있는 현금 총액_____

이들에 한번씩 꼭 기입하여 주십시오

작업표

구분	일한 사람	연령	성별	작물및작업명	작업시간
가족					시간
머슴					
삯꾼					
품앗이꾼					
소	자기집 소				
	남의집 소				
동력기계	자기집기계				
	남의집기계				

※ 작물 및 작업명에는 무슨작물 (배추, 무, 벼 등)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입하십시오.

작업시 소비한 현물표

작물명	소비현물	구입 자급별 구입	구입 자급별 자급	수량	환산금액
					원

※ 각종 비료, 재료, 종자, 사료 등을 소비한 현물란에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수 확 량 표 (1)

(1일부터 10일까지)

곡 종	주산물		부산물	
	수 량	평 가 액	수 량	평 가 액
		원	kg	원

※ 미곡, 맥류등은 물론 채소류, 과실류 등 모든 농산물의 수확량을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도 정 량 표 (1)

(1일부터 10일까지)

곡 종	조 곡	정 곡	부 산 물	도정료 (물량)
	ℓ	ℓ	ℓ	

※ 도정(방아찧기) 한후 "정곡"란에는 도정료(삯)를 포함한 총량을 기입하시고 도정료는 별도로 도정료 란에 기입하십시오.
※ 집에서 방아찧은 것도 빠짐 없이 기입하십시오.

자가 생산물 자가 소비표(양곡제외)(1)

(1일부터 10일까지)

품 명	용 도	수 량	평 가 액
			원

※양곡(쌀, 보리쌀, 콩, 수수등)을 제외한 채소류(무우, 배추, 시금치,등) 조미료 (파, 마늘, 깨, 등) 수산물 (낙지, 갑 등) 및 벌집 등 농산물의 부산물과 재취한 나무 등의 연료를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음식용 양곡 소비량표 (1)

(1일부터 10일까지)

곡 종	용 도	수 량	평 가 액
			원

※ 자기집에서 생산한 것이든 구입해온 것이든 모든 음식용 양곡의 소비량을 빠짐 없이 기입하십시오.
※ 자기집 식구가 소비했건 손님을 접대했건 모든 소비량을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년 도	시 도		
'78	지구약호		
	농가번호		
	경지규모	연 초	
		연 말	

경 고

이 원부는 통계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조사원이나 이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이외의 사람은 보지 못함.

지 정 통 계 제 8 호

1962. 12. 8. 공포

농가경제조사원부

농 수 산 부
경제통계담당관실

이장부를 적을 때의 주의

1. 이 장부에는 재산계통(財産系統－固定資産, 流動資産, 流通資産) 을 실제로 조사하여 적으나 농업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경지의 생산실태도 파악하도록 하였다.
2. 농가 경제조사에서는 농업용 재산만을 조사하므로 이 장부에도 농업용 재산만을 조사하여 적으나, 순전한 겸업용 재산은 조사하지 않는다.
3. 이 장부는 조사원이 항상 보관하며, 표본 농가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직접 조사하여 적어 넣도록 한다.
4. 토지자산 조사표의 부호란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부호를 기록한다.

부호 \ 구분	지 목	토지이용형태	자작대부차용별	토지등급	수리상태
1	논	일모작답(습답)	자 작 지	상	토지개량답
2	밭	이모작답(건답)	대 부 지	중	수리안전답
3	수 원 지	밭(火田포함)	차 용 지	하	수리불안전답
4	집 터	과 수 원			천 수 답
5	임 야	포 도 밭			
6	웅 덩 이	뽕 나 무 밭			
7	기 타	대 나 무 밭			
8		기 타			

5. 경지생산 실태표의 지목 부호는 집계표의 경지개황표의 지목부호에 준하며 작물부호는 작업표의 작물부호를 참조한다.

내 용

(1)가 구 원 표……2
(2)토지자산조사표……4
(3)토지자산총괄표……10
(4)건 물 표……16
(5)대 농 기 구 표……20
(6)대 식 물 표……24
(7)대 동 물 표……28
(8)소 동 물 표……32
(9)재고농산물표……34
(10)재고생산자재표……36
(11)현금 및 준현금표……38
(12)월 별 부 채 표……39
(13)분기별부채표……48
(14)경지생산실태표……58
(15)문화용품보유상황……64

01. 가 구 원 표

(가) 상 시 가 구 원

구분 \ 항목		경영주와의 관계	성 명	연 령	교육정도	농업노동능력	직업				
							자가영농종사자		임금노동자		
							상시종사자	임시종사자	소속산업별	상 시	임 시
상주가족	남자										
	여자										
가족이외	연고 남										
	연고 여										
	기타 남										
	기타 여										

주 : 상주 가족은 3개월이상 살림을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구분						비고
직장근무자					비종사자	
소속산업별	사업소명	직 명				

(나) 출 타 가 족

남녀별	경영주와의 관계	성 명	연령	최종학력	왜나가있는가?	밖에나간 날 자

주 : 출타 가족은 3개월이상 계속 밖에나가 살고있는 가족을 말한다.

취득해성년자	기 간	소 재 지	본가에대한년종금액	본가로부터의종금취득액	비 고

02. 토 지 자 산 조 사 표 (1)

지 목												
지 번												
토지이용형태												
자작·대부·차용별												
토 지 등 급												
수 리 상 태												
부호	지 목											
	토지이용형태											
	자작대부차용별											
	토 지 등 급											
	수 리 상 태											
거 리												
왕 복 시 간												
임 대 차 료												
연도초	면 적											
	평 가 액											
연중증감상황	증가액	토지개량에 의한 증가	유상취득에 의한 증가액									
			무상취득에 의한 증가액									
		개간간척및지목변경에 의한 증가	면 적									
			유상취득에 의한 증가액									
			무상취득에 의한 증가액									
		구입에의한 증 가	면 적									
			평가액									
		자산분할에 의한 증가	면 적									
			평가액									
		회수에의한 경영지의 증 가	면 적									
			평가액									
		대부에의한 대부지증가	면 적									
			평가액									
	감소액	토지개량개간척에 의한 감소	면 적									
			평가액									
		매각에의한 감 소	면 적									
			평가액									
			처분차이익									
			처분차손실									
		자산분할에 의한 감소	면 적									
			평가액									
		회수에의한 대부지감소	면 적									
			평가액									
		대부에의한 경영지의 감 소	면 적									
			평가액									
연도말	면 적											
	평 가 액											

03. 토지자산 총괄표 (1)

구분			01 경영지				(소유지)						
			경지				경지이외						합계
			1 논	2 밭	3 수원지	계	4 대지	5 임야	6 기타	계			
연초		면적											
		평가액											
		임대차료											
연중증감상황	토지개량에 의한 증가	구입지불비자급재료비											
		가족노동평가액											
	개간간척및 지목변경에 의한 증가	면적											
		평가액											
		구입지불비자급재료비											
		가족노동평가액											
	개간간척및 지목변경에 의한 감소	면적											
		평가액											
	구입 또는 차용에의한 증가	면적											
		평가액											
	자산분할에 의한 증가	면적											
		평가액											
	재해에의한 감소	면적											
		평가액											
		지목변경후의평가액											
	재해에의한 증가	면적											
		평가액											
	해가 또는 반환에의한 감소	면적											
		평가액											
	자산분할에 의한 감소	면적											
		평가액											
	회수에의한 경영지의 증가	면적											
		평가액											
	회수에의한 대부지감소	면적											
		평가액											
	대부에의한 대부지증가	면적											
		평가액											
	대부에의한 경영지의 감소	면적											
		평가액											
연도말		면적											
		평가액											
비고													

04. 건물 표 (1)

종류			01 주택	02 헛간	03 창고	04 축사	05 퇴비사	06 기타	계
구조									
건평수									
신축년도									
사용내역	농업용								
	겸업용								
	가계용								
내년용수	경과								
	장래								
연초	신조가(기초원가)								
	현재가격								
연중증감상황	내수리에 의한증가액	구입지불비자급재료비							
		가족노동평가액							
	신축증축에 의한 증가	평가							
		구입지불비자급재료비							
		가족노동평가액							
	매입에의한증가액								
	자산분할에 의한 증가액								
	감가상각액								
	재해에의한감소액								
	매각에의한감소액	평가액							
		처분차이익							
		처분차손실							
	자산분할에 의한 감소액								
연도말현재가격									
연도초농업자본액									
비고									

05. 대 농 기 구 표 (1)

종류		양수기				경운기		쟁기		분무기				살분무기				제초기			
형식		021	동력	022	수동	031	동력	032		041	동력	042	수동	051	동력	052	수동	061	동력	062	수동
구입가격또는제작비																					
사용비율	농업용																				
	겸업용																				
내용연수	경과																				
	장래																				
연초	신조가(기초원가)																				
	현재가격																				
연중증감상황	구입 및 자급에 의한 증가 대수																				
	구입지불비 자급재료비																				
	대수신재의한증가액																				
	자산분할에 의한 증가액																				
	감가상각액																				
	재해에 의한 감소액																				
	매각에 의한 감소액 평가액																				
	처분차이익																				
	처분차손실																				
	자산분할에 의한 감소액																				
연도말	수량																				
	현재가격																				
연도초농업자본액																					
비고																					

06. 대 식 물 표 (1)

종류		1 사과		2 배			3 감			4 복숭아	
수령											
내용연수	경과										
	장래										
연초	면적										
	재식주수										
	평가액(연도초농업자본액)										
연중증감상황	성장에의한증가액										
	신재식에의한증가 주수										
	평가액										
	구입에의한증가 주수										
	평가액										
	자산분할에의한증가 주수										
	평가액										
	감가상각액										
	재해에의한감소액										
	폐원또는발근정리에의한감소 주수										
	평가액										
	매각에의한감소 주수										
	평가액										
	자산분할에의한감소 주수										
	평가액										
연도말	면적										
	주수										
	평가액										
비고											

07. 대 동 물 표 (1)

종류		1 소			2 말			3 돼지		
용도										
성별										
연령										
구입또는생산년월										
구입가격										
사용비율	농업용									
	겸업용									
잔존가격율										
내용년수	경과									
	장래									
연도초	마리수									
	평가액									
연중이동상황	성장에의한증가액									
	생산에의한증가 마리수									
	생산에의한증가 평가액									
	구입에의한증가 마리수									
	구입에의한증가 평가액									
	자산분할에의한 증가 마리수									
	자산분할에의한 증가 평가액									
	감가상각액									
	도살에의한감소 마리수									
	도살에의한감소 평가액									
	재해및폐사에의한감소 마리수									
	재해및폐사에의한감소 평가액									
	매각에의한감소 마리수									
	매각에의한감소 평가액									
	매각에의한감소 처분차익									
	매각에의한감소 처분차손실									
	자산분할에의한감소 마리수									
	자산분할에의한감소 평가액									
연도말	마리수									
	평가액									
연도·초농업자본액										
비고										

08. 소 동 물 표 (1)

종류 (1)	코드	성별 (2)	연도초 마리(두)수 (3)	연도초 평가액 (4)	년중증감 생산 마리(두)수 (5)	년중증감 구입 마리(두)수 (6)	년중증감 도살 마리수 (7)	상황 재해및사망마리수 (8)	상황 매각마리수 (9)	연도말 마리(두)수 10=(3+5+6)−(7+8+9)	연도말 평가액 (11)	연도초 농업자본액 (12)	비고
닭	1												
오리	2												
토끼	3												
개	4												
기타	5												
계													

09. 재 고 농 산 물 표

품명		코드	연도초 수량	연도초 단가	연도초 평가액	연도말 수량	연도말 단가	연도말 평가액
미곡	메벼	011	ℓ	원	원	ℓ	원	원
	멥쌀	012						
	찰벼	013						
	찹쌀	014						
	계							
맥류	보리	021	ℓ	원	원	ℓ	원	원
	보리쌀	022						
	쌀보리	023						
	쌀보리쌀	024						
	밀	025						
	밀가루	026						
	기타맥류	027						
	계							
삼곡	조	031	ℓ	원	원	ℓ	원	원
	좁쌀	032						
	수수	033						
	수수쌀	034						
	옥수수	035						
	기타(정곡)	036						
	계							
두류	콩	041	ℓ	원	원	ℓ	원	원
	팥	042						
	녹두	043						
	기타	044						
	계							
서류	고구마	051	kg	원	원	kg	원	원
	감자	052						
	계							
채소	배추	061	kg	원	원	kg	원	원
	무	062						
	기타	063						
	계							

품명		코드	연도초 수량	연도초 단가	연도초 평가액	연도말 수량	연도말 단가	연도말 평가액
과실	사과	071	kg	원	원	kg	원	원
	배	072						
	감	073						
	기타	074						
	계							
특용작물	면화	081	kg	원	원	kg	원	원
	삼	082						
	엽연초	083						
	기타	084						
	계							
조미료	고추	091	kg	원	원	kg	원	원
	다늘	092	접			접		
	참깨	093	ℓ			ℓ		
	계							
부산물	볏짚	101	kg	원	원	kg	원	원
	기타농작물짚	102						
	가마니	103	매			매		
	새끼	104	타래			타래		
	계							
축산물	계란	111	개	원	원	개	원	원
	기타	112	ℓ			ℓ		
	계							
잠견		121	kg	원	원	kg	원	원
사료	강류	131						
	깍지	132						
	기타	133						
	계							
기타농산물		141		원	원		원	원
		142						
		143						
		143						
합계								

10. 재 고 생 산 자 재 표

품명		코드	연도초 수량	연도초 단가	연도초 평가액	연도말 수량	연도말 단가	연도말 평가액
질소질비료	요소	11	kg	원	원	kg	원	원
	유안	12						
	염안	13						
	석회질소	14						
	기타	15						
	계							
인산질비료	중과석	21						
	용성인비	23						
	기타	24						
	계							
가리질비료	유산가리	31						
	염화가리	32						
	기타	33						
	계							
소계								
유기질비료	퇴구비	41						
	녹비	42						
	계분	43						
	강류	44						
	초목회	45						
	인분뇨	46						
	기타	47						
	계							

품명		코드	연도초 수량	연도초 단가	연도초 평가액	연도말 수량	연도말 단가	연도말 평가액
복합및기타비료	22-22-11	51	kg	원	원	kg	원	원
	14-37-12	52						
	18-18-18	53						
	배합사료	54						
	기타	55						
	계					cc		
농약 살충제	유제	61	cc			g		
	정제(분말)	62	g			cc		
살균제	유제	63	cc			g		
	정제(분말)	64	g			cc		
제초제	유제	65	cc			g		
	정제(분말)	66	g					
	계							
구입종자	곡류종자	71	ℓ			ℓ		
	채소종자	72	ℓ			ℓ		
	묘목	73						
	계							
구입사료	소말의사료	81	ℓ			ℓ		
	돼지의사료	82	ℓ			ℓ		
	닭의사료	83	ℓ			ℓ		
	계							
고공품	가마니	91	매			매		
	새끼	92	타래			타래		
	계							
합계								

11. 현금및준현금표

종류			코드	연도초현재	연도말현재
현금			11		
예금및저금	농협및은행예금		21		
	우편저금		22		
	기타예금		23		
	소계				
대부금(실물포함)	농가	현금	31		
		실물	32		
	비농가	현금	33		
		실물	34		
	기타	현금	35		
		실물	36		
	소계	현금			
		실물			
	계				
계	현금		41		
	실물		42		
	소계				
보험금	보험금		51		
	적립금		52		
	소계				
유가증권	국채		61		
	농업금융채권		62		
	기타유가증권		63		
	소계				
미수입금			71		
기타			81		
합계					

12. 월별부채표(1)

구분 \ 월별차입처별		1월중 농협	농가	비농가	기타	합계
농업자금	토지구입 현금					
	토지구입 현물					
	대동물구입 현금					
	대동물구입 현물					
	구축물및건물구입 현금					
	구축물및건물구입 현물					
	농기구구입 현금					
	농기구구입 현물					
	비료구입 현금					
	비료구입 현물					
	지불노임 현금					
	지불노임 현물					
	동물및사료구입 현금					
	동물및사료구입 현물					
	종묘구입 현금					
	종묘구입 현물					
	농약구입 현금					
	농약구입 현물					
	기타 현금					
	기타 현물					
	소계 현금					
	소계 현물					
겸업자금	현금					
	현물					
조세공과	현금					
	현물					
생계비	현금					
	현물					
교육비	현금					
	현물					
관혼상제비	현금					
	현물					
채무반제	현금					
	현물					
기타자금	현금					
	현물					
미불이자	현금					
	현물					
미불금	현금					
	현물					
합계	현금					
	현물					

13. 분기별부채표(1)

구분 \ 분기별차입처별		01	연도초현재부채액 농협	농가	비농가	기타
농업자금	토지구입 현금	001				
	토지구입 현물	002				
	대동물구입 현금	011				
	대동물구입 현물	012				
	구축물 및 건물구입 현금	021				
	구축물 및 건물구입 현물	022				
	농기구구입 현금	031				
	농기구구입 현물	032				
	비료구입 현금	041				
	비료구입 현물	042				
	지불노임 현금	051				
	지불노임 현물	052				
	동물및사료구입 현금	061				
	동물및사료구입 현물	062				
	종묘구입 현금	071				
	종묘구입 현물	072				
	농약구입 현금	081				
	농약구입 현물	082				
	기타 현금	091				
	기타 현물	092				
	소계 현금					
	소계 현물					
겸업자금	현금	101				
	현물	102				
조세공과	현금	201				
	현물	202				
생계비	현금	301				
	현물	302				
교육비	현금	401				
	현물	402				
관혼상제비	현금	501				
	현물	502				
채무반제	현금	601				
	현물	602				
기타자금	현금	701				
	현물	702				
미불이자	현금	801				
	현물	802				
미불금	현금	901				
	현물	902				
합계	현금					
	현물					

구분 \ 분기별차입처별		11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부채수개액 농협	농가	비농가	기타
농업자금	토지구입 현금	001				
	토지구입 현물	002				
	대동물구입 현금	011				
	대동물구입 현물	012				
	구축물 및 건물구입 현금	021				
	구축물 및 건물구입 현물	022				
	농기구구입 현금	031				
	농기구구입 현물	032				
	비료구입 현금	041				
	비료구입 현물	042				
	지불노임 현금	051				
	지불노임 현물	052				
	동물및사료구입 현금	061				
	동물및사료구입 현물	062				
	종묘구입 현금	071				
	종묘구입 현물	072				
	농약구입 현금	081				
	농약구입 현물	082				
	기타 현금	091				
	기타 현물	092				
	소계 현금					
	소계 현물					
겸업자금	현금	101				
	현물	102				
조세공과	현금	201				
	현물	202				
생계비	현금	301				
	현물	302				
교육비	현금	401				
	현물	402				
관혼상제비	현금	501				
	현물	502				
채무반제	현금	601				
	현물	602				
기타자금	현금	701				
	현물	702				
미불이자	현금	801				
	현물	802				
미불금	현금	901				
	현물	902				
합계	현금					
	현물					

14. 경 지 생 산 실 태 표 (1)

지목	지번 또는 필자명	면적	부호 지목	부호 작물	식부작물 작물명	식부작물 식부면적	재배기간 전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선으로 표시할 것)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확량 주산물 수량	주산물 평가액	부산물 수량	부산물 평가액	비고
기입예	답	1,237	2,168		보리	1,200	○						△							1,620ℓ	15,300	1,320kg	2,936	
					벼	2,100							○						△	8,520ℓ	137,900	3,920kg	12,370	

재배기간의 표시요령 : 식부 또는 파종은 ○으로 표시하고 수확 또는 예취는 △로 표시하고 ○와 △사이를 선(—)으로 연결할 것.

15. 문 화 용 품 보 유 상 황

품목	부호	연초	연말
라디오 (트란지스터포함)	01	십 일 대	십 일 대
텔레비존	02	〃	〃
신문	03		
전축 (축음기포함)	04	대	대
축음기	05	〃	〃
재봉틀 (손재봉틀포함)	06	〃	〃
자전거	07	〃	〃
오토바이	08	〃	〃
냉장고	09	〃	〃
선풍기 (탈곡기용선풍기제외)	10	〃	〃
전화	11	〃	〃
세탁기	12	〃	〃
풍금 (피아노 포함)	13	〃	〃
시계 (벽, 탁상, 손목시계)	14	개	개
카메라	15	〃	〃
전기	16		
상수도	17		

주 : 신문, 전기, 상수도의 경우 있으면 1. 없으면 ○을 기입한다.

연도	월분	시도	
'78		지구약호	
		농가번호	
		경지규모	

지 정 통 계 제 8 호
(1962. 12. 8)

경 고

본 집계표는 통계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조사원이나 이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이외의 사람은 보지 못함.

농 가 경 제 조 사

부호정리부

농 수 산 부
경제통계담당관실

1 가 구 원 표

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성별	노동능력	취업사항 영농종사자	취업사항 비영농종사자	주업	부업	최종학력	부호 년령	부호 경영주와의 관계	부호 성별	부호 노동능력	부호 취업사항	부호 주업	부호 부업	부호 학력	비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5 경지개황표

지목		부호	경작면적	자작면적	차용면적
논	일모	1	만 천 백 십 평	만 천 백 십 평	만 천 백 십 평
	이모	2			
밭		3			
과수원		4			
묘포		5			
뽕밭		6			
기타		7			

2 가 축 개 황

종류	부호	수량	평가액
한우	01	만 천 백 십 마리	만 천 백 십 천
젖소	02	마리	
말	03	마리	
돼지	04	마리	만 천 백 십 천
양	05	마리	
양봉	06	통	
닭	07	수	만 천 백 십 천
오리	08	마리	
토끼	09	마리	
양잠	10	톤	
퇴비	11	톤	

6 영농실태표

번호	월초재배 작물명	월초재배 식부면적	이달에심은 작물명	이달에심은 부호 작물	이달에심은 부호 시목	이달에심은 식부면적
01		만 천 백 십 평				만 천 백 십 평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수 입 표

번호	일자	수입종류	수입처	부호	구분부호	수량	현금	실물평가	외상금액	분류부호 수입	분류부호 지출
01		전달에서 넘어온 돈	이 월 금	1	1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천	만 천 백 십 천	만 천 백 십 천	108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소수점이하

○ 지 출 표

번호	일자	지출종류	용도	부호	구분부호	수량	현금	실물평가	외상금액	분류부호 수입	분류부호 지출
01						천 백 십 일	만 천 백 십 천	만 천 백 십 천	만 천 백 십 천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달로 넘어갈 돈	이 월 금	1	1						810

소수점이하

8 작업시소비한현물표

번호	일자	작물명	소비현물명	일급 및 구자내별	작물부호	현물부호	부호	수량 (천백십일)	환산금액 (만천백십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소수점이하

7 작업표

번호	일자	작물명	작업명	일한사람	작물부호	구분	작업일량	시작	부호	시간	부호	시간	비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수확량표

번호	일자	작물명	작물부호	주산물 수량 (천백십일)	주산물 평가액 (만천백십원)	부산물 수량 (천백십일)	부산물 평가액 (만천백십원)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소수점이하 소수점이하

10 자가생산물자가소비표

번호	품명	용도	부호	수구입	수량 (천백십일)	산물평가 (만천백십원)	수입지출	분류부호
01			1 2					
02			1 2					
03			1 2					
04			1 2					
05			1 2					
06			1 2					
07			1 2					
08			1 2					
09			1 2					
10			1 2					
11			1 2					
12			1 2					
13			1 2					
14			1 2					
15			1 2					
16			1 2					
17			1 2					
18			1 2					
19			1 2					

소수점이하

번호	품명	용도	부호	수구입	수량 (천백십일)	산물평가 (만천백십원)	수입지출	분류기호
21			1 2					
22			1 2					
23			1 2					
24			1 2					
25			1 2					
26			1 2					
27			1 2					
28			1 2					
29			1 2					
30			1 2					
31			1 2					
32			1 2					
33			1 2					
34			1 2					
35			1 2					
36			1 2					
37			1 2					
38			1 2					
39			1 2					
40			1 2					

소수점이하

12 양 곡 재 고 및 소 비 량 표

구분 / 곡종		부호	월초 재고량	수입량					지출량										월말 재고량	통계상 불일치
				생산량(도정량)	농가간구입	농가외구입	실물노임	기타	도정량	음식용	농가간판매	농가외판매	종자	사료	실물노임	보조증여	조세공과	기타		
미곡	메벼	101																		
	멥쌀	102																		
	찰벼	111																		
	찹쌀	112																		
혼합곡		121																		
맥류	보리	201																		
	쌀보리	202																		
	보리쌀	203																		
	밀	211																		
	밀가루	212																		
	기타(조곡)	221																		
삼곡	조	301																		
	좁쌀	302																		
	수수	311																		
	수수쌀	312																		
	옥수수	321																		
	기타(정곡)	331																		
두류	콩	401																		
	팥	402																		
	녹두	403																		
	기타	404																		
서류	고구마	501																		
	감자	502																		

3 농 촌 임 요 금

구분 / 종류		현금	식비	급여물
		만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통상노임	남자			
	여자	원		
통상작업시간		시간		
역축임		원		
동력탈곡기	(미곡)	원		
동력탈곡기	(맥류)			

4 농 촌 물 가

구분 / 종류			부호	판매가격	수수료	수취가격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천 백 십 원
쌀			20ℓ	01		
보리쌀			20ℓ	02		
쌀보리쌀			20ℓ	03		
통밀			20ℓ	04		
볏짚			10kg	05		
보리짚			10kg	06		
지가	논	상	평	11	백	
		중	〃	12	〃	
		하	〃	13	〃	
	밭	상	〃	21	〃	
		중	〃	22	〃	
		하	〃	23	〃	

11 양곡음식용지출

구분 / 곡종		부호	음식용				
			수부식	장유	세면세과	기타	계
미곡	멥쌀	102					
	찹쌀	112					
혼합곡		121					
맥류	보리쌀	203					
	밀	211					
	밀가루	212					
	기타	221					
삼곡	좁쌀	302					
	수수쌀	312					
	옥수수	321					
	기타	331					
두류	콩	401					
	팥	402					
	녹두	403					
	기타	404					
서류	고구마	501					
	감자	502					

□ 공 외 식 표

공외식횟수		
일자	공식	외식
1～2		
3～4		
5～6		
7～8		
9～10		
11～12		
13～14		
15～16		
17～18		
19～20		
21～22		
23～24		
25～26		
27～28		
29～31		
계		

연 도	시 도		조사 작물명	작물부호
'78년산	지구 약호			
	농가 번호			
	경지 규모			

지정통계 제 9 호
(1962. 12. 8)

경 고

이 조사표는 통계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조사원이나 이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이외의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농산물 생산비 조사표

검 토	담당자	출장소장	도시무소
	월 일	월 일	월 일

농 수 산 부
경제통계담당관실

경 영 경 지 개 황

02 경 지 개 황

지 목		부호	경작면적	자작면적	지공면적
논	일모	1			
	이모	2			
밭		3			
과수원		4			
묘 포		5			
뽕 밭		6			
기 타		7			

03 식 부 지 개 황

작물명	부호 지목	부호 작물	타 작 지 면적	타 작 지 경작액	차 용 지 면적	차 용 지 경작액

01 가 구 원 표

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성별	노동능력	취업사항 영농종사자	취업사항 비영농종사자	주업	부업	최종학력	부호 연령	부호 경영주와의관계	부호 성별	부호 노동능력	부호 취업사항	부호 주업	부호 부업	부호 학력	비고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04 토 지 용 역 비(식부지)

지번 및 필지명	지목부호	자차별	대장면적	지가	임차료	조사작물수입 작물명	조사작물수입 작물부호	조사작물수입 식부면적	조사작물수입 수확량	조사작물수입 단가	조사작물수입 평가액	조사작물이외수입 작물명	조사작물이외수입 식부면적	조사작물이외수입 수확량	조사작물이외수입 단가	조사작물이외수입 평가액	비고
						부산물											
						부산물											
						부산물											
						부산물											

05 농 가 조 수 입

구 분		수 량	평 가 액	구 분		수 량	평 가 액
			원	배 추	99		원
					99		
				기 타 채 소	99		
미 곡	99				99		
보 리	99				99		
겉보리	99			특작물	99		
밀	99				99		
	99			과 수	99		
	99				99		
콩	99				99		
팥	99			양 잠	99		
기 타 두 류	99			양 축	99		
옥수수	99			양 봉	99		
	99			농 산 물 가 공	99		
기 타 잡 곡	99				99		
고구마	99			농 업 외 소 득	99		
감 자	99			농 업 외 사 업 소 득	99		
	99			기 타	99		
	99				99		
	99				99		

06 수 확 량

작물명	부호 지목	부호 작물	식부면적	주산물 수량	주산물 평가액	부산물 수량	부산물 평가액
			평		원		원

09 농 사 비

월	임차·수리 농사명	재료·요금 등의 명칭	구분 부호			수 량	평 가 액
							원

소수 첫째자리

10 방 제 비

월	작물명	소비 농약명	구분 부호	작물 부호	현물 부호	수 량	평 가 액
							원

소수 첫째자리

07 종 묘 비

월	작 물 명	소비종묘명	구분 부호	작물 부호	수 량	평 가 액
						원

08 수 리 비

월	수리 구축물명	대농명칭	신용·공용	구분 부호	작물 부호	수 량	평 가 액
							원

12 제 재 료 비

월	재료명	용 도	구분부호	작물부호		수 량	평 가 액
							원

소수점이하

13 조세공과금

월	내 역	금 액
		원

14 제 부 담 금

월	내 역	금 액

16 대 농 구

월	임차·수리 농구명	재료의 명칭	전용공용	구분부호	작물부호	수 량	평 가 액
							원

지정통계 제 9 호(1962. 12. 8)

시 · 도	조사지구	농가번호

경 고

이 조사표는 통계법 제8조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담당조사원이나 이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외의 자람은 보지 못합니다.

1978년 산

농산물 생산비 조사장부

곡 종	조 사 기 간	도사무소 보고기일	담 당 자 확 인	출장소장 확 인
미 곡 김장무우 김장배추	12. 1～11. 30	12. 20		
대 맥 과 맥 소 맥	8. 1～7. 31	8. 20		
대 두 고 구 마 옥 수 수	11. 1～10. 31	11. 20		
감 자 고 추 마 늘	10. 1～9. 31 12. 1～11. 30 9. 1～8. 31	12. 20		

농 수 산 부

경제통계담당관실

1. 가 구 원 표

번호	경영주와의관계	성별	연령	노동능력	취업사항 영농종사자	취업사항 비영농종사자	주업	부업	최종학력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2. 가 축 개 황

종 류	부호	수 량	평 가 액	종 류	부호	수 량	평 가 액
한 우	01	만 천 백 십 마리	원	양 봉	06	만 천 백 십 통	원
젖 소	02	마리		닭	07	수	
말	03	마리		오 리	08	마리	
돼 지	04	마리		토 끼	09	마리	
양	05	마리		양 잠	10	g	
				퇴 비	11	kg	

주기 : ① 가구원표는 표본농가의 가구원에 관하여 조사하며 노동력은 실질적으로 조사원이 평가하여 기입한다. 비고란에는 조사기간중 이동 또는 변동사항을 기입한다.

19 농사및수리구축물감가상각비

종류	구조	부호	건설수	건설연도	사용비율 농업용	사용비율 겸업용	사용비율 가계용	내용년수	잔존가치	비고
					%	%	%		원	

20 토지용역비(지부지이외)

종류명	부호	자작	차입	면적	평당지가	지가	임차료	사용비율 농업용	사용비율 겸업용	사용비율 가계용	비고
				평	원	원	원	%	%	%	

3. 건물 및 대지평면도 (실측)

주기 : 건물 및 대지 평면도는 실제로 측량하며 건물은 기둥을 표시하고 건물부지는 낙수하는 곳 혹은 울타리까지를, 마당은 실제로 이용하는 곳까지를 표시하고, 거리는 cm로 표시한다.

4. 경영지분산상황도

주기 : 경영지분산상황도는 농가를 중심한 시계바늘의 반대방향으로 해당농가가 경작하는 모든 경지를 그리고 매필지마다 "가나다" 순으로 부호를 붙인다. 1필지가 수개의 필매로 되었으면 그 필매구분은 가-1. 가-2. 나-1 등으로 표시하고, 매필지 혹은 필매마다 지번, 지목, 자작지, 차용지 등을 표시한다.

5. 경 영 지 표 (1)

번지 지번명	자차별	지목	대장면적 전면적	대장면적 규반	실측면적 전면적	실측면적 규반	지가	임차료	주택과 의거리	왕복 시간	토질등급	정지여부	수리상태
			평	평	평	평	원	원	m	시 분			

주기 : 1. 정지여부란에는 정지가 된 필지 또는 필매에 "○" 표식을한다.

조사작물 수확상황										기타작물 수확상황				
수확작물명	식부면적	수확량	단가	가액	수확작물명	식부면적	수확량	단가	가액	수확작물명	식부면적	수확량	단가	가액
	평		원	원		평		원	원		평		원	원

2. 수리상태는 논에만 해당하며 토지개량조합답은 "토개"등 요약하여 구분 표시한다.
3. 수확량란은 매필지 혹은 필매에 관하여 농가에서 전작물에 대한 매작물마다 조사하여 기입한다. 동일필지 혹은 필매에서 2종이상의 작물을 동시에 수확하였으면 난을 나누어 각각 기입한다.

48 농산물 생산비 조사(속)

6. 종 묘 비

월	작물명	품 종	파종면적	구입 (1) 수량	구입 (1) 단가	구입 (1) 금액	자급 (2) 수량	자급 (2) 단가	자급 (2) 금액	비 고
					원	원		원	원	

7. 수 리 비

구분 월	수리구축물명	재료노력 등의명칭	작물명	구입지불 (1) 수량	구입지불 (1) 단가	구입지불 (1) 가액	자급 (2) 수량	자급 (2) 단가	자급 (2) 가액	비 고
					원	원		원	원	
	수 세 (水 稅)	농지개량조합비								
		기타수리조합비								

주 : 전용, 공용으로 구분하여 기입할 것.

8. 공 사 비

구분 월	임차수리 농사명	재료, 노력, 요금 등의 명칭	구입지불 (1) 수량	구입지불 (1) 단가	구입지불 (1) 가액	자급 (2) 수량	자급 (2) 단가	자급 (2) 가액	비 고
				원	원		원	원	

9. 방 제 비 (1)

구분 월	작물명	소비농약 재료명	구입 (1) 수량	구입 (1) 단가	구입 (1) 가액	자급 (2) 수량	자급 (2) 단가	자급 (2) 가액	비 고
				원	원		원	원	

10. 비 료 비 (1)

구분 월	작물명	소비 비료명	구입 (1) 수량	구입 (1) 단가	구입 (1) 평가액	자급 (2) 수량	자급 (2) 단가	자급 (2) 평가액	내급 (3) 수량	내급 (3) 단가	내급 (3) 평가액	비 고
				원	원		원	원		원	원	

11. 제 재 료 비

구분 월	작물명	재료명	용 도	구입 (1) 수량	구입 (1) 단가	구입 (1) 가액	자급 (2) 수량	자급 (2) 단가	자급 (2) 가액	비 고
					원	원		원	원	

12. 수 확 량

작물명	식부면적	지목	수산물			부산물		
			수확량	단가	평가액	수확량	단가	평가액
				원	원		원	원

13. 대 농 구 비

	구분 / 월	임차수리 농구명	재료요금 등의명칭	작물명	구입지불 (1)			자급 (2)			비고
					수량	단가	가액	수량	단가	가액	
						원	원		원	원	
전용농구											
공용농구											

주 기 : 대농구표에는 경상수리 유지하기위한 비용을 기입하며 대농구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기입치 않는다.

14. 소 농 구 비

	구분 / 월	임차수리 농구명	재료요금 등의명칭	작물명	구입지불 (1)			자급 (2)			비고
					수량	단가	가액	수량	단가	가액	
						원	원		원	원	
전용농구											
공용농구											

주기 : 소농구표에는 경상수리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소농구 구입비용을 기록한다.

15. 조세공과 및 제부담금 (일계부에서)

조세			공과금			부담금		
월	종목	과세액	월	종목	부과액	월	종목	부담액
		원			원			원

주기 : 조세공과제부담금은 고지서를 발부한 고지서의 수령일자 및 부과액을 기입하고 그렇지않은 것은 농가가 실제로 납부한 일자 및 액수를 기입한다.

16. 농 가 조 수 입

월	종류	수량	평가액	월	종류	수량	평가액
			원				원

주 : 농가경제조사 일계부 수확량표 및 수입표에서 해당하는 것을 집계하여 매월 기입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수확시점에서 일괄계산하여 수입으로 조사한다.

17. 노 력 및 축 력 (1)

월	작물명	작업명	가족노동 (1) 성별	능력	시간	통상 시간	통상 노임	인원	고용노동 (2) 성별	능력	시간	통상 시간	통상 노임	인원	품앗이 (3) 성별	능력	시간	통상 시간	통상 노임	인원	축력 자차별	시간	통상 시간	통상 노임	동력 자차별	시간	비고
							원						원						원					원			

부 탁 의 말 씀

이 가계부는 각 가정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구입한 품목과 수입을 조사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며 아울러 임금수준의 결정 등 경제, 사회정책수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로 이용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조하여 주셔서 국가정책입안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입 요 령

1. 매월 초하루부터 말일까지 댁에서 구입한 물건이나 들어온 현금(현물포함)을 매일 매일 기입하여 주십시오.
2. 지출품목이 많아 한페이지를 넘을 때는 다음 페이지를 사용하시고, 수입이나 지출이 전연 없을 때에는 날자를 쓰고「없음」이라고 기입하여 주십시오.
3. 구입한 품목중 현금으로 구입한 것은「현금」란에 그 금액을 기입해 주시고, 월부나 외상으로 구입한 것은「외상 및 월부구입」란에 그 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4. 한가지 품목을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구입한 물건은 두줄을 사용하여 따로 따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5. 봉급, 수당, 저금에서 찾은 돈 등 수입이 있을 때는「수입」란에 그 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6. 댁에서 직접 생산한 물건이나 직장에서 현물로 받은 물건을 댁에서 소비하였을 때에는 그것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해서 기입하여 주십시오.
7. 「수입의 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란에는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상세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8. 만일 댁의 주인이 밖에 나가서 쓴 돈이나 가구원에게 준 용돈이 있다면 어디에 썼는 가를 품목별로 파악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9. ※표시한 곳은 경제기획원에서 기입하는 란이므로 기입하지 마십시오.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읍니다.

지 정 통 계 제 10 호

가계조사가계부

197 년 월분

조사월	조사구번호	가계표본번호	가구구분	가구원수	취업인원수	가구주연령
			※	※	※	※

경 제 기 획 원

조사원	지도원

가 구 실 태

Ⅰ. 가구주에 관한 사항

성 별	1. 남 2. 여
연 령	만 세
산 업 (근무처 또는 사업체명을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예 : 가나건설주식회사 차량부)	※
직 업 (무슨일을 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적으시오 예 : 브로커자 운전기사)	※
가구주소득(1개월)	원

Ⅲ. 주거에 관한 사항

1. 자 가	월세평가액		원
2. 무 상	월세평가액		원
3. 관공사택	월세평가액 (무 상)		원
	월 세 (유 상)		원
세 집	보증금또는 전 세	매월 지급 또는 공제 하는 집세	월세평가액
4. 전 세	원		원
5. 보증부 월 세	원	원	
6. 삭월세	원	원	
7. 월 세		원	

Ⅱ. 연령 및 성별 가구원수

연 령	총 수	남	여
계			
2세이하			
3~5			
6~13			
14~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Ⅳ. 기 타 사 항

(가구원이 모두 직업이 없을때의 생계 유지방법, 관혼상제등으로 소득 또는 지출이 평상시보다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등 기타 참고사항을 쓰시오.)

월 일 수 입 및 지 출

※부호 기입란	수입종류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현금및현물)	지 출 현 금	지 출 외상및월부구입	수량	단위
	※ 합 계	9010	9020	9030		
9999	※ 현 물 총 액					
7220	※ 월 부 및 외 상 값					

※ 0110 ~ 0250		※ 1011 ~ 6400	
※ 7110 ~ 7220		※ 8110 ~ 8220	

9 1 0 0	※ 전월에서 넘어온 현금		
9 2 0 0	※ 월 말 현 금 잔 고		
2 2 0 0	※ 자 가 평 가 액		

※ 주 요 품 목 소 비 및 재 고 량

품 명		조사개시전 재 고 량	월중구입량	월중소비량	월말재고량	단 위
곡류	쌀					ℓ
	보리쌀					ℓ
연료	연 탄					개

※ 월 간 가 계 수 지 총 괄 표

소 득 (0110~0250)		비 용 지 출 (1011~6400)	
기 타 수 입 (7110~7220)		기 타 지 출 (8110~8220)	
전월에서넘어온 현 금 (9100)		월말현금잔고 (9200)	
현 물 총 액 (9999)			
총 수 입		총 지 출	

월 간 가 구 주 의 별 도 지 출

품 명	세 부 내 역	금 액	품 명	세 부 내 역	금 액
담 배			관혼상제비		
알 콜 음 료					
과 자 및 청 량 음 료			기 타		
교 양 오 락			계		

"주" : 본 란은 가계부상 기입되지 않는 가구주가 외부에서 별도로 지출한 내역을 기입한다.

수입 및 지출란

1. 수입의 경우에는 두구의 어떠 종류의 수입인가를 전 할 수 있도록 기입한다.
2.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누가 무엇에 필요가를 기입한다.
3. 가족이 공동으로 소비하는 식료품, 일용품은 얼마만큼 필요가를 기입한다.
4. 식료품의 경우, 한사람, 한끼니 등으로 기입하지 말고 「어디」에 의하여 「단위」란을 기입한다.

월 일 수 입 및 지 출

※ 기입란	수입종류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현금및현물)	지 출	비상월부구입	수량 (단위)
0110	가구주 봉 급	105,000			
0120	〃 주 전수입	15,000			
6400	〃 기 여 금		5,250		
6400	〃 소 득 세		3,200		
6400	〃 주 민 세		260		
6400	〃 방 위 세		320		
8110	근로자 직업훈련		5,000		
8120	낙 엽 긁 임		2,560		
1215	구 내 시 설(매점)		4,000		
5412	화원비(연탄회사)납부		5,000		
3400	원기료(연탄제외)7월분		720		
2160	월 평 주 도 발 육	7,500			
3200	월 세(10월분) 지출		7,500		
2340	양부월부금지불(3월분)		3,200		
5428	차 이 라 이 (한글)	340			500 g
1411	달 걀 (국가생산)	175			5 개
5621	토 끼 (북 한)		2,000		1 마리
8110	저 금		7,960		
5232	식 염		500		
9999	※ 합 계	9010 / 127,340	9020 / 68,430	9030	
7220	※ 현 물 총 액	425			
	※ 월말부채의 상 값				
※ 0110 ~ 0250	120,000	※ 1011 ~ 6400	49,555		
※ 7110 ~ 7220	7,000	※ 8110 ~ 8220	18,875		

가구주가 직장에서 받는 봉급 또는 임금은 각종 제 공과 공비를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수입」란에 기입하고 그 총액에서 소득세나 공과금 유월부 제 곳하여 각각 지출란에 옥해 입란한, 또한 직장에 옥해 있는 구내식당에서 매일 매일 먹는 점수도 그 봉급에서 공제할 경우도 그 총 액을 지출란에 기입한다. (기타 가구원이 받는 봉급 및 임금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전기료 신문대, 수도료, 방세 등과 같이 매월 정기 적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 은 기입누락이 없도록 주 의 유의해야 한다.

현모를 경영하는 가구가 판 물건중 그 일부를 팔지 않 고 자기소비하였을 경우 (남에게 주었을 경우에도 같다.) 현물 수입으로 보 아 「수입」란에 기입한다. (자가 생산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월 일 수 입 및 지 출

※ 구 호 기입란	수입종류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수 입 (현금및현물)	지 출	비상월부구입	수량 (단위)
1412	부 식		80		200 g
1414	시 금 치		200		200 g
1423	조 개		150		350 g
5200	갑 배		350		1 접
1216	과자류 (소분철)		800		3 그릇
7110	운 월 여 금 찾 음	10,000			1 그릇
1223	오모화 이스(전체)		650		300 ml
1512	간 장 의 상 구 입		350		360 ml
1814	소 주 (소분권)		180		1 병
4111	양복월부명출(가구주)		30,000		
1113	폐 지 고 기		1,300		600 g
1619	어 묵 소세지 의 상		125		80 g
1011	일 반 미 (한국)		18,000		80 kg
1011	일 반 미 (외상)			18,000	
5423	골드크림 (외상)			3,200	350 g
2415	나 무 (월간용)		200		5 장
4312	뽀리스타렁 (경비)		560		조
1215	아 주 밥 통		80		
9999	※ 합 계	9010 / 10,000	9020 / 46,350	9030 / 58,525	
7220	※ 현 물 총 액				
	※ 월말부채의 상 값				
※ 0110 ~ 0250	0,000	※ 1011 ~ 6400	72,525		
※ 7110 ~ 7220	0,000	※ 8110 ~ 8220			

「부식」과 같이 명명하여 기입하지 말고 개개의 식 품을 기입한다.

외상 또는 월부로 구입한 물건은 지출란의 외상 및 월부 구입란에 기입한다. (다음달의 수입, 지출에서 은 전체로 대금을 지불한 날의 현금 지출란에 기입 한다.)

가령 한 1가마를 구입 는데 돈이 모자라 1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6,000원을 외상으로 달아 놓았을 때, 가계부에는 식 품과 외상을 각각 총액 대하여 기입하고 수량은 그 첫째란 기입한다.

나무는 종목별 분류상 수 입수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월 간지에 사용하지 않고 는 종목별 분류에 의거 기 타 현물의 수입 기입 해 야 한다.

시 입 에 서

생산동태조사 53

지정통계
제 11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생 산 동 태 조 사 보 고

197 년 월분

제 출 용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도	구 시 군	로·동 읍 면	가 리	번지의	호
본사명 및 소재지	본 사 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도	구 시 군	로·동 읍 면	가 리	번지의	호

일반적인 유의 사항

(1)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잉크」나 「볼펜」으로 기입하시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한자로 써 주십시오.
(2)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3) 모든 수량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자리를 맞추고 단위 미만은 4사5입하여 주십시오.
(4) ※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제출기한	매월 5일 까지
제출기관	읍·면·동 사무소

경 제 기 획 원

기입요령

1. 제 품

가. 월초(말)재고량 : 월초(말)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
(당월초 재고량=전월말재고량, 당월말 재고량=익월초재고량)

나. 생 산 량 : 월중에 직접 생산한 제품과 타사업체에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완제품의 총량(반제품, 재공품은 제외)

다. 출 하 량(판매량등) :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 및 타사업체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중에서 조사보고월 내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소유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하며 이를 시판과 수출로 구분한다.

1) 시판량 : 국내판매량, 타공장(또는 광산)에의 반출량, 견본 또는 선물로 출고된량, 군납(국군)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완제품의 량등의 합계를 말하며 외상판매도 포함.

2) 수출량 : 수출용으로 선적된 제품량, 무역회사에 판매한것, 주한 유엔군에 납품한것 등의 합계를 말하며 외상수출도 포함.

2. 종업원수

가. 생산종업원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의 월말 현재의 종업원수

나. 사무및기타 :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의 월말 현재의 종업원수

다.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 :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지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주인과 그 가족을 말한다.

통계법발췌

제 9 조(통계목적이외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고의 명령을 받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
2.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자.
3.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자.
4.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자 또는 기타의 자로서 통계작성의 결과를 고의로 진실과 상이한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한자.

1. 작성년월일	2. 작성자소속. 성명	3. 읍. 면. 동상공상담	4. 시. 구. 군상공담당	5. 시. 도 상공과
197 년 월 일	소속	직위	직위	직위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지역별사업체번호		* 산업분류		사업체명	(전화 :)

1 제품

* 품목번호	품목명	* 유고사항	규격	단위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생산량 전월	생산량 금월	출하량(판매량) 시판	출하량(판매량) 수출	월말재고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2 종업원수

구분		월말종업원수 만	천	백	십	일
피고용자	생산종업원					
	사무 및 기타종업원					
	소계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						
합계						

3 적요 (생산량 증감사유(±10 이상)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시요)

농촌물가 및 임금조사 55

지 정 통 계 제 12 호

확인	전 무	상 무	조사원

농촌물가및임료금조사보고

(197 년 월 일 조사)

조사지역명 _____ 시장

조사원성명 _____

<참고사항> ① 본 조사결과는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음.
② 본 조사는 매월 15일을 전후한 5일시장에서 2회조사하여 산술 평균한 조사결과를 매월 20일까지 "중앙회 조사부"에 필착토록 하여야함.

군 농 업 협 동 조 합

발신

도 시 읍 동
군 면 리 번지

군 농 업 협 동 조 합

수신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조 사 부 귀 중

□-001

品名	單位		價格	品名	單位	價格	品名	單位		價格
감자종자	3.75kg			○ 農機具類			농용비닐	0.91m		
잠종	1 장			삽	1 丁		스레트	1 枚		
○ 家畜類				보습	1 丁		시멘트블록	10枚		
병아리	1 首	암컷		양수기	1 台		경유	3.78ℓ		
		수컷		분무기	1 台		○ 飼料類			
송아지	1 頭	암컷		○ 資材類			쌀겨	100ℓ		
		수컷		시멘트	1 袋		보리겨	100ℓ		
돼지새끼	1 頭	암컷		철사	3.75kg		배합사료	1 袋	산란용	
		수컷		합석판	1 枚				부로이라용	

農村賃金및農業料金

(組合) (面 部落) (19 年 月 日 現在)

農業勞動賃金	男 (成人) 1日			女 (成人) 1日		
	現金支給額 (A)	給食物評價額 (B)	計 (A+B)	現金支給額 (A)	給食物評價額 (B)	計 (A+B)

其他賃金	男 1 日		
	現金支給額 (A)	給食物評價額 (B)	計 (A+B)
木手			
미장이 (土手)			

農業用料金	單位	料率	料金 (換價)
精白賃	白米 100ℓ	%	
精麥賃	大麥 (組) 100ℓ	%	
	稞麥 (組) 100ℓ	%	
運賃	쌀 1叭(80kg) 牛馬車運搬料(4km)		
農牛賃借料	1 日 (勞務者賃金除外)		

通信欄 (調査上의 問題点 또는 그 地方 特有의 事情 및 其他 參考될 事項을 記入 하십시요)

農村物價調査票

(組合) (組合) (19 年 月 日現在)

農家販賣價格

品名	單位		價格
○ 米穀			
쌀	100ℓ	일반미	
		통일벼	
찹쌀	100ℓ		
○ 麥類			
보리쌀	100ℓ	大麥	
		稞麥	
밀	100ℓ		
호밀	100ℓ		
○ 雜穀			
조	100ℓ		
수수	〃		
옥수수	〃		
메밀	〃		
○ 豆類			
콩	100ℓ		
팥	〃		
녹두	〃		
낙화생	〃		
낭콩	〃		
와두	〃		
○ 薯類			
감자	3.75kg		
고구마	〃		
○ 菜蔬類			
무우	3.75kg		
배추	〃		
파	〃		
마늘	〃		
고추	600g		
토마도	3.75kg		
참외	〃		
수박	〃		

品名	單位		價格
당근	3.75kg		
양배추	〃		
양파	〃		
오이	〃		
미나리	〃		
시금치	〃		
우엉	〃		
토란	〃		
호박	〃		
가지	〃		
○ 果實類			
사과	1상자	국광	
		홍옥	
감	1 접		
포도	3.75kg		
밤	20ℓ		
배	1 상자		
복숭아	1 접		
귤	3.75kg		
○ 畜産物			
한우	1 頭	암소	
		황소	
돼지	1 頭		
닭	1 首	암컷	
		수컷	
달걀	10 개		
꿀	1.8ℓ		
접오리	1 首	암컷	
		수컷	
오리알	10 개		
말	1頭 (암컷)		
새끼말	1 頭	암컷	
		수컷	
염소	1 頭	암컷	
		수컷	

品名	單位		價格
토끼	1마리	암컷	
		수컷	
○ 特用作物			
大麻	3.75kg		
참깨	10ℓ (1斗)		
해바라기	1 kg		
油菜	〃		
아주까리	〃		
棉花	600g		
苧麻	3.75kg		
莞草(왕골)	〃		
楮(닥나무)	〃		
亞麻	〃		
들깨	10ℓ		
인삼	375g (10兩)		
박하	3.75kg		
생강	〃		
○ 藥 및 藥工品類			
죄	3.75kg		
가마니	1 장		
새끼	大.1타래		
	中.1타래		

農家購入價格

(家計用品)

品名	單位		價格
○ 穀麵類			
쌀	10ℓ		
보리쌀	10ℓ	大麥	
		稞麥	
밀가루	1袋(22kg)		
국수	1 束		
라면	1 개		
○ 海藻 및 藻魚類			
김	1 束		

品名	單位		價格
미역	1 枚		
명태	선어 1마리		
멸치	1 袋		
오징어	1 축		
고등어	1마리		
조기	〃		
꽁치	〃		
갈치	〃		
세우젓	1 ℓ		
○ 肉類			
쇠고기	600g		
돼지고기	〃		
○ 調味料類			
소금	2 ℓ		
설탕	3 kg		
참기름	1.8ℓ		
맛나니	1 封		
간장	0.9ℓ		
○ 嗜好品類			
탁주	1.8ℓ		
소주	1 병		
사이다	〃		
콜라	〃		
사과	10개		
과자	375g		
빵	1개(60g)		
분유	1 통		
○ 外食費			
우동	1그릇		
○ 被服纖維品類			
양말	1 足		
런닝샤스	1 枚		
내의	1 着		
학생복	1 着		

品名	單位		價格
신사복	1 着		
와이샤스	1 枚		
쉐타	1 枚		
이불솜	3.75kg		
재봉실	1굴레		
광목	1 疋		
나이롱직	1 疋		
고무신	1 足	男	
		女	
운동화	1 足		
구두	1 足		
○ 家計光熱品類			
성냥	1 갑		
연탄	1 개		
석유	1.8ℓ		
형광등	1 개		
전구	1 개		
○ 家具什器類			
식기	1 組		
스텐주발	1 組		
양은솥	1 個		
바께스	프라스틱 1個		
항아리	1 個		
우산	1 個		
T.V수상기	1 台		
선풍기	1 台		
손목시계	1 個		
자전거	1 台		
새봉틀	1 台		
○ 住宅資材類			
벽지	1 個		
장판지	비닐 1枚		
유리	1 坪		

品名	單位		價格
각재	1 才		
판재	1 才		
기와	1 枚		
못	375g		
○ 保健衛生品類			
세탁비누	1 個		
화장비누	1 個		
화장품	밀크로션 1瓶		
소화제	1 瓶		
감기약	10錠		
살충제	1 통		
이발료	1 回		
진찰료	1 回		
입원료	1 日		
목욕료	1 回		
치약	1 個		
○ 敎育娛樂類			
노트	1 卷		
볼펜	1 個		
연필	1 打		
영화료	1 回		
잡지	1 卷		
건전지	1 個		
라디오	1 台		

(農業用品)

品名	單位		價格
○ 種子類			
무우종자	0.2ℓ		
배추종자	〃		
양파종자	〃		

註 : 調査品目의 品質規格은 물가조사수첩을 참조할것

지정통계 제 13 호
(전국소매물가조사)

조사구번호

소매물가조사표

시 시장

197 년 월 일현재

조사담당자	지도구책임자	주 무	사무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주 의 사 항

① 조사표상의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란에는 가격의 단위를 점선으로 표시했으니 단위에 맞추어 가격을 정확히 기입할 것.

② 중앙조사품목은 등락사유란에 중앙조사라고 기입을 했으니 착오 없도록할 것.

③ 조사표의 가격을 정정 할 때에는 횡선을 긋고 그 위에 적을 것.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십만 만 천 백 십 원	십만 만 천 백 십 원	만 천 백 십 원	
10101	일반미	8 kg				
10102	단일미	8 kg				중앙조사
10103	혼합미	8 kg				중앙조사
10104	찹쌀	8 kg				
10105	보리쌀	7.65kg				
10106	밀	7.5kg				
10107	콩	7.5kg				
10108	팥	8.33kg				
10109	녹두	8.33kg				
10110	좁쌀	7.89kg				
10111	수수쌀	7.83kg				
10112	밀가루	1 포				
10201	쇠고기	600 g				
10202	돼지고기	600 g				
10203	닭고기	1 kg				
10301	조기	1마리				
10302	갈치	1마리				
10303	생명태	1마리				
10304	고등어	1마리				
10305	꽁치	10마리				
10306	가자미	1마리				
10307	대구	1마리				
10308	병어	1마리				
10309	물오징어	10마리				
10310	굴	375 g				
10311	조개	375 g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십만 만 천 백 십 원	십만 만 천 백 십 원	만 천 백 십 원	
10401	굴비	1두룸				
10402	마른멸치	375 g				
10403	마른오징어	20마리				
10404	북어	1마리				
10405	새우젓	375 g				
10406	멸치젓	375 g				
10501	달걀	10개				
10502	분유	1 통				
10503	연유	1 통				
10504	목장우유	1 병				
10505	버터	1 개				
10601	무우	3.75kg				
10602	배추	3.75kg				
10603	양배추	3.75kg				
10604	파	3.75kg				
10605	양파	375 g				
10606	사금치	375 g				
10607	콩나물	375 g				
10608	상치	375 g				
10609	당근	375 g				
10610	오이	10개				
10611	호박	1 개				
10612	가지	10개				
10613	도마도	375 g				
10614	감자	3.75kg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십만 만 천 백 십 원	십만 만 천 백 십 원	만 천 백 십 원	
10615	고구마	3.75kg				
10616	도라지	375g				
10701	김	10장				
10702	미역	1장				
10703	다시마	375g				
10801	고추	600g				
10802	고춧가루	0.18ℓ				
10803	마늘	1접				
10804	천일염	2ℓ				
10805	재제염	2ℓ				
10806	참깨	1ℓ				
10807	참기름	0.18ℓ				
10808	채종유	0.18ℓ				
10809	콩기름	1병				
10810	들기름	0.18ℓ				
10811	설탕	1포				
10812	구루타민산소다	1포				
10813	간장	1병				
10814	고추장	1통				
10815	된장	1포				
10816	생강	375g				
10817	식초	1병				
10818	후춧가루	1통				
10901	두부	1모				
10902	라면	1봉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십만 만 천 백 십 원	십만 만 천 백 십 원	만 천 백 십 원	
10903	국수	375g				
10904	당면	375g				
10905	단무지	375g				
10906	마아가린	1개				
10907	소시지	1개				
10908	생선통조림	1통				
10909	과실통조림	1통				
11001	홍옥	10개				
11002	국광	10개				
11003	배	10개				
11004	복숭아	10개				
11005	포도	375g				
11006	감	10개				
11007	곶감	1꼿이				
11008	밤	1ℓ				
11009	밀감	1개				
11010	바나나	375g				
11011	참외	10개				
11012	수박	1개				
11013	딸기	375g				
11101	크림빵	1개				
11102	식빵	1개				
11103	카스텔라	1개				
11104	건빵	1봉				
11105	드롭스	1봉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십만 만 천 백 십 원	십만 만 천 백 십 원	만 천 백 십 원	
11106	비스켓	1봉				
11107	셀베이	375g				
11108	캬라멜	1갑				
11109	초콜릿	1개				
11110	껌	1갑				
11111	크백카	1봉				
11112	떡	600g				
11113	땅콩	1ℓ				
11114	아이스크림	1개				
11115	아이스캔디	1개				
11201	콜라	1병				
11202	사이다	1병				
11203	쥬스	1병				
11204	코오피	1잔				
11205	홍차	1잔				
11206	밀크	1잔				
11207	유산균음료	1병				
11301	맥주	1병				
11302	소주	1병				
11303	청주	1병				
11304	약주	2ℓ				
11305	탁주	2ℓ				
11306	포도주	1병				
11401	설렁탕	1그릇				
11402	냉면	1그릇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십만 만 천 백 십 원	십만 만 천 백 십 원	만 천 백 십 원	
11403	비빔밥	1그릇				
11404	짜장면	1그릇				
11405	우동	1그릇				
11406	짬뽕	1그릇				
11407	오무라이스	1그릇				
20101	방세 (전세)	※				
20102	방세 (월세)	1개월				
20201	도배지	1필				
20202	창호지	1권				
20203	비닐장판지	1장				
20204	종이장판지	1장				
20205	시멘트	1포				
20206	판유리	918㎠				
20207	페인트	1통				
20208	합석	1장				
20209	스레이트	1장				
20210	합판	1장				
20211	벽돌	10장				
20212	기와	10장				
20301	은수저	1벌				
20302	스테인레스 수저	1벌				
20303	주발	1벌				
20304	양은솥	1개				
20305	남비	1개				
20306	접시	1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20307	컵	1조				
20308	주전자	1개				
20309	후라이팬	1개				
20310	코오피세트	1조				
20311	버킷	1개				
20312	함아리	1개				
20313	세숫대야	1개				
20314	밥상	1개				
20315	거울	1개				
20316	탁상시계	1개				
20317	벽시계	1개				
20318	전기다리미	1개				
20319	백열등	1개				
20320	형광등	1개				
20321	책상	1개				
20322	의자	1개				
20323	자전거	1대				
20401	텔레비전수상기	1대				
20402	선풍기	1대				
20403	냉장고	1대				
20404	라디오	1대				
20405	전축	1대				
20406	녹음기	1대				
20407	믹서	1개				
20408	피아노	1대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20409	캐비넷	1개				
20410	재봉틀	1대				
20411	석유난로	1대				
20412	석유곤로	1대				
20413	전화기	1대				
20501	수도료	※				
20601	오물수거비	1개월				
20602	인분제거비	1통				
20603	숙박료(호텔)	1일				
20604	숙박료(여관)	1일				
20605	전공임	1일				
20606	목수임	1일				
20607	미장이임	1일				
20608	칠장이임	1일				
20609	잡부임	1일				
30101	전기료	30KWH				중앙조사
30201	연탄	10개				
30202	가스	10kg				
30203	숯	100g				
30204	석유	2ℓ				
30301	성냥	1통				
30302	양초	1갑				
40101	마춤신사복(여름용)	1벌				
40102	마춤신사복(겨울용)	1벌				
40103	마춤숙녀복(여름용)	1벌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40104	마춤숙녀복(겨울용)	1벌				
40105	마춤코트	1벌				
40106	마춤오바	1벌				
40107	기성신사복(여름용)	1벌				
40108	기성신사복(겨울용)	1벌				
40109	한복	1벌				
40110	학생복(여름용)	1벌				
40111	학생복(겨울용)	1벌				
40112	아동복	1벌				
40113	잠바	1매				
40114	긴팔와이셔어츠	1매				
40115	반팔와이셔어츠	1매				
40116	남방셔어츠	1매				
40117	면내의	1벌				
40118	화학사내의	1벌				
40119	런닝셔어츠	1매				
40201	광목	91.4cm				
40202	포플린	91.4cm				
40203	이불	1장				
40204	나이론 태피터	91.4cm				
40205	재봉사	1권				
40206	화학사	453.6g				
40207	솜	1포				
40301	마춤 남자 구두	1켤레				
40302	마춤 여자 구두	1켤레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40303	남자고무신	1켤레				
40304	여자고무신	1켤레				
40305	운동화	1켤레				
40306	비신	1켤레				
40307	비닐화	1켤레				
40401	남자양말	1켤레				
40402	여자양말	1켤레				
40403	아동용양말	1켤레				
40404	스타킹	1켤레				
40405	허리띠	1개				
40406	장갑	1켤레				
40407	넥타이	1매				
40408	머플러	1매				
40409	모자	1개				
40410	가방	1개				
40411	모포	1매				
40412	수건	1매				
40413	우산	1개				
40414	양산	1개				
40415	손목시계	1개				
40416	금반지	1개				
40417	핸드백	1개				
40418	안경	1개				
40501	양복세탁료	1회				
40502	와이셔어츠세탁료	1회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40503	재봉료	1벌				
40504	의복수선료	1회				
40505	신수선료	1회				
40506	구두닦이	1회				
50101	영양제	1병				
50102	감기약	1병				
50103	소화제	1병				
50104	항생제	10캡슐				
50105	해독강장제	1병				
50106	구충제	1갑				
50107	외상약	1병				
50108	진찰료	1회				
50109	입원료	1일				
50110	분만료	1회				
50111	엑스-레이촬영료	1회				
50112	인삼	1상자				
50201	화장비누	1개				
50202	세탁비누	1개				
50203	가루비누	1포				
50204	치약	1개				
50205	칫솔	1개				
50206	화장크림	1갑				
50207	화장분	1갑				
50208	화장수	1병				
50209	포마드	1갑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50210	화장지	1개				
50211	살충제	1통				
50212	면도날	1갑				
50213	이용료	1회				
50214	고데료	1회				
50215	파마료	1회				
50216	목욕료(성인)	1회				
50217	목욕료(아동)	1회				
50301	시내버스료	1회				
50302	시외버스료	1㎞				중앙조사
50303	고속버스료	1회				중앙조사
50304	택시료(기본)	1회				
50305	택시료(초과)	1회				
50306	기차료(완행)	1회				중앙조사
50307	기차료(급행)	1회				중앙조사
50308	항공료	1회				중앙조사
50309	선박료	1회				중앙조사
50401	전화료(기본)	1개월				중앙조사
50402	전화료(도수)	200회				중앙조사
50403	우편료(국내)	1통				중앙조사
50404	전보료	1회				중앙조사
50405	우편료(국제)	1통				중앙조사
50501	국민학교교과서	※				중앙조사
50502	중학교 교과서	※				중앙조사
50503	고등학교교과서	※				중앙조사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50504	국민학교육성회비	1개월				
50505	납입금(공중)	1분기				
50506	납입금(사중)	1분기				
50507	납입금(공고)	1분기				
50508	납입금(사고)	1분기				
50509	납입금(국대)	1학기				
50510	납입금(사대)	1학기				
50511	납입금(전문)	1학기				
50512	유치원비	1개월				
50513	참고서	1권				중앙조사
50514	입시학원비	1개월				
50515	자동차학원비	1개월				
50516	양재학원비	1개월				
50517	도서관비(국공립)	1회				
50518	도서관비(사설)	1일				
50601	볼펜	1개				
50602	연필	1다스				
50603	만년필	1개				
50604	노트(대)	1권				
50605	노트(소)	1권				
50606	도화지	1장				
50607	시험지	20장				
50608	봉투	10장				
50609	크레파스	1갑				
50610	잉크	1병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전기가격	금기가격	차	등락사유
50701	신문구독료	1개월				중앙조사
50702	주간지	1부				중앙조사
50703	여성지	1권				중앙조사
50704	대중지	1권				중앙조사
50705	아동지	1권				중앙조사
50706	종합지	1권				중앙조사
50707	문예지	1권				중앙조사
50708	영화관람료(방화)	1회				
50709	영화관람료(외화)	1회				
50710	텔레비전시청료	1개월				중앙조사
50711	고궁입장료	1회				
50712	사진	1조				
50713	흑백필름	1통				
50714	칼라필름	1통				
50715	장난감	1개				
50716	삼륜자전거	1대				
50717	운동기구	1개				
50718	레코오드판	1장				
50719	생화	1송이				
50801	담배	갑				중앙조사
50901	행정수수료(주민등록등본)	1통				
50902	행정수수료(호적초본)	1통				
50903	행정수수료(인감증명)	1통				

물가동향 :

지정통계
제 13 호

방 세 조 사 표

(□매중 □배)

시 구
도 시 동 지도구책임자 ㊞

조사구번호( ) 조사담당자 ㊞

가구번호	가구주성명	방세종류	보증금 전분기 월 일	보증금 금분기 월 일	매월지불액 전분기 월 일	매월지불액 금분기 월 일	※ 전분기 월 일	※ 금분기 월 일	등 락 사 유
-									
-									
-									
-									
-									
-									
-									
-									
-									
-									
-									
-									
-									
-									
-									

작성일자 년 월 일 ※ 란은 기입하지 말것

조 사 요 령

1. 방세조사는 매분기 말월 5일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가계조사 담당자가 가계조사 대상가구에서 보조 조사시에 동시 조사한다.
2. 방세조사 대상가구는 가계조사 가구중에서 아래시항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 된다.

※ 방세조사대상—가계조사가구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있을 경우에 주택건물이 적벽돌 또는 목조기와집(철근콘크리트집, 초가등제외)으로서 부엌있는 온돌방 1개 (방2개 이상이나 온채 전세는 제외), 1칸 내지 2칸 정도의 (6자×6자~8자×9자) 크기가 대상이 된다.
단 부엌은 가설부엌도 포함된다.

3 방세종류는 전세, 보증부월세, 삭월세, 월세로 분류하여 기입한다.

가. 전세는 보증금만 기입한다.

나.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내어놓고 이와는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것을 말하는데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을 각각 기입한다.

다. 삭월세는 보증금에서 매월 월세를 공제하는것을 말하는데 보증금란에는 매월공제된 나머지 보증금만 기입하고 매월 지불란에는 매월 공제액을 기입한다.

라. 월세는 보증금없이 매월 지불되는 방세를 말한다.

4. 가계조사 대상가구가 변동되더라도 본부의 지시가 없는한 이미 조사하고 있던 방세조사 대상 가구를 조사원이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지정통계 제13호

영화관람료조사표

197 . . 도 시 지도구책임자 ㊞ 조사담당자 ㊞

| 품질 규격 | | | 총천연색 입장세를포함 상영시간 100분 정도 (뉴스, 선전제외) (단, 각종구호금 제외) | | | | | | | | |

공·사립구분	공 · 사
학 과 명	과

대학, 전문학교납입금확인서

지 정 통 계 제 13 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지도원 ㊞
조사원 ㊞

시 구
도 시

비목 \ 기별	연 간 총 액	1 학 기	2 학 기	비 고
수 업 료				
기 성 회 비				
실 험 실 습 비				
자 율 적 경 비				
계				

위 와 같 이 확 인 함

1976년 월 일

학교장 ㊞

기입요령

1. 국문과 3년생, 또는 국문과가 없는 경우는 문과계 3년생의 납입금을 조사하고 그 학과를 명시한다.
2. 전문학교는 기계과 4학년생의 납입금을 조사한다.
3. 본 조사는 매학기 첫달 3, 9월 5일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실시한다.
4. 조사하는 학기나 이미조사된 학기는 징수한 금액을, 아직 징수하지 않은 학기는 징수예정금액을 기입한다.
5. 징수액이 전분기에 비하여 변동이 있을시 (예: 추가징수)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6. 초급대학, 교육대학은 대상처에서 제외한다.
7. 본 조사의 내용은 필히 피조사 학교장의 확인을 요한다.

공사립구분	공 사
인문. 실업구분	인문. 실업
실 업 고 교	과

중, 고등학교납입금확인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지도원 ㊞
조사자 ㊞

시 구
도 시

비목 \ 기별	연 간 총 액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수 업 료						
실험실습비						
자율적경비 학도호국단비						
육 성 회 비						
합 계						

위 와 같 이 확 인 함 197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기입요령

1. 본조사는 매분기말월 5일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실시한다.
2. 조사하는 분기나 기조사된 분기는 징수한 금액을, 아직 징수하지 않은 분기는 징수예정금액을 기입한다.
3. 징수액이 전분기에 비하여 변동이 있을 시(예:추가징수)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4. 본 조사는 2학년생의 납입금을 조사한다.
5. 3기분으로 나누어 징수할 시는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한다.
6. 본조사 내용은 필히 피조사 학교장의 확인을 요한다.

지정통계
제 13 호

국민학교납입금확인서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지 도 원 ㊞
조 사 원 ㊞

시 도
구 시

	1/4			2/4			3/4			4/4			비 고
	등급	%	금 액	등급	%	금 액	등급	%	금 액	등급	%	금 액	
학교육성회비	A			A			A			A			
	B			B			B			B			
	C			C			C			C			
	D			D			D			D			
	E			E			E			E			
	※가중평균액			※가중평균액			※가중평균액			※가중평균액			※연간총액

위 와 같 이 확 인 함 197 년 월 일

학교장 ㊞

기입요령

1. 본조사는 매분기말월 15일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실시한다.
2. 월별, 학기별 혹은 년간으로 징수할 시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3. 서울, 부산을 제외한 지역은 E란을 기입치 않고 사선(\)을 긋는다.
4. ※표란(가중평균액란, 연간총액란) 은 기입치 않는다.
5. 조사하는 분기나 이미조사된 분기는 징수한 금액을, 아직 징수하지 않은 분기는 징수예정금액을 기입한다.
6. 징수액이 전분기에 비하여 변동이 있을 시(예, 추가징수)는 그사유를 기재한다.
7. 금액란에는 각등급별 1인당 징수액만을 기입한다.
8. 본조사는 필히 피조사 학교장의 확인을 요한다.

조사구번호	

전 국 소 매 물 가 조 사

품질 규격
지정 상표
조사대상처

변 동 보 고 서

작성일자 197 년 월 일

지도구책임자 ㊞
조 사 담 당 자 ㊞

변동년월일	품목번호	품목및대상처명	구	신	변 동 이 유 및 주 소	신,구 신/구	비 고
						/	
						/	
						/	
						/	
						/	
						/	
						/	
						/	
						/	
						/	

시·도명	구·시·군명	동·읍·면명	※조사구번호

지정통계
제 14 호

1976년 도·소매업센서스

조 사 표

(1) 일련번호	(2) 사업체명	(3) 대표자 성명	(4) 사업체소재지 (번지 및 전화번호를 기입할 것)	(5) 경영조직 (해당사항에 ○표를 할 것)	(6) 영업형태 (해당사항에 ○표를 할 것)	(7) 주요취급상품명및업종 주업	(7) 주요취급상품명및업종 겸업	(8) 판매 및 수입금액 주업	(8) 판매 및 수입금액 겸업	(9) 종업원수 계	(9) 종업원수 남	(9) 종업원수 여	(10) 비고 (재고액)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전화)	법·개	도·소·음·숙								

조사원성명

※란은 기입하지 말 것

수도생산량조사표

지정통계 제15호
농 수 산 부

도	구시군	읍면동	지번	총번호	조사구번호	필지별	경작자	지대년	작시 설년	개	식부일일	정이일일
						1 2						

포구선정요도

방 향

⊙ 가, 나 규반기준점
① 추출간격: 2 ——— cm
② 기준점: A포구 ——— cm
B포구 ——— cm

⊙ 가, 나 규반기준점
① 규반길이: ——— cm
② 난수번호: A포구 ——— cm
B포구 ——— cm

해당란에 ○표

	1㎡ 당 주 수			갱나별	품종명
	가 로	세 로	주 수		
A	mm	mm		경 나	
B				경 나	

모 작 별		경 지 정 리	
1 모작	2 모작	정 리	미 정 리
재 토		퇴 비 시 비	
재 토	미 재 토	시 비	미 시 비

		주 당 경 수											피 해 상 황	
		1	2	3	4	5	6	7	8	9	10	계	피 해 명	피 해 율 %
8. 15 착 량	A													
	B													
9. 15 예 상 량	A													
	B													
신 수 확 량	A 유효													
	A 무효													
	B 유효													
	B 무효													

			수 당 입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9. 15 예 상 량	A																				
	B																				
신 수 확 량	A	완전																			
		불임																			
	B	완전																			
		불임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합 계
9. 15 예 상 량	A																		
	B																		
신 수 확 량	A	완전																	
		불임																	
	B	완전																	
		불임																	

	3㎡ 당 수 량		벼 잎 중 량 (g)		
	초 장 (cm)	조 제 인 (g)	3㎡ 당 생 벼 잎	1/10 생 벼 잎	1/10 건 조 벼 잎
A					
B					

	1/4 조 제 인						1/4 건 조 인					
	중량 (g)	수 분 함 량 (%)					중량 (g)	수 분 함 량 (%)				
		1회	2회	3회	합 계	평 균		1회	2회	3회	합 계	평 균
A												
B												

	단 벌 중 량 (g)								
	단 벌 총 량	현 미							쇄 미
		허 미 합 계	2.2㎜	2.1㎜	2.0㎜	1.9㎜	1.8㎜	1.7㎜	1.6㎜	
A										
B										

맥류생산량조사표

지정통계 제15호
농 수 산 부

시도	구시군	총번호	맥	출
			1 2	3 4

지번	성명	착 (10a당 수량) A포구 kg	B포구 kg	전답별 답……① 전……②	A 포 구 규 폭 cm	규 간 cm	파 폭 cm	생 중 량 g	조제품 중 량 g	수분함량 %	B 포 구 규 폭 cm	규 간 cm	파 폭 cm	생 중 량 g	조제품 중량 g	수분함량 %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합 계																

조사자 직급 성명 ⑤ 검토자 직급 성명 ⑥

육도생산량조사표

지정통계 제15호
농 수 산 부

조사구 번호	지번	경작자 성명	포구별	규격 규폭 cm	규격 규간 cm	착 (10a당 조곡중량) kg	3㎡ 당 수량 조제인 g	수분함량 %	1/4 수 조제인 g	건조인 g	현미 (쇄미제외) 중량 g	수분함량 %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합 계												

조사자 직급 성명 ⑤ 검토자 직급 성명 ⑥

지정통계 제15호
농 수 산 부

고구마생산량조사표

도 군 면 리

조번	검작자 성명	예상량 A (kg)	예상량 B (kg)	A 포구 규목	A 포구 규장	A 포구 주수	A 포구 고구마수 (40g이상)	A 포구 생산량 (40g미만)	A 포구 생산량 (40g이상)	B 포구 규목	B 포구 규장	B 포구 주수	B 포구 고구마수 (40g이상)	B 포구 생산량 (40g미만)	B 포구 생산량 (40g이상)
합 계															

조사자 직급 성명 ㊞

지정통계 제15호
농 수 산 부

감자생산량조사표

시도	시구군	조번호

지번	성명	A 포구 규목 (cm)	A 포구 규장 (cm)	A 포구 주수 (주)	A 포구 감자수 (개)	A 포구 3㎡당 생산량 피해 (g)	A 포구 3㎡당 생산량 20g미만 (g)	A 포구 3㎡당 생산량 20g이상 (g)	B 포구 규목 (cm)	B 포구 규장 (cm)	B 포구 주수 (주)	B 포구 감자수 (개)	B 포구 3㎡당 생산량 피해 (g)	B 포구 3㎡당 생산량 20g미만 (g)	B 포구 3㎡당 생산량 20g이상 (g)
합 계															

㊞ 조사자 직급 성명 ㊞ 검토자 직급 성명 ㊞

시도	구시군	조번호	예부	선후
			1	2

두류생산량조사표

지정통계 제15호
농 수 산 부

지번	검작자 성명	조사필인	포구별	단간 홍작별	규구 규목	규구 규장	비후	예조사 평균 경중	예조사 전중	예조사 조제중	10a당 수확량	10a당 수확량	합계
			A										
			B										

총 번 호	총내일련번호

작물재배면적 조사단위구 파종면적현황

시·구·군	읍·면·동

지 번	지목	경지면적 대장면적	경지면적 증△감 면적	경지면적 증△감 사유	실제지목	경지면적 실제면적	규반면적	가경면적	작물파종면적 1회	2회	3회	4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③±④=⑦	⑧	⑨	⑩	⑪	⑫	⑬
합계	전											
	답											
	계											

지정통계 제 15호

층 번 호	층내일련번호

면적표본조사 단위구 요도

시·구·군	읍·면·동

작 물 별 파 종 면 적

구 분	합 계	작 물 별 파 종 면 적															

조사구 번호

'77 농업기본통계 및 가축통계

지정통계 제 16 호
제 30 호

조 사 표

12. 1

농 수 산 부

시 도	구시군	조사구 일련번호	층번호	농가번호		조사지	검사자
					0		

Ⅰ 농가인구

① 가 구 원

	총 수	남 자	여 자
12. 1현재 3개월 이상 동거및 동거할 사람은 몇명입니까? (고용원, 하숙생, 가정부등 포함)			
지난 1 년간(76. 12. 1 ~77. 11. 30) 가구원 중에서 군인, 학생, 직장등으로 집을 나아가 살고 있는 사람은 몇명입니까?			
지난 1 년간(76. 12. 1 ~77. 11. 30) 외지로 부터 들어온 사람은 몇명입니까?			

만14세 이상만 ❶❷❸❹ 란을 조사

	가구원이름 (가구원, 하숙생, 가정부, 포함)	연령 (만)	성별 (하나만○표) 남	성별 (하나만○표) 여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	고용원	하숙생	가정부	기타	최종학력: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무학: 글만 읽음	글도 모름	농사에 종사한 일이 있읍니까. (하나만○표): 1개월 미만	1~2	2~3	3개월 이상	농사이외에 종사한 일이 있읍니까. (하나만○표): 1개월 미만	1~3	3~6	6개월 이상	종사한분야는 주로 어느것입니까 (하나만 ○표): 농업	농업이외의 일	가사	학생	기타	농업이외의 일을 주로 종사한 분야는 어느것입니까 ⑥란 2 에 ○표 (조사) (하나만○표): 사무직	통신원	상업	어업	기타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1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2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3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4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5	1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7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8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9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0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1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2	2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3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4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5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6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17			1	2	1	2	3	4	5	1	2	3	4	5	6	7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5

○표 있으면 아래 1 에 ○표

○표 있으면

② 겸업 (❼ 란 2, 3, 4 에 ○표 있는 가구만 조사)

농사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수입은 어느것이 많읍니까?

300	00	1

○표 있으면

농업수입이 많다 → 1

겸업수입이 많다 → 2

(하나만 ○표)

Ⅱ 농 경 지

	없다V		천	백	십	평
총경지면적 (401 +405 + 408)		400				
논면적 (402 +403)		401				
소유관계: 자기소유논		402				
소유관계: 남의논(국공유지포함)		403				
'77년에 2회이상 작물을심은논		404				
밭면적 (406 +407)		405				
소유관계: 자기소유밭		406				
소유관계: 남의밭(국공유지포함)		407				
수원지면적 (409 +410)		408				
소유관계: 자기소유수원지		409				
소유관계: 남의수원지(국공유지포함)		410				

Ⅲ 업태별농가구

(하나만○표)

답작	전작(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축산	양잠	임금농업노동	기타	조사지역: 조사구내	조사구외
500	00	1	2	3	4	5	6	7	8	9	0	1

경지면적, 가축, 가축사양등을 기초로 하여 농가의 수입중 가장 많은 수입이 되는것을 조사하여 1 농가 1 업태로 구분한다.

기타 : 농업부대 써비스업

(양수, 탈곡, 화훼 양묘, 양송이)

만나위 이상인 경우에는 천단위에 함께 기입한다.

천	백	십	평
35	2	7	4

Ⅳ 작 물

	없음V		천	백	십	평
통일벼		601				
보리		602				
쌀보리		603				
밀		604				
고구마		605				
감자		606				
콩		607				
양파		608				
유채		609				
참깨		610				
땅콩		611				
고추		612				
마늘		613				
김장무우		614				
김장배추		615				

V 가 축 가 금

		없음 V		천	백	십	마리
① 젖소 (702+705+708+711)			701				
만 2 세 미 만			702				
그 중	암 컷		703				
	수 컷		704				
만 2 세 이 상 ~ 만 5 세 미 만			705				
그 중	암 컷		706				
	수 컷		707				
만 5 세 이 상 ~ 만 8 세 미 만			708				
그 중	암 컷		709				
	수 컷		710				
만 8 세 이 상			711				
그 중	암 컷		712				
	수 컷		713				
품종	홀 스 타 인		714				
	저 지		715				
	건 지		716				
	기 타		717				
과거 6 개월간	생 산 마 리 수		718				
	폐 사 마 리 수		719				
	구 입 마 리 수		720				
	판 매 마 리 수		721				
착 유 마 리 수			722				
착 유 총 량			723				
수 유 총 량			724				
납 유 총 량			725				

		없음 V		천	백	십	마리
② 고 기 소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품종	부 라 만		739				
	애버딘앵거스		740				
	헤 어 포 드		741				
	교 잡 종 (F_1)		742				
	기 타		743				
과거 6 개월간	생 산 마 리 수		744				
	폐 사 마 리 수		745				
	구 입 마 리 수		746				
	판 매 마 리 수		747				

		없음 V		천	백	십	마리
③ 소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과거 6 개월간	생산마리수		761				
	폐사마리수		762				
	구입마리수		763				
	판매마리수		764				

※ 착유량 : 1 일 평균 젖짜는 총량
수유량 : 1 일 평균 송아지가 먹는량
납유량 : 1 일 평균 우유처리장에 납품하는량과 자기소비 총량

		없음 V		천	백	십	마리
④ 닭 (766+767+770)			765				
3 개 월 미 만			766				
3 개월이상 ~ 6 개월미만			767				
그 중	암 컷		768				
	수 컷		769				
6 개 월 이 상			770				
그 중	암 컷		771				
	수 컷		772				
용도	산 란 용		773				
	육 용		774				
과거 6 개월간 소비량 (판매 및 자가소비)	영 계 (0.6kg미만)		775				
	중계 (0.6kg ~ 1.3kg)		776				
	성 계 (1.3 ~ 2 kg)		777				
	폐 계 (2 kg이상)		778				
	합 계		779				
1 일 산 란 량			780				

		없음 V		천	백	십	마리
⑤ 돼지 (802+805+808)			801				
6 개 월 미 만			802				
그 중	암 컷		803				
	수 컷		804				
6 개월이상 ~ 10개월미만			805				
그 중	암 컷		806				
	수 컷		807				
10 개 월 이 상			808				
그 중	암 컷		809				
	수 컷		810				
품종	버 크 샤		811				
	요 크 샤		812				
	햄 프 샤		813				
	듀 록 저 지		814				
	랜 드 레 이 스		815				
	기 타		816				
과거 6 개월간	생 산 마 리 수		817				
	폐 사 마 리 수		818				
	구 입 마 리 수		819				
	판 매 마 리 수		820				

면적추계 (1)

구분		조사수치 A	추계치 B	행정조사치 C	확정면적 D
대장면적	①				
증가면적	소계 ②=③+④+⑤+⑥+⑦				
	개간 ③				
	간척 ④				
	지목변경 ⑤				
	공공시설 ⑥				
	기타 ⑦				
감소면적	소계 ⑧=⑨+⑩+⑪+⑫+⑬				
	유실매몰 ⑨				
	건물건축 ⑩				
	공공시설 ⑪				
	지목변경 ⑫				
	기타 ⑬				
실제면적	⑭=①+②−⑧				
규반면적	⑮				
가경면적	⑯=⑭−⑮				

경지증감사유별면적

도	시군	읍면

번호	천	리	동	구분	대장면적	증감사유별												실제면적
						증가면적					감소면적							
						개간	간척	지목변경	공공시설	기타	유실매몰	건물건축	공공시설	지목변경	기타			

면적추계 (2)

구분		표본조사치	구성비	추정면적
관개시설별	농조답			
	수리안전답			
	수리불안전답			
	천수답			
모작별	1모작답			
	2모작답			
경지정리별	정리답			
	미정리답			
답추정면적			100.0	

축산물생산량집계표

구분	우유			계란	과거 6개월간 닭고기 소비량 (판매와 자가소비)				
	착유량	수유량	남유량		합계	0.6kg 미만	0.6 ~1.3kg	1.3 ~2kg	2kg 이상
	kg	kg	kg	개					

광공업통계조사 71

본 조사는 지난 1년간(1977. 1. 1~12. 31) 귀업체의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자료에 의거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정통계 제 17 호

통계법 제8조 및 동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77년 광공업통계조사표〔I〕

—사업체(공장)조사용—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조사표번호	사업체고유번호
	★

조사구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자본계층
—	★	★	★	★	★

1. 공장(사업체)명 및 소재지

공장(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구 로·동 가 번지의 호

도 시 구 동

군 읍·면 리 (통 반)

2.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 해당란에 ○표

(1) 본사가 따로 없다( )면 본란은 사선

(2) 본사가 따로 있다( )면 본란을 기재

본 사(본점)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구 로·동 가 번지의 호

도 시 구 동

군 읍·면 리 (통 반)

3. 창설 년월일

19 년 월 일

4. 결산기 (결산마감월)

○연3회 이상일 경우에는 적요란에 기입

(1) 년1회일 경우	①	월
(2) 연2회일 경우	①	월
	②	월

5.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1) 주식회사( ) (2) 기타법인( ) (3) 개인( )

6. 부지및건물연면적

부지	평(	m²)
건물	평(	m²)

7.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함)

1977.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8.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주요생산품명……① ② ③

(2) 주요사용원재료명……① ② ③

(3) 생산공정 (생산단계 또는과정)……① → ② → ③ → ④ → ⑤ → ⑥

15. 유형고정자산

○신규취득액 :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설치비(다른 소로부터 직접수입한 중고품 포함)

○중고취득액 : 신규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 및 설치비(도처의 취득은 모두 중고취득액임)

○처분 및 손해액 : 매각, 양도 및 재해 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

○가 액 경 가 : 잔존가액에 의한다

○아래사항은 중업원규모(평균) 200인 이상 사업체만 기재하십시요

구분	(1) 연간 신규 취득액	(2) 연간 중고취득액	(3) 연간처분및손해액	(4) 연간 감가상각액	(5) 연 말 총 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건물 및 구축물					
② 기계, 기구 및 장치					
③ 차량, 선박 및 운반구					
④ 토지					
합계					

16. 건설가계정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누사지출이나 기계 설비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집정식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 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 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 감소	(3) 연간 증감〔(1)−(2)〕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7. 조사표 작성근거 해당란에 ○표

(1) 장부( ) (2) 일부기억( ) (3) 기억( )

18. 기숙사의 유무(20인이상) 해당란에 ○표

(1) 있다 ( ) 면 →

(2) 없다 ( ) 면 사선

기숙사수	
(1) 남자	명
(2) 여자	명
계	명

적요 : ○적자요인, 구분이 어려운 품목 사업체 사용단위 수탁생산의 경우 위탁사업체명, 조세서, 품명, 수량 등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조사에 관한 사항

※ 합산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

(1) 본 공장분만 작성되었다 ( )

(2) 다른 공장분도 포함해서 작성되었다( )면→

사업체(공장)명	소재지

조사표작성 년월일	작성자(응답자)소속	작성자(응답자)성명	조사담당자 성명	지도구 책임자 성명
1978년 월 일	과 전화(국 번)	㊞	㊞	㊞

경 제 기 획 원

※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 ㊞ 74-8176 ㊞ 75-5371~5로 문의하십시오.

9. 종업원수, 월별 조업일수 및 노동투입시간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 주당 일반적인 작업(경영)시간의 1/3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자.
○피 고 용 자 : 상용, 임시 및 일고 종업원과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하되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는 제외.
○생 산 종 업 원 : 생산에 직접되는 현장작업에 종사하는 자
○사 무 및 기 타 종 업 원 :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조 업 일 수 : 생산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 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은 제외한다.
○노 동 투 입 시 간 : 전생산종업원의 1인당 매일 평균 조업한 시간을 분까지 각 월별로 기록한다.

구분 \ 월별	합계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계	12월말 남	12월말 여
(1)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2) 피고용자 ① 생산종업원															
(2) 피고용자 ②사무및기타종업원															
합계															
(3) 생산 종업원 월별조업일수															
(4) 생산종업원1인당일간노동투입시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10. 연 간 급 여 액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물로 지급한 것과 미불액을 포함한다.
○퇴직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한다.

구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생 산 종 업 원								
② 사무 및 기타종업원								
합 계								

11. 연간주요생산비

○1977년 1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비용중 인건비를 제외한 생산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자가 생산된 중간제품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비만 기입한다.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 제조시킨 경우에는 공급한 원재료도 (1) 원재료비란에 포함한다.
○생산된 완제품과 투입된 원재료의 연관성에 유의하여 기입한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직접비 (1)원 재 료 비 : 생산에 실제 사용된 재료의 사용액으로서 부재료 및 보조재료비 포함									
(2)연 료 비 : 석유, 석탄 및 기타 연료									
(3)구입전력비 : 전기요금(사무실용 및 미불금 포함)									
(4)구입용수비 :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									
(5)위탁생산비 : 가공임(위탁생산을 위해 제공한 원재료비는 (1)의 원재료비란에 합산)									
(6)수리유지비 : 유형고정자산의 수리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제 비용									
〔1〕직 접 비 계 〔(1)+(2)+(3)+(4)+(5)+(6)〕									
〔2〕간접비 (소형사의 간접비산출세분표 참조) (7)복리후생비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소비된 내용(봉급, 임금 및 상여금 제외)									
(8)운임 및 보관비 : 운반에 따른 제 비용과 제품의 보관에 따른 비용									
(9)수 수 료 : 상품을 판매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									
(10)임 차 료 : 토지, 건물, 기계 및 운반구 등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									
(11)광고선전비 : 광고, 선전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된 모든 비용									
(12)연구개발비 : 중수연구비, 시험연구비, 연구용역비 등 (제품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기계설비 등의 비용 및 급여 등 제외)									
(13)보 험 료 : 건물, 기계, 장치, 제장품 등의 화재보험료, 기타의 손해보험료를 말하며 종업원의 건강보험, 손해보험 등은 제외									
(14)기 타 : 여비, 교통비, 통신비, 교제접대비, 포장비, 견본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기밀비, 수출제비 및 회의비(조세공과 및 영업외비용 제외)									
〔2〕간 접 비 계 〔(7)+(8)+(9)+(10)+(11)+(12)+(13)+(14)〕									
총 계 ((1)+(2))									

12. 연간 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제품 출하액은 직접생산한 제품(위탁생산포함)중에서 1977년 1년간에 출하한 금액을 기입한다.
○외상판매, 견본, 선물용, 사무용 및 급여용,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도 포함하며 특히 완성품이 아닌 중간제품(반제품)이라도 그 업체의 생산공정이 종료되어 다른 업체(동일기업포함)로 옮고 된것도 포함한다.
○수탁가공이라도 비광공업부문으로부터의 수탁인 경우에는 제품출하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합계금액=외형매출결산액+내국소비세액(간접세)−구입상품매출액
○(4)의 내국소비세액란에는 77년 상반기중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간접세액(물품세, 주세, 석유류세, 직물류세)과 하반기중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과 특별소비세, 주세액의 총합산액을 기재한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제 품 출 하 액 : 제품의 외형 매출금액(14항의 (1)품목별 제품출하액 합계와 일치)									
(2)폐 품 판 매 액 :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합격품 및 폐품등의 판매액									
(3)수탁제조및수리수입액 : 수탁 생산하고 받은 가공임, 수리대금으로 받은 금액									
(4)내 국 소 비 세 액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물품세, 석유류세, 직물류세등									
합 계 〔(1)+(2)+(3)+(4)〕									

13. 연초 연말 재고액

○연초재고액은 1977. 1. 1 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7. 12. 31 현재로 소재장소에 관계없이 사업체 소유의 재고품 전부를 장부가격으로 기입한다.
○위탁생산으로 인한 재고품은 포함하고 수탁으로 인한 재고품은 제외하되 비광공업부문으로부터의 수탁인 경우는 포함한다
○제품의 재고액은 14항의 (2), (3)란의 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구분	(1) 연초재고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 연말재고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제 품																		
② 반제품 및 재공품																		
③ 원 재 료																		
④ 연 료																		
합 계																		

14. 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내역

○출하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품목명 및 수량단위는 별책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분류표에 없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품목은 공장 또는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수량단위로 기입하고 적요란에 자세한 내용을 명기한다.
○출하가격은 단일규격제품일 때에는 출하가격의 최저와 최고가격을 기입하고 규격이 다른 /수종의 동일제품일 때에는 최저단가인 규격품의 출하가격과 최고단가인 규격품의 출하가격을 각각 기입한다.
○제품매출명세서(외형매출금액)에 의하여 작성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제품명	★	단위	(1) 품목별 제품출하액 수량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 품목별 제품연초재고액 수량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3) 품목별 제품연말재고액 수량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4) 단위당 출하가격(원) 최저	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합계					12항 (1)과 일치										13항 (1)의 ①과 일치										13항 (2)의 ①과 일치												

10. 건설가계정
(본사·본점분에 한함)

○건설가계정이란 건설중인 유형고정자산(건물)의 건설을 위한 투자 지출이나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 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3) 연간증감〔(1)−(2)〕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1. 관할사업체의 공장별 조사표작성 가능여부

(해당란에 ○표)

(1) 사업체에서만 가능하다. (　　)
(2) 본사에서만 가능하다. (　　)
(3) 모두 다 가능하다. (　　)

적요 : ○참고사항(관할사업체의 특성, 연간실적 및 동향 등)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표 작성년월일	작성자(응답자) 소속	작성자(응답자) 성명	조사담당자 성명	지도구책임자 성명
1978년 월 일	전화(국 번)	㊞	㊞	㊞

본 조사는 지난 1년간(1977. 1. 1~12. 31) 귀업체의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산자료에 의거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정통계 제 17 호

통계법 제8조 및 동9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1977년
광공업통계조사표〔Ⅱ〕
—본사, 본점 조사용—

조사표번호	기업체번호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조사구번호	본사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자본계층
—	★	★	★	★	★

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본사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구 로·동 가 번지의 호
도 시 구 동
군 읍·면 리 (통 반)

2. 창설 년월일

19 년 월 일

3. 결산기 (결산마감월)

○연 3 회 이상일 경우에는 적요란에 기입

(1) 연 1 회일 경우	① 월
(2) 연 2 회일 경우	① 월
	② 월

4.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1) 주식회사( ) (2) 기타법인( ) (3) 개 인(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함)

1977. 12. 31. 현재 불입이 완료된 금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경 제 기 획 원

※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 ㊥ 74－8176 ㊞ 75－5371～5로 문의하십시오.

6. 관할 사업체명부 및 사업내용

○1977. 12. 31 현재 본사·본점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를 기입한다　　○경제활동 구분란에는 사업체의 해당 경제활동에 ○표 한다.
○본사의 무역부 또는 사업부나 영업부 등에서 관할사업체(공장)와는 별도로 위탁생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의 관할사업체로 보아 본 항목을 기입한다.
○외형매출액과 기타수입총액은 광공업에 관계없이 그 사업체의 1년간 총수입을 억원단위로 기입하되 1억원 미만은 1억원으로 기입한다.
○주요생산품명란에는 경제활동 구분에서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의 겸업"인 경우에는 3개의 주요생산품명을 기입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경제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예 : 무역업, 도매업, 서어비스업 등)

★	일련번호	사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종업원수	경제활동구분			외형매출액과 기타수입총액				주요생산품명		
						광공업	광공업과의 겸업	기타	천억	백억	십억	억	(1)	(2)	(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계														

7.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종업원수에는 중역은 물론 상용, 임시 및 일고종업원과 병가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자도 포함하되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는 제외하고 월별로 기입한다.
○연간급여액에는 종업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물로 지급한것과 미불액을 포함한다. (퇴직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게 지급한것은 제외)

(1) 종업원수 (월별)															(2) 연간급여액						
합계	1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12월말 계	12월말 남	12월말 여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8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
(본사·본점분에 한함)

○본사 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 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연초 재고액은 1977. 1. 1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7. 12. 31 현재로 기입한다.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는 각각 시가로 평가한다.

(1) 연초재고액								(2) 연말재고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9. 유형고정자산
(본사·본점분에한함)

○신규취득액 :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액 및 설치비(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 포함)
○중고취득액 : 신규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 및 설치비(도지의 취득은 모두 중고취득임)
○처 분 액 : 매각, 양도, 재해 등에 의한 처분 및 손해액(감가상각에 의한 감소는 포함치 않음)
○가 액 평 가 : 장부가격에 의한다.

구분	(1) 연간 신규취득액									(2) 연간 중고취득액									(3) 연간처분및 손해액									(4) 연말 총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건물 및 구축물																																				
②기계, 기구 및 장치																																				
③차량, 선박 및 운반구																																				
④토지																																				
합계																																				

(비) 이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조사목적에만 사용되며, 개인법인 및 기타단체의 비밀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 18 호

사업체노동실태조사표 (Ⅰ)

조사기준일 : 1978. 4. 30.

조사실시기관 : 노 동 청

지역번호	사업체번호	산업 분류번호	규모 분류번호
※	※	※	※

사업체에 관한 사항

1. 사업체 명칭		5. 조직형태 (1)개 인( ) (2)법 인( ) (3)국영법인( )	6. 사업체형태 (1)공장, 작업소, 광업소, 지점( ) (2)본 사, 사무실( ) (3)점포, 음식점, 숙박업소( ) (4)건설공사현장( )
2. 사업체소재지			7. 설립년도 년 ※
3. 대표자 성명	4. 전화번호		8. 주요생산품명 또는영업종목 (1) (2) (3)
9. 기타 (해당되는 난에만 기재하시오)	(1)외자업체인경우 투자국명 및 투자비율 ①투자국명( ) ②투자비율(%)	(2) 수출업체인 경우 수출비율 (%)	(3)입주공단 사업체 인경우입주공단명칭 ( )

종사원에 관한 사항

근로자종류별 \ 종사상지위별		총 수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유급여원	5. 개인업주	6. 무급가족종사자
생산종사원	1. 남자							
	2. 여자							
관리·사무 및 기술종사원	3. 남자							
	4. 여자							
총 수	5. 남자							
	6. 여자							
	7. 계							

연령에 관한 사항

	총 수	1. 13세미만	2. 13세	3. 14~17세	4. 18~19세	5. 20~24세	6. 25~29세	7. 30~39세	8. 40~49세	9. 50~54세	10. 55세이상
1. 남자											
2. 여자											
3. 계											

월급여총액에 관한사항 (상용근로자수와 유급여원을 포함하여 10인이상 사업체에서만 해당됩니다)

1. 대상근로자수	(1)3월말근로자수	천 인	2. 월급여총액 (4월분)	십억 백만 천 원
	(2)4월말근로자수			

주의 1. ※ 표난은 기입하지 마시오.
2. 뒷면의 기입요령을 참조하시오.
※ 감사합니다. 틀린데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합시다.

확인	사업체기입담당자	사업주확인	지방사무소검토자	지방사무소장확인
	성명	㊞	성명	㊞

(비) 이 조사결과는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조사목적에만 사용되며, 개인법인 및 기타단체의 비밀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 18 호

사업체노동실태조사표 (Ⅱ)

(휴·폐업 및 계절사업체용)

조사기준일 : 1978. 4. 30.

조사실시기관 : 노 동 청

지역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번호	규모분류번호
※	※	※	※

사업체에 관한 사항

1. 사업체명칭		4. 사업체형태 (해당난에 ○표하시오) (1) 공장, 작업소, 광업소, 지점( ) (2) 본사사무실( ) (3) 점포, 음식점, 숙박업소( ) (4) 건설공사현장( )	5. 휴·폐업구분 (1)휴업( ) (2)폐업( ) (3)계절사업체( )	6. 휴·폐업일자 (1)197 년 월 일 (2) 휴업사업체의 가동예정일자 (197 년 월 일)	7. 휴·폐 원인 (1)재정난 ( ) (2)원료부족 ( ) (3)공장 및 시설보수( ) (4)공해오염으로중지( ) (5)기 타 ( )
2. 사업체소재지					8. 조업기간중의 주요생산품명 또는영업종목 (1) (2) (3)
3. 대표자 성명					

종사원에 관한 사항

성별 \ 종사상지위별		총 수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유급여원	5. 개인업주	6. 무급가족종사자
남자	1.							
여자	2.							
총 수	3.							

주의 1. ※표난은 기입하지 마시오.
2 조사표 기입요령은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표 (Ⅰ) 기입요령에 준합니다.
※ 감사합니다. 틀린데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합시다.

확인	사업체기입담당자	사업주확인	지방사무소검토자	지방사무소장확인
	성명	㊞	성명	㊞

기 입 요 령

1. 조 사 범 위

(1) 1978년 4월 30일 현재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건산업 건산업체

(2) 조사대상 제외사업
1)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2) 군 · 경찰
3) 국 · 공립교육기관

2. 조 사 실 시

(1) 조사기준일 : 1978. 4. 30.
(2) 조 사 기 간 : 1978. 5. 1~5. 31(1개월간)

3. 주요생산품명 또는 영업종목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최종 「주요생산품명이나 영업종목」을 기입하되 생산액 또는 투입노동량이 많은 순으로 기입합니다. 생산품명 중 외국어나 특종의 품명으로 이해하기 애매한 생산품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을 ( )안에 기입합니다.
(예) (1) Fly Catch Ribbon(파리를 잡는 끈끈한 포충대)
(2) 원구(공계), 원구(프라스틱)
(3) 판삽업 (수출용 담배잎 1차가공품)

4. 사 업 체

상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서 사업을 행하는 개개의 끊리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광산, 공장, 상점, 영화관, 병원, 학교, 사무소, 영업소, 출장소등으로 불리우는 일정한 지역을 점유하여 경제활동을 행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건설업 사업체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현장도 조사대상이므로 개개의 건설공사 현장별로 조사표를 작성하고 「사업체형태」의 해당난 「건설공사현장」에 ○표 합니다.

5. 종 사 원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대상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원을 말하며 다만 3개월 이상의 장기 결근자는 제외합니다.
종사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용근로자 : 조사대상 사업체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 고용되어 있는자를 말하며 수습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간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조사대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자는 「상용근로자」로 하여 여기에 포함하며 「국영법인」에 대하여는 일반적, 특별적의 정원외에 정원의 직원이라도 상근직원 급여로 지급되는 직원은 포함합니다. 그외, 비상근직원수당, 임금등으로 지급되는 자 가운데 조사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계속 1개월 이상 계직하고 있는자는 「상용근로자」로 하고 공공기업체에 대하여는 직원 및 계속해서 1개월이상 계직하고 있는 상근의 촉탁, 임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용근로자중에서 중역이나 이사등의 역원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유급여원에 포함합니다.

(2)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어 있는자를 말합니다. 「국영법인」에 대하여는 전항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는자 이외의 자를말합니다. 위원수당등으로 지급되는 일반적, 특별적 직원 및 비상근 직원수당, 임금등으로 지급되는 자 가운데 조사기준일 현재 계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포함하며, 공공기업체에 대하여는 「유급여원」 및 「상용근로자」로 분류되는 자 이외의 근로자를 말하며, 비상근의 촉탁 및 계직 1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3) 일용근로자 : 사업체에서 그날그날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4) 유급여원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역원으로서 상근, 비상근을 불문하고 유급의 자를 말합니다.

(5) 개인업주
개인 경영사업체의 경영주이며, 실제로 조사대상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이며,
2인 이상으로 공동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의 한사람을 업주로 하고 나머지는 원칙상 근로자로 합니다. 또, 한사람의 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주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조사합니다.

(6) 무급가족종사자
개인업주와 가족으로 따로 임금이나 급여를 받지않고, 조사대상 사업체의 업무에 성상 근로시간의 1/3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가족이라도 근로자 정도의 임금, 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합니다.

(7) 생산종사원
생산품을 생산하는 현장(보조부문을 포함)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생산부문에서 근로를 하는자라도 「관리, 사무 및 기술종사원」의 항에 설명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 기술자등은 제외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제조, 가공, 조립, 검사, 검량, 인화, 저장, 운반, 포장, 창고업무, 출하, 보전, 수리, 수위, 야경등 입니다.
「광업」에서는 채광, 채탄, 굴진, 갱내운반, 저주, 필암, 환기, 배수, 천공, 발파, 장약, 분쇄, 선탄, 착정, 기계의 장치, 시추, 채취량의 조사, 필프작업, 정제, 가공, 검사, 검량, 저탄, 저장, 운반, 창고업무, 출하, 보전, 수리, 수위, 야경등 입니다.
「건설업」에서는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작업자를 말합니다.

(8) 관리, 사무 및 기술종사원
관리, 경리, 영업, 인사, 복지후생, 연구등의 부문에서 근무하는 가 전무 (당숙) 직업에 종사하는 지도 포함)와 생산부문에 있어 이것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원, 기술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말합니다.
경영, 기획등의 관리업무, 경리, 구매, 판매, 노무, 법무, 인사, 문서, 기타 통상의 사무적 제업무, 식당, 기숙사등의 복지후생업무, 공정관리, 생산기술의 개선 및 연구등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적인 업무(전문적 및 연구적 기술자), 술용차의 운업등의 관리, 사무 및 기술부문에 부대되는 업무, 사무를 주로하는 사업체 (예컨대 본사등)의 종사원은 전부 「관리, 사무 및 기술종사원」으로 합니다.

※ 1. 「생산종사원」과 「관리, 사무 및 기술종사원」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산업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의 4개 산업뿐이며, 그외 산업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음식, 광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용역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은 종사원 전부를 「관리, 사무 및 기술종사원」으로 조사합니다.
2. 「생산종사원」과 「관리, 사무 및 기술종사원」의 구분에 대하여 질여부, 사원등의 구체적인 구분방법에 있어서 경여부, 사원등은 직접적으로 생산에 종사하지 않으나, 생산을 하고 있는 현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생산종사원」으로, 반대로 사무실등에 근무하는 자는 「관리, 사무 및 기술종사원」으로 하여 조사합니다.

6. 월급여총액에 관한 사항의 「월급여총액」은 4월급여 계산기간 동안에 만근을 하지 않은 일·이직자의 급여액도 포함합니다.

(비) 이 조사결과는 조사목적에만 사용되며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비밀은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 19 호

매월노동통계조사표

1978년
조사실시기관 노동청

월분

지역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번호	규모번호

1. 사업체명칭			3. 주요 생산품명 또는 영업종목	4. 당월급여계산기간	5. 4의기간중조업일수
2. 소재지		전화번호	(1) (2)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	일

상용근로자에 관한 사항 상용 근로자라 함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개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귀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임시 일용 근로자로서 지난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근로자 종류및 성별			6. 근로자수 (월급여계산기간을 기준하여 기입합니다) (1) 전월말 근로자수	(2) 당월 입직자수 신규채용전입 등으로입직한 자의수를기입합니다.	(3) 당월 이직자수 해고 퇴직 전출등으로이직한 자의 수를 기입합니다.	(4) 당월말 근로자수	7. 연출근일수 실제 출근한 일수의 누계로서 유급휴가는 제외하며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8. 연근로시간수 휴식 시간은 제외합니다.	9. 임금총액 정액급여및초과급여와근로자에게일시적으로지급하는현물급여(식사)평가액을합산기재하시오. (세금포함) (1)+(2)+(3)의 합계	(1) 정액급여 본봉기본급, 직무수당, 물가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기재하시오.	(2) 초과급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당·일직수당등을 기재하시오.	(3)현물급여평가액 식사, 연탄, 생활필수품 통근차제공등의 평가액을 기재하시오.	10. 특별급여총액 상여금, 새로운 협약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산정된 급여액외 추급액등을 기재하되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제외합니다. (세금포함)
									1,000원 미만의 단위는 4사5입 하시오.				
생산 근로자	남	1	천 인	천 인	천 인	천 인	천 일	백만 천 시	백만 천원	백만 천원	백만 천원	백만 천원	백만 천원
	여	2											
관리·사무및 기술 근로자	남	3											
	여	4											
합계 (전근로자)		5											
관리·사무및 기술 근로자	관리직	사무직	6										
		기술직	7										
	기타 일반직	사무직	8										
		기술직	9										
	합계(관리·사무및 기술 근로자)		10										

※ (3+4)−(10)=(6+7+8+9)

일용근로자에 관한사항

일용근로자라 함은 그날 그날 고용되는자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자를 말합니다. 단 조사 기준일 이전 1개월 통산하여 45일이 상근로한자는 상용근로자에 포함합니다.

11. 조사기간중의 연인원 (매일사용한 수의합계): 천 인

12.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백만 천원

13. 전월분 조사표 해당난에서 합계난의 숫자를 기입 하시오.

6의(4)난 당월말근로자수	7난 연출근일수	8난 연근로시간수	9난 임금총액	9의 (1)난 정액급여	9의 (2난) 초과급여	9의 (3난) 현물급여평가액	10난 특별급여총액
천 인	천 일	백만 천 시	백만 천원	백만 천원	백만 천원	백만 천원	백만 천원

14. 조사기간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의 번호에 ○표하고 여백을 이용하여 그내용의 개략을 기입 하시오.

(1) 베이스 옙(정기승급 이외의 일제승급을 포함)
(2) 초임급등 특정근로자만의 급여인상
(3) 기타 급여체계의 변경
(4) 임시공의 증가
(5) 임시공의 감소
(6) 주요생산품명 또는 영업종목의 변경
(7) 급여마감일의 변경

15. 6난에서 10난까지의 수치와 13난의 수치와의 사이에 현저할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아래에 기입하시오.

※ 1. 이 조사표는 매월분을 익월 5일까지 노동청 관할 지방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설업체인 경우 본사에서 국내공사현장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기재하되 해외 취업근로자는 제외합니다.
3. 관리직의 사무직 : 계장급 (간부직포함) 이상으로 사무부서의 계획, 조정, 지휘, 감독등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
4. 관리직의 기술직 : 기술부서에서 관리직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사무직의 계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5. 기타일반직의 사무직 : 계장급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직.
6. 기타일반직의 기술직 : 계장급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술직.

조사표제출일	사업체기입담당자	사업주확인
월 일	성명	㊞

지방사무소검토자	지방사무소장 확인
성명	㊞

감사합니다. 틀린데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오.

(비) 이조사 결과는 조사목적에만 사용되며 개인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 뒷면을 반드시 읽으신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통계 제 20 호

직종별임금실태조사표 (I)

조사기준기간 : 1978 3. 1 ~ 3. 31
급여 계산 기간이 이와 상위할 경우에는 이기간에 가장 근사한 기간의 급여지급 기간.
조사실시기관 : 노 동 청

사업체번호			산업분류번호	규모분류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	-		※	※

1 사업체명칭		해당난에 ○표하시오	(1)단독 사업체 (2)본 사 (3)지점 공장등
2 사업체 소재지			
3 전화번호	4. 주요생산품명 또는 영업종목	(1) (2)	

5. 근로자에관한사항	
(1) 상용근로자수	인
(2) 조사근로자수	인
(3) 근로자추출율	%

6. 외자업체에관한사항	외자업체에한해서만기입합니다
(1) 투자국명	
(2) 투자액	$
(3) 투자비율	%

1. 일련번호	8. 성명	9. 성별	10가 구주 여부	11. 혼인상태	12. 학력	13. 연령	14. 직종 1)직종명	14. 직종 2)직종번호	15. 근로자종류별	16. 근속년수	17. 경력년수	18. 실근로일수	19. 근로시간수 (1) 정상근로 실시간수	19. 근로시간수 (2) 초과근로 실시간수	20. 월급여액 (1) 임금총액	20. (2) 정액급여	20. (3) 초과급여	20. (4) 현물급여	21. 특별급여액
	한글로 기입합니다.	1. 남자 2. 여자	1. 가구주 2. 아니다	1. 미혼 2. 결혼 (유배우)	1. 국졸 2. 중고졸 3. (1) 일반 및 기타고 (2) 실업중 (3) 중 4. 초대(전문)졸 (1) 일반 (2) 실업 5. 대졸 (1) 일반 (2) 교육	기입 않습니다. 사실상의 만나이수		※이난은본청에서직종번호를부여하므로기입하지마시오.	1. 관리직 2. 전문직 및 연구직 3. 기술직 4. 사무직 5. 자격증소지기능자 (1) 기능사 1급 (2) 기능사 2급 (3) 기능사 (4) 기능사보 (5) 기타증빙명이자격증소지자 6. 자격증없는기능자 7. 수습근로자 8. 단순및기타근로자	현사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을 기입합니다.	현직종에 종사한 기간을 기입합니다.	실제로 일근한 수 (휴일유급휴가 및 제외) 1시간이라도 근무했으면 1일로 간주합니다.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및 현물급여를 합산한총액을말합니다. (2)+(3)+(4) 의합계 (세금포함)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등에 기준조건, 산정방법등이 정확히 있는 급여를말합니다. (기본급, 능률급, 일정급, 근속급, 직급, 가족수당, 물가수당, 월차수당등)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등을 말하니다. (현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일근로수당, 일직수당등)	식사, 연탄, 생활지원금, 통근차제공등 근로자에게 임금적으로 지급되는 평가액을말합니다.	77. 1.1~ 77.12.31 까지 1년간의 상여금, 기말수당 등 연 [illegible]급액을 말합니다
1		1.2	1.2	1.2	1.2.3(1)(2)(3).4(1)(2).5(1)(2)	세			1.2.3.4.5(1)(2)(3)(4)(5). 6.7.8	년 월	년 월	일	시	시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0		1.2	1.2	1.2	1.2.3(1)(2)(3).4(1)(2).5(1)(3)				1.2.3.4.5(1)(2)(3)(4)(5). 6.7.8										
1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0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0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0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0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 감사합니다. 틀린데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 ) 매 중 ( ) 매

확인	사업체기입담당자	사업주확인	지방사무소검토자	지방사무소장확인
	성명	㊞ 성명		㊞

기 입 요 령

본조사는 1978. 3. 1~3. 31(3월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합니다.
※표(사업체번호(지역번호, 일련번호), 산업분류번호, 규모분류번호, 직종번호)는 본청 및 지방 사무소에서 기입합니다.

1, 사업체명칭 : 통상명칭을 전부 기입합니다.

4. 주요생산품명 또는 영업종목 :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최종 주요생산품명이나 영업종목을 기입하되 생산액 또는 투입노동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입합니다.
생산 품명중 외국어나 특종의 품명으로 이해하기 애매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기입합니다.
예를 들면, Fly Catch Ribbon (파리를 잡는 끈끈한 포충대), 완구(봉제, 프라스틱), 판상엽(수출용 담배잎 1차가공품) 등 입니다.

5. (1)상용근로자수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된 상용근로자와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에 45일간 근로한 일용 및 임시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5. (2), (3) 조사근로자수 및 근로자추출율
가. 근로자수가 100~499인 사업체의 추출율은 50%로서 조사근로자수 5. (2)는 전체근로자수의 1/2이 됩니다.
나. 근로자수가 500인 이상인 사업체의 추출율은 20%로서 조사근로자수 5. (2) 는 전체근로자수의 1/5이 됩니다.
예시 : 근로자 추출방법

규모별	근로자 추출율	근로자추출방법
1군 (10~29)인	100%	사업주를 제외한 관리직, 사무직, 기타공원등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2군 (30~99)인	100%	사업주를 제외한 관리직, 사무직, 기타공원등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3군 (100~499인)	50%	1. 임금 대장에 의거 한 사람씩 띄운숫자. 2. 예시 : 400인 회사라면 임금 대장에 의거 (1, 3, 5, . . . , 399번까지) 200명을 추출하여야 합니다.
4군 (500인 이상)	20%	1. 임금 대장에 의거 네사람씩 띄운숫자. 2. 예시 : 500인 회사라면 임금 대장에 의거 (5, 10, 15, . . . , 495번까지)100명을 추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근로자수는 기입된 조사표 일련번호의 맨 끝번호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6. 외자업체에 관한사항 : 외자업체에 한하여 투자국영, 투자액($), 투자비율(%)을 누락없이 기입합니다.

7. 일련번호 : 임금대장에 의한 순서에 따라 조사근로자의 일련번호를 작성합니다. (3군과 4군은 전체근로자를 조사하지 않고 50%와 20%를 추출)

8. 성명 : 한글로 기입합니다.

9. 성별 : 남여로 구별합니다.

10. 가구주 : 호적상의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자를 말합니다.

11. 혼인상태 : 호적상의 혼인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신분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결혼 : 현재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결혼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됩니다.
(2) 미혼 : 현재 남녀로 결혼을 하지않고 혼자 생활하고있는 자를 말합니다

12. 학력 : 정규학교 졸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졸 이하는 국졸 및 무학자를 포함하며, 대졸 이상은 대졸 및 대학원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합니다. 단, 중퇴자는 차하급 학교 졸업으로 합니다. 예를들면, 고등학교 중퇴자는 중졸 입니다. 또한 고졸이상은 전공분야별 (인문 및 기타, 상고, 공고, 일반대, 이공대)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13. 연령 : 사실상의 만나이를 기입합니다.

14. (1)직종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직종명을 기입하되 직종명만 으로는 이해하기가 애매한 것은 수행업무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15. 근로자종류별
(1) 관리직 :
계장급 이상 (간부직 포함) 으로서 각 부서의 업무를 계획, 조정, 지휘, 감독등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전문직 및 연구직 :
의학, 법률, 교직등의 분야에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회계사, 변호사, 교직자, 저작자, 언론인, 조각가, 화가, 사진작가, 작곡가, 연예인, 체육인, 사회학자, 통계 및 수학자, 전자계산기 체계분석자, 의사 및 관련직 종사자, 생명과학자등 입니다.

(3) 기술자 :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하여 생산에 관한 설계, 연구, 기술적 자문, 시험 및 검사를 행하며 관련분야 에서 보조적,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을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건축기술자, 토목기술자, 전기기술자, 전자기술자, 기계기술자, 화학기술자, 금속기술자, 광산기술자, 측량기술자, 항공기 기술자, 선박기술자 등 입니다

(4) 사무직 :
사무부서에서 경리, 구매, 판매, 노무, 법무, 인사, 문서, 기타등상의 사무적 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자격증소지 기능자 :
국가기술자격법, 직업훈련법 및 기타공인면허자격증 소지자를 말하며, 조사표상의 기능사등급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등급이므로 국가기술자격종목에서 제외된 직업훈련법상의 1급기능사, 2급기능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기입하며, 직업훈련법상의 3급, 4급, 5급기능사는 전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능사보로 분류하여 기입합니다.

조사표상등급구분(국가기술자격법)	직업훈련법상 등급 구분
기 능 장	
기능사 1급	1급기능사
기능사 2급	2급기능사
기능사보	3급, 4급, 5급기능사

(6) 자격증 없는 기능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

(7) 수습근로자 :
직업훈련법 및 근로 기준법상 직업훈련 또는 수습과정에 있는자를 말합니다.

(8) 단순 및 기타 근로자 :
향후 기능습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서판매종사자, 수위, 사환, 단순노무자등을 말합니다.

16. 근속년수 : 현사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기입합니다
예시) 4년 6개월—0406, 16년 11개월—1611

17. 경력년수 : 현직종에서 종사한 기간을 위"17"과 같이 기입합니다.

18. 근로일수 : 78. 3. 1~3. 31 (3월급여계산기간)간의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기입합니다.

19. 근로시간수 : 78. 3. 1~3. 31 (3월급여계산기간)간의 실 근로시간수를 기입합니다.

20. 월급여액 : 78. 3. 1~3. 31 (3월급여계산기간)간의 월급여액을 기입합니다.
(2) 임금총액 :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및 현물급여를 합산한 총액을 말합니다.
(2) + (3) + (4) 의 합계
(2) 정액급여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산정방법등이 정하여져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본급, 능률급, 연령급, 근속급, 지역급, 가족수당, 직무수당, 물가수당, 월차수당 등)
(3) 초과급여 :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당·일직수당 등)
(4) 현물급여 : 식사, 연탄, 생활필수품, 통근차제공 등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평가액을 말합니다.

21. 특별급여액 : 77. 1. 1.~77. 12. 31 까지 1년간의 상여금 및 기말수당 등 연간 지급액을 말합니다.

(비) 이조사 결과는 조사목적에만 사용되며 개인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은 통계법 제8조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 20 호

직종별임금실태조사표 (Ⅱ)

조사기준기간 : 1978. 3. 1 ~ 3. 31
급여 계산 기간이 이와 상위할 경우에는 이기간에 가장 근사한 기간의 급여지급 기간.
조사실시기관 : 노 동 청

사업체번호				산업분류번호	규모분류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		-		※	※

1. 일련번호	8. 성명	9. 성별	10. 가구주 여부	11. 혼인상태	12. 학력	13. 연령	14. 직종 (1)직종명	(2)직종번호	15. 근로자종류별	16. 근속년수	17. 경력년수	18. 실근로일수	19. 근로시간수 (1) 정상 실근로시간수	(2) 초과 실근로시간수	20. 월급여액 (1) 임금총액	(2) 정액급여	(3) 초과급여	(4) 현물급여	21. 특별급여액
	현금로 기입합니다.	1. 남자 2. 여자	1. 가구주 2. 아니다	1. 미혼 2. 결혼(유배우)	1. 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1) 인문 (2) 실업 (3) 기타 4. 초대졸(전문)대졸 (1) 일반 (2) 교육 (3) 상업 (4) 대학 5. 대학원 (1) 일반 (2) 이공 (3) 대학	기입합니다. 사상상의 만나이을		※이난은본 청에서직종 번호를부여 하므로기입 하지마시오.	1. 관리직 2. 전문 및 연구직 3. 기술직 4. 사무직 5. 자격증소지기능자 (1) 기능장 (2) 기능사 1급 (3) 기능사 2급 (4) 기능사 보 (5) 기타공인면허자 6. 자격증소지자 7. 자격증없는기능자 8. 단순및기타근로자	현사업체에서 근속한 기간을 기입합니다.	현직종에 종사한 기간을 기입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일수로 하되 휴가를 제외하며 1시간이라도 근로하였으면 1일로 가주합니다.	정상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말합니다.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및 현물급여를 합산한총액을말합니다. (2)+(3)+(4) 의합계 (세금포함)	근로계약또는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 산정방법등이 정하여져 있는 급여를말합니다. (기본급, 능률급, 연령급, 근속급, 지역급, 가족수당, 물가수당, 월차수당등)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근근로수당 등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당일직수당등)	식사, 연탄, 생필품수품, 통근차제공등 근로자에게 일율적으로지급되는 제가액을말합니다.	77. 1. 1~ 77. 12. 31 까지 1년간의 상여금, 기말수당 등 연간지급액을 말합니다
1		1.2	1.2	1.2	1.2.3(1)(2)(3).4(1)(2).5(1)(2)	세			1.2.3.4.5(1)(2)(3)(4)(5). 6.7.8	년 월	년 월	일	시	시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백만 천 원
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0		1.2	1.2	1.2	1.2.3(1)(2)(3).4(1)(2).5(1)(3)				1.2.3.4.5(1)(2)(3)(4)(5). 6.7.8										
1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1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0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2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0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3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0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4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0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1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2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3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4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5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6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7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8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59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60		1.2	1.2	1.2	1.2.3(1)(2)(3).4(1)(2).5(1)(2)				1.2.3.4.5(1)(2)(3)(4)(5). 6.7.8										

※ 감사합니다. 틀린데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 ) 매 중 ( ) 매

확인	사업체기입담당자	사업주확인	지방사무소검토자	지방사무소장확인
	성명	(인) 성명		(인)

1977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정부 · 공공단체 자산 조사표 I

지정통계 제21호의 1

——1977년 12월 31일 현재——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재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부통계조사 정부자산 조사지부장 앞

(한국은행 조사제2부장)

(표 지)

1. 국유재산 소유기관		2. 공유재산 소유기관		3. 공 공 단 체	
①관 리 청 명		①지방자치단체명 또는 교육위원회명		①공공단체명	
②조사표작성 관 서 명		②조 사 표 작 성 관 서 명		②조사표작성 기 관 명	

조사대상 관서장의 직위 및 성명 직위 성명 ㊞

조사대상기관의 주소 주소

조사표 작성자의 소속부과명 및 직위 성명 부과명 직위 성명 ㊞ (Tel.)

조사표 작성완료 년 월 일 1978년 월 일

조사표 총 매 중 매

토 지 조 사

구 분	부호	면 적	재평가년도 및 평가액
대 지	1	평	19 년 천원
임야지	2	평	19 년 천원
논	3	평	19 년 천원
밭	4	평	19 년 천원
기 타	5	평	19 년 천원
합 계	6	평	19 년 천원

접수일자	월 일	㊞
정리번호		
심 사	월 일	㊞
심 사	월 일	㊞
심 사	월 일	㊞
부 호	월 일	㊞
천 공	월 일	㊞

1977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정부·공공단체 자산 조사표 Ⅱ

지정통계 제21호의 1

—— 1977년 12월 31일 현재 ——

기 관	
업 종	
②회계명	

③ 정부 자산의 종류				
1 공용	2 공공용	3 기업용	4 보존	5 잡종

① 자산 보유 기관명

(유형고정자산 조사표)

④ 자산의 구분				⑨ 내용년수	⑩ 육성년수 (동식물경우)	⑪ 부호	⑫ 물가배율	⑬ 취득년도	⑭ 취득가격	⑮ 취득당시 중고품인 경우 사용년수	⑯ 단위	⑰ 수량	⑱ 자산의 소재지	⑲ 최근 자산재평가 년도 및 평가액	⑳ 시가 (자산재평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㉑ 대여자산 비율	㉒ 비고
⑤ 중분류	⑥ 소분류	⑦ 구조 또는 용도	⑧ 세목										시·군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19 년	천원	년				19 년 천원	천원	%	

한 국 은 행

조사표 총 매 중 매

작성자	㊞

조사표 Ⅱ 기입요령

가. 일반적 유의사항

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1, 2, 3……)로, 문자는 한글로 기입한다.

② 해당사항이 없는 난은 사선(▨)을 긋는다.

③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입하며 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④ 난은 기입하지 않는다.

⑤ 조사에서 제외되는 자산

㉮ 무형자산과 문화재, 서적, 예술품, 골동품 등

㉯ 도로법상의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

㉰ 하천법상의 하천부속시설중 제방, 호안, 수문

나. 부문별 기입요령

① 자산보유기관명 ……자산을 실제로 보유 사용하고 있는 기관명을 기입한다.

② 회 계 명 ……㉮ 해당자산을 규제하고 있는 회계명을 기입한다.
㉯ 회계명이 다를 때는 조사표Ⅱ를 달리하여 작성한다.

③ 정부자산의종류 …… 해당 자산의 번호에 한하여 ○표를 한다.

④ 자 산 의 구 분 …… 조사대상자산을 국부자산 분류에 따라 「중분류」「소분류」「구조 또는 용도」「세목」의 해당자산명칭을 찾아 기입한다.

⑨ 내 용 년 수 ……「정부자산 조사요령」의 내용연수를 기입한다.

⑩ 육 성 년 수 …… 동물 식물에 한하여 해당 동식물의 자란 햇수를 기입한다.

⑬ 취 득 년 도 ……㉮ 자산을 취득 또는 구입한 년도를 기입한다.
㉯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하였을 경우에는 준공년도를 기입한다.

⑭ 취 득 가 격 ……㉮ 자산의 취득 또는 구입 당시의 취득금액을 천원단위로 기 한다.
㉯ 재산대장 [illegible] 폐단위로 표시되었을 경우 현행 화폐 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⑮ 취득당시 중고품인 경우 사용년수 …… 중고품인 경우에만 취득당시 이미 사용한 년수를 적는다.

⑯ 단 위 · ⑰ 수 량 …… 해당자산에 적용하는 단위, 수량을 기입한다.

⑱ 자산의 소재지 ……㉮ 자산이 실제로 소재하고 있는 장소를 시,군단위로 기입한다.
㉯ 선박, 차량등 이동하는 자산은 선적지,등록지 또는 소속 관서의 주소를 기입한다.
㉰ 자산의 소재지가 외국일 경우 그 국명을 기입한다.

⑲ 최근자산재평가 년도 및 평가액 …… 최근 실시한 조사대상 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년도와 재평가액을 기입한다.

⑳ 시 가 …… 해당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1977년말 현재의 시가를 추정하여 기입한다.

㉑ 대여자산 비율 …… 소유자산중 대여한 부분이 몇%를 차지하는가를 표시한다. 1% 미만은 반올림한다.

㉒ 비 고 …… 기입난중 미비사항을 기입한다.
㉮ 단위 · 수량만으로는 자산의 물량을 충분히 표시할 수 없는 구축물, 하수도등의 자산에 한하여는 높이, 넓이, 폭 또는 규격 내용등을 기입한다.
㉯ 대여한 경우 대여처의 사업내용을 적는다.

다. 문의 및 연락처

① 한국은행 조사제2부 연관분석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가 110번지
전 화 : ㉒ 9151~69, ㉘ 5261~7
㉓ 4151~59, ㉔ 2611~19 구내) 259, 260, 266

② 한국은행 국내 각지점 조사계

1977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정부 · 공공단체 자산 조사표 Ⅲ

지정통계 제21호의 1

—— 1977년 12월 31일 현재 ——

기 관	
업 종	

① 임차자산 사용기관명

(임차자산 조사표)

② 자산의 구분				⑦ 내용년수	⑧ 부호	⑨ 물가배율	⑩ 임차년도	⑪ 임차당시 신·중고 구분	⑫ 단위	⑬ 수량	⑭ 신품가격	⑮ 자산의 소재지		⑯ 비고
③ 중분류	④ 소분류	⑤ 구조또는용도	⑥ 세목									시·군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19 년	중고( )			천원			

한 국 은 행

조사표 총 매 중 매

작성자	㊞

指定統計 第21號의 2

統計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本記載內容은 統計目的以外에는 絶對로 使用하지 않습니다.

1977年 國富統計調査를 위한

法人資產調査票(I)

(法人調査票)

— 1977年 12月 31日 現在 —

主 管：經濟企劃院　　實施機關：韓國産業銀行

法人地域番號	調査區番號	法人番號	事業体番號
☆	※	※	※ 99

産業分類	組織形態	資本金規模	資産額規模	従業員規模
※	☆	☆	☆	☆

1. 法人名稱	代表者名　　電話　　局　　番				
2. 所在地	市道　區市郡　洞區邑面　街洞里　番地				{빌딩 호 / 시장 호}
3. 組織形態		4. 資本金또는 出資金額	千원	5. 資産再評價 有無및 再評價年月日	有 第 回 年 月 第 回 年 月 無 第 回 年 月
6. 設立年月日	年　月　日	7. 決算期	年 回, 月. 月		

8. 資産額總括表

資産의種類	取得價額	新品價額	時價
① 建物	千원	千원	千원
② 構築物			
③ 機械및裝置			
④ 船舶			
⑤ 車輛및運搬具			
⑥ 工具·器具및備品			
⑦ 建設假計定			
⑧ 大動植物			
⑨ 取得價額(時期)不明 또는 陳腐化資産	☆		
⑩ 在庫資産			
⑪ 合計			

9. 賃借資産總括表

10. 事業內容

1) 業種名	
2) 主要生産品 또는 取扱品名	
3) 主要工程	

11. 管轄事業体

事業体番號	事業体名	従業員數 有給任員	常傭	臨時日傭	總數	事業收入 金額	構成比	操業狀況 操業	休業	一時轉業	清算	整理	備考
1	本社					千원	%	1	2	3	4	5	「하나의事業体」「管理的事務」
2							%	1	2	3	4	5	
3							%	1	2	3	4	5	
4							%	1	2	3	4	5	
5							%	1	2	3	4	5	

註：☆표가 있는 欄은 記入하지 마십시오.

12. 調査票作成根據
① 帳簿(　) ② 一部記憶(　)
③ 記憶 또는 推定(　)

13. 備考

應答者姓名	所屬課名
印	課 電話
作成日字	調査員姓名
月　日	印
指導區責任者捺印	添附調査票總枚數
印	枚

審査者捺印

1次	2次	3次
印	印	印

指定統計 第21號의 2

法人名稱	
事業体名稱	
事業体所在地	
事業内容	( )

1977年 国富統計調査를 위한

法人資産調査票(Ⅱ-1)

(有形固定資産調査票)

— 1977年 12月 31日 現在 —

主管：經濟企劃院　　實施機關：韓國産業銀行

法人地域番號	調査區番號	法人番號	事業体番號	事業体地域番號
☆	☆	☆	☆	☆
産業分類	**組織形態**	**資本金規模**	**資産額規模**	**從業員規模**
☆	☆	☆	☆	☆

Ⅰ. 資産項目別 取得価額

資産分類							資産의使用		年度別取得價額											再評價額	時價	備考
資産中分類	資産小分類	構造및用途 또는 用途別設備	細目	資産分類番號	耐用年數	新品 中古의 區分	自家使用	貸與	77年	76年	75年	74年	73年	72年	71年	70年	69年	68年 以前	合計	(年月)		
						新	1	2(%)	千원	千원	千원	千원	千원	千원	千원	千원	千원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千원	千원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新	1	2(%)										年 千원 / 年 千원 / 年 千원				

註: ☆표가 있는 欄은 記入하지 마십시오.

枚中　　枚

應答者姓名	印	所屬課名	課 電話	調査員姓名	印

指定統計 第21號의 2

法人地域番號	調査區番號	法人番號	事業体番號	事業体地域番號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1977年 國富統計調査를 위한

法人資産調査票(Ⅱ-2)

(有形固定資産調査票)

— 1977年 12月 31日 現在 —

主 管：經濟企劃院　　實施機關：韓國産業銀行

産業分類	組織形態	資本金規模	資産額規模	從業員規模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Ⅰ. 資産項目別 取得價額

資産分類						資産의使用	年度別取得價額											再評價額	時價	備考
資産中分類	資産小分類	構造및用途 또는 用途別設備	細目	資産分類番號	耐用年數	新品中古의區分 自家使用 貸與	77年	76年	75年	74年	73年	72年	71年	70年	69年	68年以前	合計	(年月)		
				[redacted]		新 1 2(%)														
				[redacted]		新 1 2(%)														
				[redacted]		新 1 2(%)														
				[redacted]		新 1 2(%)														
				[redacted]		新 1 2(%)														
				[redacted]		新 1 2(%)														
				[redacted]		新 1 2(%)														
				[redacted]		新 1 2(%)														

Ⅱ. 取得價額(時期) 不明 및 陳腐化資産

資産中分類	資産小分類	構造및用途 또는 用途別設備	細目	資産分類番號	耐用年數	新品中古의區分	取得年度	取得價額	新品價額	時價	備考
				[redacted]		新					
				[redacted]		新					
				[redacted]		新					
				[redacted]		新					

註: ☆표가 있는 欄은 記入하지 마십시오.

枚中　　枚

Ⅲ. 土地

種類	垈地	林野地	畓(논)	田(밭)	其他	計
附號	1	2	3	4	5	6
面積	坪	坪	坪	坪	坪	坪
再評價年度 및 再評價額	千원 (年)	千원 (年)	千원 (年)	千원 (年)	千원 (年)	千원 (年)
時價	千원	千원	千원	千원	千원	千원

應答者姓名	印	所屬課名	課 電話	調査員姓名	印

指定統計 第21號의 2

法人地域番號	調査區番號	法人番號	事業体番號	事業体地域番號
☆	※	※	※	☆

1977年 國富統計調査를 위한

法人資産調査票(Ⅲ)

(賃借資産調査票)

— 1977年 12月 31日 現在 —

主 管：經濟企劃院　　實施機關：韓國産業銀行

産業分類	組織形態	資本金規模	資産額規模	従業員規模
※	☆	☆	☆	☆

資産中分類	資産小分類	構造 및 用途 또는 用途別設備	細目	資産分類番號	耐用年數	新·中古의區分 新品	新·中古의區分 中古品	單位	數量	賃借時期	新品價額	時價	備考
						1	2			年 月	千원	千원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1	2			年 月			

註：☆표가 있는 欄은 記入하지 마십시오.

枚中　　枚

應答者姓名	所屬課名	作成日字	調査員姓名
印	課 電話	月 日	印

指定統計 第21號의 2

法人地域番號	調査區番號	法人番號	事業体番號	事業体地域番號
				☆

1977年 國富統計調査를 위한

法人資産調査票(Ⅳ)

(在庫資産調査票)

— 1977年 12月 31日 現在 —

主管：經濟企劃院　　實施機關：韓國産業銀行

産業分類	組織形態	資本金規模	資産額規模	從業員規模
☆	☆	☆	☆	☆

資産中分類	品目名	資産分類番號	單位	數量	帳簿價額	備考
					千원	

註：☆표가 있는 欄은 記入하지 마십시오.

枚中　　枚

資産中分類	品目名	資産分類番號	單位	數量	帳簿價額	備考
					千원	

應答者 姓名	印	所屬課名	課 電話	作成日字	月　日	調査員姓名	印

지정통계 제21호의 3

1977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개인기업자산조사표

(농림어업부문)

—1977년 12월 31일 기준—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재내용은 통계목적 이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읍니다.

시 도	시 군	산업분류	종업원수	농경지 면적	조사구 번호	농림어가번호

사 업 체 개 황

소 재 지	시도			시군			읍면동			리동		번지	경영주성명								전 화			
종 업 원 수	가족종사자	1	0	1				명	상시및임시종업원	1	0	2				명	합 계	1	0	3				명	농림어업수입						천원
농 경 지	논	2	0	1				평	밭	2	0	2				평	수 원 지	2	0	3				평	합 계	2	0	4			평

조사표작성년월일	응 답 자 성 명	조 사 자				검 토 자				첨부조사표
1978년 월 일	가구주의( ) 성명 :	직급		성명	㊞	직급		성명	㊞	매

농 수 산 부

자산분류명	구조및용도	세목	단위	수량	자산분류번호			A	B	내용년수	취득시기	신·중고품의 구분 신품	중고품	취득가격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시가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소유상황 자기소유	대여
13. 선박	131. 강선				1	3	1				1 9	1	2													1	2
					1	3	1				1 9	1	2													1	2
					1	3	1				1 9	1	2													1	2
					1	3	1				1 9	1	2													1	2
					1	3	1				1 9	1	2													1	2
					1	3	1				1 9	1	2													1	2
					1	3	1				1 9	1	2													1	2
					1	3	1				1 9	1	2													1	2
					1	3	1				1 9	1	2													1	2
	132. 목선				1	3	2				1 9	1	2													1	2
					1	3	2				1 9	1	2													1	2
					1	3	2				1 9	1	2													1	2
					1	3	2				1 9	1	2													1	2
					1	3	2				1 9	1	2													1	2
					1	3	2				1 9	1	2													1	2
					1	3	2				1 9	1	2													1	2
					1	3	2				1 9	1	2													1	2
					1	3	2				1 9	1	2													1	2
					1	3	2				1 9	1	2													1	2
	133. 기타선박				1	3	3				1 9	1	2													1	2
					1	3	3				1 9	1	2													1	2
					1	3	3				1 9	1	2													1	2
	합계				1	3	0	0	0	0																	
12. 기계및장치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합계					1	2	0	0	0	0																	

3 0 7 매중 0 0 2 매

자산분류명		구조및용도	세목	단위	수량	자산분류번호					내용년수	취득시기	신·중고품의 구분		취득가격						시가						소유상황	
									A	B			신품	중고품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자기소유	대여
15. 공구·기구 및 비품	151. 공구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 5 1						1 9	1	2													1	2
	152. 기구 및 비품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1 5 2						1 9	1	2													1	2
	합계					1 5 0	0	0	0																			
	161. 건설가계정					1 6 1						1 9	1	2													1	2
						1 6 1						1 9	1	2													1	2
						1 6 1						1 9	1	2													1	2
						1 6 1						1 9															1	2
	합계					1 6 0	0	0	0																			

동 물

세목	자산분류					육성년수	수량					소유상황	
				A	B		만	천	백	십	마리	자기소유	대여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1	7	1									1	2
합계	1	7	1	0	0	0							

식 물

세목	자산분류					육성년수	수량					소유상황	
				A	B		만	천	백	십	마리	자기소유	대여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1	7	2									1	2
합계	1	7	2	0	0	0							

307 매중 004 매

2. 유형고정자산 (Ⅱ)

(임차자산)

자산분류명	구조및용도	세목	단위	수량	자산분류번호			A	B	내용년수	임차시기		임차시신중고품의구분 신품	중고품	신품가격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시가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1	9	1	2												
합계					1	8	0	0	0	0																

307 매중 005 매

3. 재고자산

자산분류명	품명	단위	자산분류	수량	시가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11. 미성숙동물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합계			2 1 1	0 0 0						
212. 미성숙식물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2 1 2							
합계			2 1 2	0 0 0						

자산분류명	품명	단위	자산분류	수량	시가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13. 완제품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2 1 3							
합계			2 1 3	0 0 0						
214. 저장품			2 1 4							
			2 1 4							
			2 1 4							
			1 4							
			2 1 4							
			2 1 4							
			2 1 4							
			2 1 4							
			2 1 4							
			2 1 4							
			2 1 4							
			2 1 4							
합계			2 1 4	0 0 0						
215. 기타			2 1 5							
(종균, 종패, 치어등)			2 1 5							
			2 1 5							
			2 1 5							
			2 1 5							
			2 1 5							
			2 1 5							
			2 1 5							
			2 1 5							
합계			2 1 5	0 0 0						

국부통계조사(개인자산부문조사)(속) 95

지정통계 제21 - 3호

1977년 국부통계조사를 위한

개인기업 자산 조사표

1977년 12월 31일 현재

중소기업은행
(　　) 지점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재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사업체추출형 2	3 조사구 4	5 사업체번호 7	8 도번호 9	10 산업분류 13	종업원규모 14	15	16 19

1. 사업체 개황

(1) 사업체명		(2) 대표자명	
(3) 사업체소재지	시도 구군 동읍, 면 리 번지 TEL. (　) ~		
(4) 본사소재지	시도 구군 동읍 면 리 번지 TEL. (　) ~		
(5) 주생산품 또는 취급품	1. 2.	(6) 연간총생산액 또는 매출액	20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7
(7) 종업원수	28 합계 31	업주 및 가족종업원(단체의 역원포함) 32	33 상시종업원 36 / 37 임시종업원 39

응답자성명	
조사자성명	㊞
조사년월일	1978년 월 일
첨부부표매수	(　　) 매

지점심사		본부심사	
조사계	책임자	내용검토	부호검토

일 반 적 유 의 사 항

1. 각 조사항목은 조사원 편람을 숙지한 후 정확히 기재할 것.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반드시 조사표 상의 금액단위에 맞추어 기입할 것.
3. 조사표는 흑색 또는 청색 볼펜으로 명확히 기재할 것.
4. 조사표 상의 ▒ 부분은 기재하지 말것.

자 산 액 시 가 합 계 표

유형고정자산

자산명 \ 소유상황별	자기사용자산 A	대 여 자 산 B	임 차 자 산 C
10. 건 물 (101+102+103)	천원	천원	천원
11. 구축물 (111+112+113+114)	〃	〃	〃
12. 기 계 및 장 치	〃	〃	〃
13. 선 박 (131+132+133)	〃	〃	〃
14. 차량및운반구 (141+142+143+144)	〃	〃	〃
15. 공구및비품 (151+152)	〃	〃	〃
16. 건 설 가 계 정	〃	〃	〃
17. 대동식물 (171+172)	〃	〃	〃
합 계	〃	〃	〃

재 고 자 산

21. 원 재 료	천원
22. 반제품및재공품	〃
23. 완제품및상품	〃
24. 저 장 품	〃
합 계	〃

총 자 산 액

구 분	A + B	A + C
유형고정자산	천원	천원
재 고 자 산	천원	
총 계	천원	천원

1 사업체추출형 2	3 조 사 구 4	5 사업체번호 7	8 도번호 9

2. 유형고정자산

자산소분류명	구조및용도	세목	수량	단위	40 자산분류번호 45	46 내용년수 47	48 취득시기 51	52 신고의구분 신	고	53 취득가격 59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0 신품가격 66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7 시가 73 (십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74 소유상황 자기사용	대여
101 주거용건물				평	1 0 1		1 9	1	2				1	2
				평	1 0 1		1 9	1	2				1	2
				평	1 0 1		1 9	1	2				1	2
102. 비주거용건물				평	1 0 2		1 9	1	2				1	2
				평	1 0 2		1 9	1	2				1	2
				평	1 0 2		1 9	1	2				1	2
				평	1 0 2		1 9	1	2				1	2
103. 건물부속설비					1 0 3		1 9	1	2				1	2
					1 0 3		1 9	1	2				1	2
					1 0 3		1 9	1	2				1	2
10. 합 계														
111. 교통시설					1 1 1		1 9	1	2				1	2
					1 1 1		1 9	1	2				1	2
112. 발전및송배전시설					1 1 2		1 9	1	2				1	2
					1 1 2		1 9	1	2				1	2
113. 수리, 치수 및 급수 시설					1 1 3		1 9	1	2				1	2
					1 1 3		1 9	1	2				1	2
114. 기타시설					1 1 4		1 9	1	2				1	2
					1 1 4		1 9	1	2				1	2
11. 합 계														

1 2 사업체추출형	3 4 조 사 구	5 7 사업체번호	8 9 도번호

자산소분류명	용도별 설비및세목	자 산 명	수량	단위	40 45 자산분류번호	46 47 내용년수	48 51 취득시기	52 신고의구분 신	52 신고의구분 고	53 59 취득가격 십억	53 59 취득가격 억	53 59 취득가격 천만	53 59 취득가격 백만	53 59 취득가격 십만	53 59 취득가격 만	53 59 취득가격 천원	60 66 신품가격 십억	60 66 신품가격 억	60 66 신품가격 천만	60 66 신품가격 백만	60 66 신품가격 십만	60 66 신품가격 만	60 66 신품가격 천원	67 73 시가 십억	67 73 시가 억	67 73 시가 천만	67 73 시가 백만	67 73 시가 십만	67 73 시가 만	67 73 시가 천원	74 소유상황 자기사용	74 소유상황 대여
12. 기 계 및 장 치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 2		1 9	1	2																						1	2
12. 합 계																																

1 사업체추출형 2	3 조 사 구 4	5 사업체번호 7	8 도번호 9

자산소분류명	구조및용도	세목	수량	단위	40 자산분류번호 45	46 내용년수 47	48 취득시기 51	52 신고의구분 신	고	53 취득가격 59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0 신품가격 66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7 시가 73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74 소유상황 자기사용	대여
131. 강선					131		19	1	2				1	2
					131		19	1	2				1	2
132. 목선					132		19	1	2				1	2
					132		19	1	2				1	2
133. 기타선박					133		19	1	2				1	2
					133		19	1	2				1	2
13. 합계														
141. 궤도차량					141		19	1	2				1	2
					141		19	1	2				1	2
142. 자동차					142		19	1	2				1	2
					142		19	1	2				1	2
					142		19	1	2				1	2
					142		19	1	2				1	2
143. 항공기					143		19	1	2				1	2
144. 기타차량 및운반구					144		19	1	2				1	2
					144		19	1	2				1	2
					144		19	1	2				1	2
14. 합계														

1 2 사업체추출형	3 4 조 사 구	5 7 사업체번호	8 9 도번호

자산소분류명	구조및용도	세목	수량	단위	40 45 자산분류번호	46 47 내용년수	48 51 취득시기	52 신고의구분 (신 고)	53 59 취득가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0 66 신품가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7 73 시가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74 소유상황 (자기사용 대여)
151. 공구					151		19	1 2				1 2
					151		19	1 2				1 2
					151		19	1 2				1 2
					151		19	1 2				1 2
					151		19	1 2				1 2
					151		19	1 2				1 2
					151		19	1 2				1 2
					151		19	1 2				1 2
					151		19	1 2				1 2
					151		19	1 2				1 2
152. 기구 및 비품					152		19	1 2				1 2
					152		19	1 2				1 2
					152		19	1 2				1 2
					152		19	1 2				1 2
					152		19	1 2				1 2
					152		19	1 2				1 2
					152		19	1 2				1 2
					152		19	1 2				1 2
					152		19	1 2				1 2
					152		19	1 2				1 2
15. 합계												

1 2 사업체추출형	3 4 조사구	5 7 사업체번호	8 9 도번호

40 42 자산소분류명	종류	수량	단위	48 51 육성년수	67 73 평가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40 42 자산소분류명	종류	수량	단위	48 51 육성년수	67 73 평가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60. 건설가계정											
171. 동물						172. 식물					
						17. 합계					

3. 재고자산

40 42 자산소분류명	품명	수량	단위	67 73 평가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40 42 자산소분류명	품명	수량	단위	67 73 평가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210. 원재료					230. 완성품 및 상품				
21. 합계					23. 합계				
220. 반제품 및 재공품					240. 저장품				
22. 합계					24. 합계				

1 2 사업체추출형	3 4 조 사 구	5 7 사업체번호	8 9 도번호

4. 임 차 자 산

자산소분류명	구조및용도	세 목	수량	단위	40 45 자산분류번호	46 47 내용년수	48 51 임차시기	52 신고의구분 신	52 신고의구분 고	60 66 신품가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67 73 시가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74 소유상황 임차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1 9	1	2															3

국부통계조사 (개인자산부문조사)(속) 103

지정통계 제 21 호의 3

1977년 국 부 통 계 조 사

개 인 기 업 체 자 산 조 사 표

— 1977년 12월 31일 현재 —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 민 은 행

1. 사업체개황

① 지역번호	② 산업분류	③ 규모구분	④ 조사구번호	⑤ 사업체번호	⑥ 표본구분
1	3	6	7	10	15

⑦ 사업체명		⑧ 대표자명	전화번호 ( )		비고
⑨ 사업체소재지	시도 구 시·군	로·동 구·읍·면	가 동·리	번지 호 (통 반)	
⑩ 업종		⑫ 사업주구분	25 1. 단독		
⑪ 년간총매출액 또는수입금액	19 ( ) 만원		2. 공동		
			3. 비법인단체		
⑬ 종업원수	업주및가족종업원	상시종업원	임시종업원	합계	
	26 명	30 명	34 명	38 명	

⑭ 조사에관한사항	조사년월일	응답자성명	첨부조사매수	조사담당자	지점심사	본부심사
	1978년 월 일		42 매	(인)	(인)	(인)

16 1 - 0 1

2. 유형고정자산 조사표 (I)

(소 유 자 산)

① 자산 중분류명	② 자산 소분류명	③ 구조 및 용도 또는 자산세목명	④ 자산분류번호	⑤ 내용년수	⑥ 수량	⑦ 단위	⑧ 취득시기 (년도)	⑨ 신·중고의 구분 신품	⑨ 신·중고의 구분 중고품	⑩ 취득가격	⑪ 사용구분 자기사용	⑪ 사용구분 대여	⑫ 건물의사업용비율 (100%—가계사용비율)
			19	25			27 19 년	29 1	2	30 천원	37 1	2	38 %
							19 년	1	2	천원	1	2

3. 유형고정자산 조사표 (Ⅱ)

(임 차 자 산)

① 자산 중분류명	② 자산 소분류명	③ 구조및용도 또는자산세목명	④ 자산분류번호	⑤ 내용년수	⑥ 수량	⑦ 단위	⑧ 임차시기 (년도)	⑨ 신·중고의 구분 신품	⑨ 신·중고의 구분 중고품	⑩ 신품가격	건물의 자산가치 (100%—[illegible])
			19	25			27 19 년	29 1	2	30 천원	38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19 년	1	2	천원	%
			999999						가격합계	천원	

4. 재 고 자 산 조 사 표

① 자 산 중분류명	② 종 류 및 자 산 세 목 명	③ 자산분류번호	④ 수 량	⑤ 단 위	⑥ 가 격
		19			30 천원
					천원
					천원

국부통계조사 (가계부문조사)(속) 107

지정통계
제21－4호

(사)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977년 국부통계 조사를 위한

가 계 자 산 조 사 표(1. 갑)

— 1977년 12월 31일 현재 —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영농구분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직업(근무처 또는 자영사업명칭)	가구의 연간소득
			※	※	※	※
	—	1 농 가 2 비농가		만 세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가구소재주소

시 도	구 시·군	로·동 구·읍·면	가 동·리(	번지 통 아파트 동	호 반 호)

주거구분

1. 자 가 (주택)	2. 관 공 사 택	3. 전 세	4. 월 세	5. 주 택 이 외
				1 자 가 2 임 차

주거용건물 (주거구분에서 1 또는 5－1에 ○표하였으면) (1 전용주택, 2 겸용주택, 3 주택이외)

건 축 구 조	연 건 평 및 대 지 면 적	취 득 시 기
1 철근콘크리트조	건 물 층	취득 또는 신축시기 19 년 ※
2 연 와 조	연 건 평 평	
3 석 조	주거면적 평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 1 신 옥 2 구 옥
4 블 록 조	병용면적 평	
5 토 벽 조	자가사용 평	
6 목 조	타인사용 평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신옥제외) (지은지 몇년된집을 샀는가?)
7 목골몰탈조		
8 간이목조 또는 간이목골몰탈조	대지면적 평	년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표작성년월일	응 답 자 성 명	조사담당자성명	지도구 책임자 성명
1978년 월 일	가구주의( ) ㊞	㊞	㊞

주의: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거주지이외의 주거용건물 소유 (자가인 경우에만)

Ⅰ. (1 전용주택, 2 겸용주택, 3 주택이외)

소 재 주 소	시 도 / 구 시·군 / 로·동 구·읍·면 / 가 동·리(/ 번지 통 아파트 동 / 호 반 호)

건 축 구 조	연 건 평 및 대 지 면 적	취 득 시 기
1 철근콘크리조조	건 물 층	취득 또는 신축시기 19 년 ※
2 연 와 조	연 건 평 평	
3 석 조	주거면적 평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 1 신 옥 2 구 옥
4 블 록 조	병용면적 평	
5 토 벽 조	자가사용 평	
6 목 조	타인사용 평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신옥제외) (지은지 몇년된 집을 샀는가?)
7 목골몰탈조		
8 간이목조 또는 간이목골몰탈조	대지면적 평	

Ⅱ. (1 전용주택, 2 겸용주택, 3 주택이외)

소 재 주 소	시 도 / 구 시·군 / 로·동 구·읍·면 / 가 동·리(/ 번지 통 아파트 동 / 호 반 호)

건 축 구 조	연 건 평 및 대 지 면 적	취 득 시 기
1 철근콘크리트조	건 물 층	취득 또는 신축시기 19 년 ※
2 연 와 조	연 건 평 평	
3 석 조	주거면적 평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 1 신 옥 2 구 옥
4 블 록 조	병용면적 평	
5 토 벽 조	자가사용 평	
6 목 조	타인사용 평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신옥제외) (지은지 몇년된 집을 샀는가?)
7 목골몰탈조		
8 간이목조 또는 간이목골몰탈조	대지면적 평	년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

가구의연간소득합계	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근로소득	가구주소득	봉 급	월 원	년 원	주사업소득 (농어업, 상업, 제조업, 자유업등)	월 원	년 원
		상여금	년 회	년 원	부 업 소 득	월 원	년 원
	기타가구원소득	봉 급	월 원	년 원	기 타 소 득 (이자, 방세, 연금, 보조금 등)	월 원	년 원
		상여금	년 회	년 원			

가구지출에 관한 사항

원	원	연간지출합계	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 매중 □ 매)

부호 기입란	품목 및 규격	구입상태 1 신품 2 중고품	구입(입수)시기 및 수량 61년 이전	62~66	67~71	72	73	74	75	76	77	합계
			이17년 상전	년12~전16	년7~전11	6년전	5년전	4년전	3년전	2년전	1년전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합계											

주택부대시설

주택 구분	부호 기입란	품목	설치년도 및 수량 이61년 상전	62~66	67~71	72	73	74	75	76	77	합계
			이17년 상전	년12~전16	년7~전11	6년전	5년전	4년전	3년전	2년전	1년전	
주거용 건물		연탄보일러										
		경유보일러 (수량은 난방 평수를 기입한다)										
		우물										
		수동식펌프										
		자동펌프 (수량은 수도꼭지수를 기입한다.)										
		상수도 (수량은 수도꼭지수를 기입한다)										
		세면기										
		수세식변기 (소변기는 여기에 포함한다)										
		정화조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한다)										
		세멘쓰레기통										
		욕조										
		샤위시설										
거주지 이외의 주거용 건물 (I)												
거주지 이외의 주거용 건물 (II)												

지정통계
제21-4호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1977년 국부통계 조사를 위한

가 계 자 산 조 사 표(2. 을)

— 1977년 12월 31일 현재 —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영농구분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가구주직업(근무처 또는 자영사업명칭)	가구의 연간소득
	—	1 농가 2 비농가	※	※ 만 세	※	※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가구소재주소

시 도	구 시·군	로·동 구·읍·면	가 동·리(	번지 아파트 동	호 통 반 호)

주거구분

1. 자가(주택)	2. 관공사택	3. 전세	4. 월세	5. 주택이외 1 자가 2 임차

주거용건물(주거구분에서 1또는 5-1에 ○표하였으면) (1 전용주택, 2 겸용주택, 3 주택이외)

건축구조	연건평 및 대지면적	취득시기
1 철근콘크리트조 2 연와조 3 석조 4 블록조 5 토벽조 6 목조 7 목골몰탈조 8 간이목조 또는 간이목골몰탈조	건물 층 연건평 평 주거면적 평 병용면적 평 자가사용 평 타인사용 평 대지면적 평	취득 또는 신축시기 19 년 ※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 1 신옥 2 구옥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신옥제외) (지은지 몇년된 집을 샀는가?) 년

조사에 관한 사항

조사표작성년월일	응답자성명	조사담당자성명	지도구 책임자 성명
1978년 월 일	가구주의( ) ㊞	㊞	㊞

주의: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거주지이외의 주거용건물 소유(자가인 경우에만)

Ⅰ. (1 전용주택, 2 겸용주택, 3 주택이외)

소재주소	시 도 / 구 시·군 / 로·동 구·읍·면 / 가 동·리(/ 번지 아파트 동 / 호 통 반 호)
건축구조	연건평 및 대지면적
1 철근콘크리조조 2 연와조 3 석조 4 블록조 5 토벽조 6 목조 7 목골몰탈조 8 간이목조 또는 간이목골몰탈조	건물 층 연건평 평 주거면적 평 병용면적 평 자가사용 평 타인사용 평 대지면적 평
취득시기	취득 또는 신축시기 19 년 ※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 1 신옥 2 구옥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신옥제외) (지은지 몇년된 집을 샀는가?)

Ⅱ. (1 전용주택, 2 겸용주택, 3 주택이외)

소재주소	시 도 / 구 시·군 / 로·동 구·읍·면 / 가 동·리(/ 번지 아파트 동 / 호 통 반 호)
건축구조	연건평 및 대지면적
1 철근콘크리트조 2 연와조 3 석조 4 블록조 5 토벽조 6 목조 7 목골몰탈조 8 간이목조 또는 간이목골몰탈조	건물 층 연건평 평 주거면적 평 병용면적 평 자가사용 평 타인사용 평 대지면적 평
취득시기	취득 또는 신축시기 19 년 ※ 취득시의 신·구옥 구분 1 신옥 2 구옥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신옥제외) (지은지 몇년된 집을 샀는가?) 년

가구소득에 관한 사항

가구의연간소득합계 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영 원

근로소득	가구주소득	봉급	월 원	년 원
		상여금	년 회	년 원
	기타가구원소득	봉급	월 원	년 원
		상여금	년 회	년 원

주사업소득(농어업, 상업, 제조업, 자유업등)	월 원	년 원
부업소득	월 원	년 원
기타소득(이자, 방세, 연금, 보조금 등)	월 원	년 원

가구지출에 관한 사항 월 원 연간지출합계 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원

(□ 매중 □ 매)

부호 기입란	품목 및 규격	보유수량 천	백	십	일	부호 기입란	품목 및 규격	보유수량 천	백	십	일
	합 계						합 계				

주택부대시설

주택 구분	부호 기입란	품목	설치년도 및 수량									합계
			이전	62~66	67~71	72	73	74	75	76	77	
			17년 이상	12년~16년	7년~11년	6년전	5년전	4년전	3년전	2년전	1년전	
주거용 건물		연탄보일러										
		경유보일러 (수량은 난방 평수를 기입한다)										
		우물										
		수동식펌프										
		자동펌프 (수량은 수도꼭지수를 기입한다.)										
		상수도 (수량은 수도꼭지수를 기입한다)										
		세면기										
		수세식변기 (수변기는 여기에 포함한다)										
		정화조 (단독으로 설치한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한다)										
		세멘쓰레기통										
		욕조										
		샤워시설										
거주지 이외의 주거용 건물 (I)												
거주지 이외의 주거용 건물 (II)												

제1차 총 어업조사 조사표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 승인된 어업센서스중 해면어업에 한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통계법에 의거 모든 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 법인 및 단체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1970년 12월 1일 조사

※ 분류	경영조직	경영규모	주된어업종류	최성기의 종사자수	해상작업 종사일수	어획금액	전경업	주된 수입원천	가구원수
지표									

농수산부

비

지정통계제22호
어업센서스

가구주(세대주)성명, 사업소또는대표자명	⑬
인구 및 주택 조사 조사구 번호	
어업조사 조사구 번호	

주소	시 구 동 / 도 군 읍 면 / 리 번지 호
소속어협	

제 총 구 분	개인경영가구및 고용자가구			공동경영	회사경영
	동력선사용	무동력 5톤이상	무동력 5톤미만	개인경영가구및 고용자가구	
어업조사 일련번호					
※어업조사 조사결과					

※ 수산청에서 기입

지도 담당관 성명	시도	⑬
	시군	⑬

조사원 성명	⑬

조사표 기입상의 주의

조사항목(Ⅰ.Ⅱ.Ⅲ.Ⅳ)중 경영조직별로 ○표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조사항목	Ⅰ	Ⅱ	Ⅲ	Ⅳ
개인경영	○	○	○	○
공동경영(대표자)	○	○	×	×
회사경영	○	○	×	×
고용자가구	○	×	○	○

주:① 개인 경영과 고용자가구:조사원이 조사
② 공동경영과 회사경영:지도원이 조사
③ 조사표 뒷면의 주의사항 참고할 것.

【Ⅰ】조사대상의 구분

가. 경영조직

지난 1년간에 경영한 어업은
(해당번호하나에○표)

개인단독으로 경영하였다.	1
공동 경영으로 하였다.	2
회사 경영으로 하였다.	3
다른 사람의 어업이나 양식 사업체에 해상에서 어업종사자로서 고용살이만 했다.	4

주:① 공동경영:두사람이상이 어선어구등의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관리하여 그 수입의 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것이며 그 대표자에 한하여 조사한다.
② 회사경영:상법에 의한주식 합자,합명,유한회사 등의 사업체

【Ⅱ】어업경영

가. 어업의 종류

지난 1년간에 경영한 어업의 종류는 (해당 어업에 전부 ○표하고 그중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 것에 ◎표

		어업의 종류	분류번호
해면어업	해외어업	원양트롤	01
		모선식저인망	02
		원양참치연승	03
		기타원양어업	04
	포경	포경	05
	저인망	트롤	06
		새우트롤	07
		1수인대형기선저인망	08
		2수인대형기선저인망	09
		1수인중형기선저인망	10
		2수인중형기선저인망	11
		기타저인망	12
	선망	기선선망	13
		기타선망	14
	부망	안강망	15
		기타부망	16
	자망	꽁치유자망	17
		고등어유자망	18
		삼치유자망	19
		멸치유자망	20
		조기유자망	21
		명태자망	22
		기타자망	23
	인망	기선권현망	24
		지인망	25
		선인망	26
	조업승	오징어1본조	27
		기타1본조	28
		명태연승	29
		상어연승	30
		장어연승	31
		기타연승	32
	잠수	해조채취	33
	기타어업	참수기	34
		기타어업	35
	정치망	대형정치망	36
		소형정치망	37
	천해양식	김양식	38
		굴양식	39
		백합양식	40
		진주양식	41
	해주해허(양식)		42

주:① 35번 기타어업은 1~34까지 외해 어업(어류양식포함)을 기입한다
② 33번 해조채취는 자연산해조 채취외에 김, 굴, 백합, 진주양식을 제외한 해조류 양식과 패류 양식을 포함한다

나. 경영규모

(1) 지난 1년간에 사용한 어선은(숫자로 기입)

(가) 동력선

선명	톤수
계	척

(나) 무동력선

선명	톤수
계	척

주:① 사용한 어선은 자기소유이든 빌린 것이든 상관없이 어업생산에 참가한 모든 어선을 조사한다.
② 총톤수가 큰것부터 기입하고 10척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를 사용 첨부한다.
③ 등록 및 신고에 상관없이 실제 사용한 어선의 톤수를 기입한다.
④ 어선과 어망을 각자 제공하여 어업에 참가한 경우 어선 제공자만 사용어선에 기입한다.

(2) 12월 1일 현재 천해 양식 면적은 (숫자로 기입)

	종류	방법	면적 m²	참고 평	참고 책(대)
1	김양식	망홍			
		부홍			
		기타			
		소계			
2	굴양식	수하식			
		기타			
		소계			
3	백합양식				
4	진주양식				

주:① "가"항 어업의 종류중 38.39.40.41번에 ○표 또는 ◎표있는 것은 전부 조사한다.
② 양식 면적은 실제로 양식시설을 한 면적을 몰어 m²로 기재하되 m²로 알지 못할 때에는 참고란에 평,책(대)을 기재한다.
③ 김양식의 부홍에는 서선형 부홍과 염홍을 포함시킨다.

다. 최성기의 종사자수

지난 1년간에 가장 많이 해상작업에 종사한 때의 인원수는(숫자로 기입)

총수	가족종사자(출자자포함)	고용종사자
인	인	인

(예시)

1969 1970
12, 1, 2, 3, 4, 5, 6, 7, 8, 10, 11, 12,
부산호 13인(중형기선저인망조업)
인천호 6인(유자망조업)
13인 13인 13인 13인 ⑮인 ⑱인 6인 6인 0인 13인 13인 13인 13인
(가장 많이 종사한때의 인원)

주:① 공동경영인 경우는 공동경영체에 출자한자가 당해 공동 경영체에 해상에서 종사한 자는 가족 종사자에 기입한다.
② 법인 회사인 경우 해상 종사자 전원을 고용 종사자로 기입한다.

라. 종사일수

지난 1년간에 사업체 전체를 통하여 해상작업에 종사한 일수는(해당번호에○표)

29일 이하	30~59일	60~99일	100~149일	150~199일	200~249일	250일 이상
1	2	3	4	5	6	7

주: 종사 일수는 1일에 종사한 사람의 수와 조업한 어선 척수에 상관없이 1일로 계산한다.

마. 투자금액

(1) 지난 1년간에 대체한 어선 및 기관과 신조한 어선은
(동력 무동력에 ○표하고 숫자로 기입)

선명	동력	무동력	톤수	대선건조 천만	대선건조 백만	대선건조 십만	대선건조 만	대선건조 천	기관대체 천만	기관대체 백만	기관대체 십만	기관대체 만	기관대체 천	신규건조 천만	신규건조 백만	신규건조 십만	신규건조 만	신규건조 천
계																		

주:① 대선건조:노후어선을 대체키 위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구입한 것.
② 기관대체:어선의 기관만을 대체한것(무동력선에 기관을 설치한것도포함)
③ 신규건조:새로히 어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선을 새로히 건조 또는 구입한 것.

(2) 지난 1년간에 대체 또는 새로히 구입한 어망은(숫자로 기입)

어망의 종류	대체 천만	대체 백만	대체 십만	대체 만	대체 천	신규 천만	신규 백만	신규 십만	신규 만	신규 천
트롤										
저인망										
선망										
부망										
자망										
인망										
조연승										
정치망										
기타어망										
계										

주:① 대체:노후된 시설을 전부 대체한 것.
② 신규:새로히 양식을 시작하거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어망을 새로히 구입한 것.

(3) 지난 1년간에 대체 또는 새로히 시설한 양식 시설은
(숫자로 기입)

종류	대체 천만	대체 백만	대체 십만	대체 만	대체 천	신규 천만	신규 백만	신규 십만	신규 만	신규 천
김양식										
굴양식										
백합양식										
진주양식										

주:① 대체:노후된 시설을 전부 대체한것.
② 신규:새로히 양식을 시작하거나 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새로히 시작한것.

바. 차입금액

어업 또는 양식업의 경영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은
(숫자로 기입)

차입기관		12월1일현재 잔액은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지난1년간의 차입한 총금액은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1	수협										
2	농협										
3	자치단체										
4	은행										
5	개인										
6	기타										
계											

주:① 12월1일 현재 잔액은 빌린 기간에 상관없이 12월1일 현재 남아있는 차입 금액을 기입한다.
② 지난1년간 차입금액은 지난1년간에 갚은 금액에 상관없이 지난1년간에 실제로 빌린 금액은 전부 기입한다.

사. 어획금액

지난 1년간에 총어획 금액은(숫자로 기입)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주:① 어획하여 판매되지 아니한것(선내 부식용, 자가가공, 자가 소비량을 포함시킨다)도 판매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② 해조류등 건제품으로만 판매되는 것은 건제품 판매 금액을 어획금액으로 한다.

[Ⅲ]가 구 원 (개인경영 가구와 고용자 가구에 한하여 조사)

가. 12월 1일 현재 가구에 살고 있는 가구원의 상황에 대하여(해당번호 하나에 ○표)

가구원 전체의 상황에 대하여 조사																												가구원중 만14세 이상의 해상종사자에 한하여 지난 1년간의 실적 조사											
① 가구원의 이름	② 가구주와의 관계	③ 성별		④ 연령별 (12월 1일현재 만연령)							⑤ 어업 의존도별 (종사한일수로써)			⑥ 어업 종사형태별			⑦ 종사업수별							⑧ 종사한 주된 어업별											
		남	여	13세 이하	14 / 19	20 / 29	30 / 39	40 / 49	50 / 59	60세 이상	어업에만	어업이 주	어업이 부	자용만	자영과 고용	고용만	29일 이하	30 / 59	60 / 99	100 / 149	150 / 199	200 / 249	250일 이상	대자본어업	중소자본어업	연안어업									
																										어업	양식								
1)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2)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3)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4)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5)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6)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7)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8)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9)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10)		1	2	1	2	3	4	5	6	7	1	2	3	1	2	3	1	2	3	4	5	6	7	1	2	3	4								

주 : ① 가구원 : 가구주+부양가족(입원자, 요양자, 취학자, 출어자 포함하며 조사일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식모 머슴도 포함한다)

② 해상종사자 : 해상에서 어로 및 양식 작업에 종사한자(어선을 타고 일하는 사람과 채조, 포패, 잠수의 작업등)

③ 어업의존도별 :
㉮종사일수로 봐서 어업에만 종사했으면 "어업에만"
㉯어업에 종사한 일수가 타산업에 종사한 일수보다 많으면 "어업이 주"
㉰적으면 "어업이 부"

④ 어업종사형태별 :
㉮자기의 어업에만 종사했으면 "자영만"
㉯자기의 어업에도 종사하고 타인의 어업에도 종사 했으면 "자영과 고용"
㉰고용살이만 했으면 "고용만"

⑤ 종사한 주된 어업별 :
㉮대자본어업 : 해외어업(원양트롤,모선식저인망, 참치연승)
㉯중소자본어업 : 대형기저, 중형기저, 새우트롤, 기선선망 대형포경
㉰연안어업 : 대자본,중소자본 어업에 속하지 않는 타어업.
㉱연안양식 : 양식업

나. 신규종사 자 및 이탈자수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중에서 새로히 어업에 종사한 자와 그만 둔 사람의 수는(숫자로 기입)

새로이 어업에 종사했다.					어업을 그만 두었다.			
학교졸업 직후			다른직업에서 전환했다.		다른직업으로 전환했다.		노령또는 신병으로 그만 두었다.	사망으로 그만두었다.
국민교	중고교	전문대학	농림업	기타 산업	농림업	기타 산업		

[Ⅳ]어가구의 성격

가. 전 겸 업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전체의 수입을 통하여 (해당번호에 ○표)

1	어업이외의 수입이 없었다 (전 업)
2	어업수입이 주된 수입이었다. (제1종겸업)
3	어업 수입이 부된 수입이었다. (제2종겸업)

주 : ① 전업 : 어업이외에는 전혀 수입이 없는 가구.
② 제1종겸업 : 어업수입이 다른 직업 수입보다 많은 가구.
③ 제2종겸업 : 어업수입이 다른 직업 수입보다 적은 가구.

나. 주된 수입원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전체를 통한 가구로서의 수입원은(해당에 ○표하고 주된것에 ◎표)

자영 했다.			행상 직공	고용 되었다.		
어업	농업	기타		사무직원 교 원	어업	어업외
1	2	3	4	5	6	7

주 : ① "농업"에는 양축, 양봉, 양잠을 포함시키고 임업을 제외 한다.
② "기타"는 임업, 상업, 공업등 생산사업을 말한다.
③ "행상직공"은 목수, 미장이(뼁끼칠등) 토목공사의 인부, 직공, 행상, 무당등을 말한다
④ "어업외"는 어업을 제외한 농업, 임업, 공업등 생산사업에 고용만 된것을 말한다.

조사표 기입상의 주의

조사표의 조사항목(Ⅰ. Ⅱ. Ⅲ. Ⅳ.)중 다음 표와 같이 경영조직별로 ○표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조사항목 / 경영조직	Ⅰ	Ⅱ	Ⅲ	Ⅳ
개인경영	○	○	○	○
공동경영	○	○	×	×
회사경영	○	○	×	×
고용자가구	○	×	○	○

주 : **조사원은 :**
① 개인경영과 고용자 가구를 조사한다.
② 가구를 방문해서 개인경영도하고 공동경영이나 회사경영도 하였다 할 경우에는 조사항목[Ⅰ]항 조사대상의 구분중 개인경영에 ○표 하고 개인 경영한 부분에 대해서만 Ⅰ,Ⅱ,Ⅲ,Ⅳ항을 조사하고 공동경영에 해당되는 것은 조사하지 않는다.
③ 가구를 방문해서 개인경영은 전연 하지않고 공동경영이나 회사경영만 하였다 하면 [Ⅰ]항 조사대상 구분중 공동 경영이나 회사경영번호 2번이나 3번에 날인하고 Ⅱ,Ⅲ,Ⅳ항은 조사하지 않는다.

지도원은

① 공동경영과 회사경영에 대해서 조사한다.
② 공동경영이나 회사경영의 대표자를 조사할 때 공동경영이나 회사경영외에 개인경영한 어업이 있드라도 개인경영에 해당되는 것은 묻지말고 공동경영이나 회사경영한것만 조사하여 기재한다.

3 고용 및 급여

- ○ 생 산 종 업 원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 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 ○ 사 무 및 기 타 : 생산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
- ○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 :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주인과 그 가족을 말하며 주당 24시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함.
- ○ 월 말 종 업 원 수 : 월말 현재의 종업원수.
- ○ 월중연근무인원수 : 일별 근무 인원의 월중 누계.
- ○ 월 중 급 여 액 : 월중에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임금, 봉급, 상여금 등의 총액.

후출간격 ※	구 분		월말종업원수 (만 천 백 십 일)	월중연근무인원수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중급여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피고용자	생 산 종 업 원			
		사무및기타종업원			
		소 계			
	자영업주및무급종사자				
	합 계				

월중조업일수	일

적 요

증감요인 (10%이상의 증감이 없을 때는 해당 요인을 참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제품	〈생산〉 ○ 계절적 수요(증가, 감소) ○해외주문 (증가, 감소) ○ 시설(증설, 보수 또는 노후) ○ 원재료 구입(원활, 부진) ○ 기 타(구체적 사항을 기입)	〈출하〉 ○ 계절적 수요(증가, 감소) ○ 수 출(증가, 감소) ○ 가격(등락,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 감소) ○기 타(구체적 사항을 기입)

품 목 명	증 감 요 인	대상국또는대상처	품 목 명	증 감 요 인	대상국또는대상처

원재료	사용		재고	
	원 재 료 명	증 감 요 인	원 재 료 명	증 감 요 인

고용및급여							
종업원수	증원	명	감원	명	사유		
월중급여액	급여인상	%	능율급	%	사유		
	상여금	%	수당및기타	%			

기타	

조 사

1.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담당자기명날인	5. 지도구책임자확인
197 년 월 일	과 전화( )	㊞	㊞	㊞

심 사

중분류담당자날인	심 사 자	천공및검공자

지정통계
제 23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광공업동태조사표 (Ⅰ-A)

197 년 월분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도	구 시 군	로·동 읍 면	가 리	번지의 호

본사명 및 소재지	본 사 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도	구 시 군	로·동 읍 면	가 리	번지의 호

일반적인 유의 사항

(1)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잉크」나 「볼펜」으로 기입하시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한자로 써 주십시오.
(2)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3) 모든 수량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자리를 맞추고 단위 미만은 4사5입하여 주십시오.
(4)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제 출 기 한	매월 15일 까지
제 출 기 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경 제 기 획 원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	산업분류		종업원규모	※	유고사항	※	사업체명	(전화)

1 제 품

○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 별책 「광공업동태조사 지침」 중 「지정품목 분류표」 참조.
○ 월초(말)재고량 : 월초(말)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당월초 재고량=전월말 재고량, 당월말 재고량=익월초 재고량)
○ 생 산 량 : 월중에 직접 생산한 제품과 타사업체에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제공하여 위탁 생산한 완제품의 총량(반제품, 제공품은 제외)
○ 자 가 소 비 량 : 일차제품을 다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량 (재투입량)
○ 시 판 량 : 국내판매량, 타공장(또는 광산)에의 반출량, 견본 또는 선물로 출고된 량, 군납(국군)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완제품의 량 등의 합계를 말하며 외상판매도 포함.
○ 수 출 량 : 수출용으로, 선적된 제품량, 무역회사에 판매한 것, 주한 유엔군에 납품한 것 등의 합계를말하며 외상수출도 포함.
○ 과부족보정량 : 월중에 재해, 도난 등에 의한 결손량, 재고조사에 의한 과부족 또는 반송 등에 의한 증감을 말하며 증가는 +, 감소는 −로 표시함

품목번호	품목명	※ 유고사항	규격	단위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생산량 전월	생산량 금월	자가소비량 (재투입량)	출하량(판매량) 시판	출하량(판매량) 수출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2 원재료, 원료 및 동력

○ 원재료 번호, 원재료명, 단위 : 별책 「광공업동태조사 지침」 중 「원재료 지정품목 분류표」 참조.
○ 구분란의 국산, 수입은 해당원재료가 국산품이면 1, 수입품이면 2에 ○표로 표시(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할 때는 란을 달리 하여 기입함.)
○ 월초(말)재고량 : 제품의 월초(말) 재고량에 준함.
○ 구 입 량 : 월중에 외부로부터 구입한 량과 동일기업의 타사업체로 부터의 반입량.
○ 자 가 생 산 량 : 직접 생산한 원재료의 량
○ 사 용 량 :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량(제품란의 자가소비량 포함)
○ 과부족보정량 : 제품의 과부족 보정량에 준하며 외부에 판매했거나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로의 반출량 등을 포함함.
○ 경유, 중유, B-C유 무연탄의 사용량 중 연료나 동력으로 사용한 량은 원료 및 동력란에, 원재료로 사용한 량은 원재료란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 유고사항	규격	단위	구분 국산	구분 수입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사용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601	무연탄			M/T	1							
785	경유			kℓ	1							
786	중유			kℓ	1							
787	방카 C 유			kℓ	1							
901	전력			천KWH	1							

③ 고용 및 급여

- ○ 생 산 종 업 원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 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 ○ 사 무 및 기 타 : 생산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
- ○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 :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주인과 그 가족을 말하며 주당 24시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함.
- ○ 월 말 종 업 원 수 : 월말 현재의 종업원수.
- ○ 월중연근무인원수 : 일별 근무 인원의 월중 누계.
- ○ 월 중 급 여 액 : 월중에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임금, 봉급, 상여금 등의 총액.

추출간격 ※	구 분		월말종업원수 (만 천 백 십 일)	월중연근무인원수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중급여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피고용자	생 산 종 업 원			
		사무및기타종업원			
		소 계			
	자영업주및무급종사자				
	합 계				

월중조업일수	일

적 요

증감요인 (10%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요인을 참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생산〉 ○ 계절적 수요(증가, 감소)
○ 해외주문 (증가, 감소)
○ 시설(증설, 보수 또는 노후)
○ 원재료 구입(원활, 부진)
○ 기 타(구체적 사항을 기입)

〈출하〉 ○ 계절적 수요(증가, 감소)
○ 수 출(증가, 감소)
○ 가격(등락,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 감소)
○ 기 타(구체적 사항을 기입)

제품	품 목 명	증 감 요 인	대상국또는대상처	품 목 명	증 감 요 인	대상국또는대상처

원재료	사용 원 재 료 명	사용 증 감 요 인	재고 원 재 료 명	재고 증 감 요 인

고용및급여							
종업원수	증원	명	감원	명	사유		
월중급여액	급여인상	%	능 율 급	%	사유		
	상 여 금	%	수당및기타	%			

기타	

조 사

1.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담당자기명날인	5. 지도구책임자확인
197 년 월 일	과 전화( )	㊞	㊞	㊞

심 사

중분류담당자날인	심 사 자	천공및검공자

지정통계
제 23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광공업동태조사표 (Ⅱ-A)

197 년 월분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도	구 시 군	로·동 읍 면	가 리	번지의	호

본사명 및 소재지	본 사 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도	구 시 군	로·동 읍 면	가 리	번지의	호

일반적인 유의 사항

(1)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잉크」나 「볼펜」으로 기입하시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한자로 써 주십시오.
(2)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3) 모든 수량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자리를 맞추고 단위 미만은 4사5입하여 주십시오.
(4)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제 출 기 한	매월 15일 까지
제 출 기 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경 제 기 획 원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	산업분류		종업원규모	※	유고사항	※	사업체명	(전화 :)

1 제 품

○ 품목번호품목명 : 별책 「광공업동태조사지침」 중 「지정품목분류표」 참조.
○ 월초(말)재고액 : 월초(말)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재고액(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 기준)
○ 시 판 액 : 국내판매, 타공장에의 반출, 견본 또는 선물용, 군납,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된 제품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 수 출 액 : 수출용으로 선적, 무역회사에 판매, 주한유엔군에 납품한 제품의 총액.
○ 과부족보정액 : 월중에 재해, 도난 등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금액과 재물조사시 발견된 증감액 및 판매된 제품 중 빈송 등에 의해 발생한 증감액.
○ 완 제 품 : 직접 생산한 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의 합계액.
○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액(미수금포함)과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하여 주고 받은 수입금(미수금포함)의 합계

품목번호	품목명	※ 유고사항	단위	구분	월초재고액 (전월말제품재고액)	출하액 (판매액) 시판	출하액 (판매액) 수출	과부족보정액	월말재고액	※ 생산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			천원	완제품						
				수탁제조및수리수입액						
				합계						
—			천원	완제품						
				수탁제조및수리수입액						
				합계						
—			천원	완제품						
				수탁제조및수리수입액						
				합계						
—			천원	완제품						
				수탁제조및수리수입액						
				합계						
—			천원	완제품						
				수탁제조및수리수입액						
				합계						
—			천원	완제품						
				수탁제조및수리수입액						
				합계						

2 원재료, 연료 및 동력

○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단위 : 별책 「광공업동태조사 지침」 중 「원재료 지정 품목 분류표」 참조.
○ 구분란의 국산, 수입은 해당원재료가 국산품이면 1, 수입품이면 2에 ○로 표시.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할 때는 란을 달리 하여 기입함)
○ 월초(말)재고량 : 제품이 월초(말) 재고량에 준함.
○ 구 입 량 : 월중에 외부로부터 구입한 량과 동일회업의 타사업체로 부터의 반입량.
○ 자가생산량 : 직접 생산한 원재료의 량.
○ 사 용 량 :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량(제품란의 자가소비량도 여기에 포함됨)
○ 과부족보정량 : 제품의 과부족 보정량에 준하며, 외부에 판매했거나,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로의 반출량 등을 포함함.
○ 경유, 중유, 방카C유, 무연탄의 사용량 중 연료나 동력으로 사용한 량은 연료 및 동력란에 원재료로 사용한량은 원재료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 유고사항	규격	단위	구분 국산	구분 수입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사용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2						
					1	2						
					1	2						
					1	2						
					1	2						
					1	2						
					1	2						
601	무연탄			M/T	1							
785	경유			kℓ	1							
786	중유			kℓ	1							
787	방카C유			kℓ	1							
901	전력			천KWH	1							

③ 고용 및 급여

- ○ 생 산 종 업 원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현장 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종업원.
- ○ 사 무 및 기 타 : 생산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종업원
- ○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 : 매월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주인과 그 가족을 말하며 주당 24시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함.
- ○ 월 말 종 업 원 수 : 월말 현재의 종업원수.
- ○ 월중연근무인원수 : 일별 근무 인원의 월중 누계.
- ○ 월 중 급 여 액 : 월중에 피고용자에게 지급한 임금, 봉급, 상여금 등의 총액.

추출간격 ※	구 분		월말종업원수 (만 천 백 십 일)	월중연근무인원수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중급여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피고용자	생 산 종 업 원			
		사무및기타종업원			
		소 계			
	자영업주및무급종사자				
	합 계				

월중조업일수	일

적 요

증감요인 (10%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요인을 참조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저듬

〈생산〉 ○ 계절적 수요(증가, 감소)
○ 해외주문 (증가, 감소)
○ 시설(증설, 보수 또는 노후)
○ 원재료 구입(원활, 부진)
○ 기 타(구체적 사항을 기입)

〈출하〉 ○ 계절적 수요(증가, 감소)
○ 수 출(증가, 감소)
○ 가격(등락,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 감소)
○ 기 타(구체적 사항을 기입)

품 목 명	증 감 요 인	대상국또는대상처	품 목 명	증 감 요 인	대상국또는대상처

원재료

사용 원재료명	사용 증감요인	재고 원재료명	재고 증감요인

고용및급여

종업원수	증원	명	감원	명	사유	
월중급여액	급여인상	%	능율급	%	사유	
	상여금	%	수당및기타	%		

기타	

조 사

1.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담당자기명날인	5. 지도구책임자확인
197 년 월 일	과 전화( )	㊞	㊞	㊞

심 사

중분류담당자날인	심 사 자	천공및검공자

지정통계
제 23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광공업동태조사표 (Ⅱ-B)

197 년 월분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도	구 시 군	로·동 읍 면	가 리	번지의 호

본사명 및 소재지	본 사 명				
	대표자명			전화	국 번
	시 도	구 시 군	로·동 읍 면	가 리	번지의 호

일반적인 유의 사항

(1)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의 「잉크」나 「볼펜」으로 기입하시고 사업체명, 대표자명 등은 한자로 써 주십시오.
(2)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3) 모든 수량은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자리를 맞추고 단위 미만은 4사5입하여 주십시오.
(4)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제 출 기 한	매월 15일 까지
제 출 기 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경 제 기 획 원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	산업분류		종업원규모	※	유고사항	※	사업체명	전화 :

1 제 품

○ 월초(말)재고액 : 월초(말)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재고액(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 기준)
○ 시 판 액 : 국내판매, 타공장에의 반출, 견본 또는 선물용, 군납, 사무용또는 급여용으로 출고된 제품을 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 수 출 액 : 수출용으로 선적, 무역회사에 판매, 주한유엔군에 납품한 제품의 총액.

○ 과부족보정액 : 월중에 재해, 도난 등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금액과 재물조사시 발견된 증감액 및 판매된 제품 중 반송 등에 의해 발생한 증감액.
○ 완 제 품 : 직접 생산한 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의 합계액.
○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수입액(미수금포함)과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하여주고 받은 수입금(미수금포함)의 합계

품목번호	품목명	※ 유고사항	단위	월초제품재고액 (전월말제품재고액)					출하액 (판매액) 시판					출하액 (판매액) 수출					과부족보정액			월말제품재고액					※ 생산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억	천만	백만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8 2 — 1	신경계용약		백만원																												
1 8 2 — 2	해열진통제		백만원																												
1 8 2 — 3	소화기계용약		백만원																												
1 8 2 — 4	비타민제		백만원																												
1 8 2 — 5	홀몬제		백만원																												
1 8 2 — 6	자양강장제		백만원																												
1 8 2 — 7	혈액및체액용약		백만원																												
1 8 2 — 8	항생물질제		백만원																												
1 8 2 — 9	외피용약		백만원																												
1 8 2 — 10	기타의약품		백만원																												
1 8 2	계		백만원																												

2 원재료, 연료 및 동력

○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단위 : 별책「광공업동태조사 지침」중「원재료 지정 품목 분류표」참조.
○ 구분란의 국산, 수입은 해당원재료가 국산품이면 1, 수입품이면 2에○로 표시(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할 때는 란을 달리하여 기입함)
○ 월초(말)재고량 : 제품의 월초(말)재고량에 준함.
○ 구 입 량 : 월중에 외부로부터 구입한 량과 동일기업의 타사업체로 부터의 반입량

○ 자가생산량 : 직접 생산한 원재료의 량.
○ 사 용 량 :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량(제품량의 자가소비량도 여기에 포함됨)
○ 과부족보정량 : 제품의 과부족 보정량에 준하며, 외부에 판매했거나 동일기업내의 타 사업체로의 반출량 등을 포함함.
○ 경유, 중유, 방카C유, 무연탄의 사용량 중 연료나 동력으로 사용한 량은 연료 및 동력란에 원재료로 사용한 량은 원재료난에 기입하여 주십시요.

원재료번호	원재료명	※ 유고사항	규격	단위	구분 국산	구분 수입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사용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십만	만	천	백	십	일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6 0 1	무연탄			M/T	1																																											
7 8 5	경유			kℓ	1																																											
7 8 6	중유			kℓ	1																																											
7 8 7	방카C유			kℓ	1																																											
9 0 1	전력			천KWH	1																																											

지정통계
제 23 호

광공업생산자판매가격조사표(Ⅲ)

197 년 월분

1.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 됩니다.
2. 이 조사표는 늦어도 매월 15일까지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에 필착토록 하여 주십시오.

조사구및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유고사항
—		※

구 분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체				
본 사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및 규 격	단위	전월평균판매가격							금월평균판매가격						
				만원	천원	백원	십원	원	십전	전	만원	천원	백원	십원	원	십전	전

적 요 : 전월과 비교하여 가격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그 요인을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기입요령

1. 각 품목별로 지정된 품질 및 규격에 대하여 지정된 단위당 가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품질 및 규격 그리고 단위가 지정된것과 일치하지 아니할때에는 지정된 것으로 환산하여 기입하되 환산이 곤란할때에는 귀사업체에서 사용하는것으로 상세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2. 평균 판매가격은 용기, 포장비, 물품세, 주세 및 유류세를 포함한 공장인도(광산은 최근역도) 가격으로서 월중 평균 판매가격 즉 지정품목 규격에 대한 그 월중의 일별 판대가격의 월 평균 가격으로 나눈것을 말합니다.
3. 수출품목일 때에는 F.O.B 가격으로 하되 원, 전을 지우고 ○○$ ○○C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4. 기타 상세한것은 조사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조 사

1. 작성년월일	2. 응답자소속	3. 응답자성명	4. 조사원기명날인	5. 지도구책임자확인
197 년 월 일	부 과 전화( )	㊞	㊞	㊞

보고서식 제 1 호
지정통계 제 24 호

원양어업생산고보고서 I (　　월분)

발 신:
회 사 명:
대 표 자:
작 성 자:
전화번호:

분류기호:
수 신:

단 위 : 톤

선명	톤급	어업명 (어법)	조업해역	출항날자	입항날자	순조업일수	중량	판매구분	어종별 소계	참다랑이 Bluefin	황다랑이 Yellowfin	날개다랑이 Albacore	눈다랑이 Bigeye	가다랑이 Skipjack	기타다랑이 Other (Tuna)	황새치 Sword fish	녹새치 Bule marlin	청새치 Spear fish	백새치 White marlin	돛새치 Sailfish	기타새치류 Other (Marlin)	상어류 Shark			기타 Other
소계																									
kg 당 평균단가								수출 ($)																	
								국판 (원)																	

비 고 : 어 업 명: 연승 또는 채낚기 어업등을 표시한다.
조업해역: 조업해역(태평양. 대서양. 인도양등)과 F.A.O 해구번호를 기재한다.
중 량: R.W(Round weight: 원형중량)
G.G(Gilled and Gutted.: 아가미, 내장 제거하고 지느러미를 처리한무게)
D.W.T(Dressed with Tail: 두부, 내장 제거하고 지느러미를 처리한무게)
} 등의 약호를 기재한다

판매구분: 수출또는 국내판매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기 타: 어종명중 기타난(기타다랑이, 기타새치류, 기타)에는 반드시 그어종명칭을 표시하여 기재할것.
kg당 평균단가는 해역별로 어종별 평균 단가를 기재한다.

보고서식 제1—1호
지정통계 제 24 호

원양어업생산고보고서 II (　　월분)

발 신:
회 사 명:
대 표 자: ㊞
작 성 자: ㊞
전화번호:

분류기호:
수 신:

단 위 : 톤

선명	톤급	어업명 (어법)	조업해역	출항날자	입항날자	순조업일수	중량	판매구분	어종별 소계	명태 Allaska pollack	대구 Cod	은대구 Black cod	청어 Herring	가자미류 Flounder	돔류 Sea bream	적어 Pacific perch	가오리류 Skate	서대류 Sole	넙치류 Halibut	임연수어 Atka Fish	오징어류 Sguid	문어류 Octopus	새우류 Shrimp	게류 Crab		기타 Other

FAO 해구별 어획량 [I] (월분)

보고서식 제1-2호
지정통계 제24호
수신 : 농수산부장관
참조 : 수산통계담당관

197 . . .
발 신 : 인
작성자 직성명 : 인
(단위 : %)

구분 해역별	FAO 해구별	어종명															
		계	참다랑이	황다랑이	날개다랑이	눈다랑이	가다랑이	기타다랑이	황새치	녹새치	청새치	백새치	돛새치	기타새치류	상어류		기타
태평양	61(태평양북서부)																
	67(〃 중동부)																
	71(〃 중서부)																
	77(〃 중동부)																
	81(〃 서남부)																
	87(〃 동남부)																
	88(〃 남극부)																
	소계																
	누계																
대서양	21(대서양서북부)																
	27(〃 동북부)																
	31(〃 중서부)																
	34(〃 중동부)																
	37(지중해·흑해)																
	41(대서양서남부)																
	47(〃 동남부)																
	48(〃 남극부)																
	소계																
	누계																
인도양	51(서인도양)																
	57(동 〃)																
	58(인도양남극부)																
	소계																
	누계																

FAO 해구별 어획량 (II) (월분)

보고서식제1-3호
지정통계제24호
수신 : 농수산부장관
참조 : 수산통계 담당관

197 . . .
발 신 인
작성자 직.성명 : 인
(단위 : %)

구분 해양별	FAO 해구별	어종별														
		계	가자미류	넙치류	서대류	새꼬리민태	민대구	은대구	붉은대구	기타대구	명태	다금바리	셋돔	은셋돔	물렁돔	기타들
태평양	61(태평양북서부)															
	67(〃 중동부)															
	71(〃 중서부)															
	77(〃 중동부)															
	81(〃 서남부)															
	87(〃 동남부)															
	88(〃 남극부)															
	소계															
	누계															
대서양	21(대서양서북부)															
	27(〃 동북부)															
	31(〃 중서부)															
	34(〃 중동부)															
	37(지중해흑해)															
	41(대서양서남부)															
	47(〃 동남부)															
	48(〃 남극부)															
	소계															
	누계															
인도양	51(서인도양)															
	51(동 〃)															
	58(인도양남극부)															
	소계															
	누계															

원양어업해역별어업별어획량〔1〕(월분)

보고서식제 1 - 4 호
지정통계제 24 호
수신 : 농수산부장관
참조 : 수산통계담당

197 . . .
발신 인
작성자 직·성명 인

(단위 : M/T)

구분 해역별	어법	계	어종명													
			참다랭이	황다랭이	날개다랭이	눈다랭이	가다랭이	기타다랭이	황새치	녹새치	청새치	백새치	돗새치	기타새치류	상어류	기타
태평양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대서양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인도양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계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구분 해양별	FAO 해구별	어종별															
		붉은메기	붕장어	적어	청어	전쟁어	통치	은갈치	방어류	임연수어	상어류	가오리류	새우류	게류	오징어류	문어류	기타
태평양	61 (태평양북서부)																
	67 (〃 중동부)																
	71 (〃 중서부)																
	77 (〃 중동부)																
	81 (〃 서남부)																
	87 (〃 동남부)																
	88 (〃 남극부)																
	소계																
	누계																
대서양	21 (대서양서북부)																
	27 (〃 동북부)																
	31 (〃 중서부)																
	34 (〃 중동부)																
	37 (지중해·흑해)																
	41 (대서양서남부)																
	47 (〃 동남부)																
	48 (〃 남극부)																
	소계																
	누계																
인도양	51 (서인도양)																
	51 (동 〃)																
	58 (인도양남극부)																
	소계																
	누계																

원양어업해역별어업별어획량〔II〕(월분)

보고서식제 1-5호
지정통계제 24호
수신 : 농수산부장관
참조 : 수산통계담당관

197 . . .
발 신: 인
작성자 직·성명: 인
(단위 : %)

구분 / 해역별	어법	계	어종명																		
			가자미류	넙치류	서대류	세꼬리민태	민대구	은대구	붉은대구	기타대구	명태	다금바리	셋돔	은셋돔	물렁돔	기타돔	붉은메기	방장어	적어	청어	전갱이
태평양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대서양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인도양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계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단위 : %

구분 / 해역별	어법		어종명																		
														제품가공							
			꽁치	은삼치	방어류	임연수어	상어류	가오리류	새우류	게류	오징어류	문어류	기타	필레트	드레스	어분	어유	명란			기타
태평양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대서양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인도양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계	참치연승																				
	채낚기																				
	트롤																				
	모선식																				
	기타																				
	소계																				
	누계																				

보고서식 제2호·지정통계 제23호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 ○ ○

197 . . .

일반해면어업생산고조사보고(월분)

단위 : kg 발신 ㊞

어업별 \ 어종별		누계 (1)	총계 (2)	어류 소계 (3)	가자미류 (4)	넙치류 (5)	서대류 (6)	대구 (7)	노가리(소형명태) (8)	명태 (9)	참돔 (10)	감성돔 (11)	기타돔류 (12)	병어 (13)	민어 (14)	참조기 (15)	강달이류 (16)
누계																	
합계																	
저인망	대형트롤 ①																
	동해구트롤 ②																
	대형기선저인망(2수인) ③																
	대형기선저인망(1수인) ④																
	중형기선저인망(2수인) ⑤																
	중형기선저인망(1수인) ⑥																
	기선형망 ⑦																
	범선형망 ⑧																
	범선저인망 ⑨																
선망	대형선망 ⑩																
	소형선망 ⑪																
	범선선망 ⑫																
부망	근해안강망 ⑬																
	연안안강망 ⑭																
	분기초망 ⑮																
	기타부망 ⑯																
유자망	근해유자망 ⑰																
	연안유자망 ⑱																
인망	기선권현망 ⑲																
낚시	근해채낚기 ⑳																
	연안채낚기 ㉑																
연승	근해연승 ㉒																
	연안연승 ㉓																
통발	근해통발 ㉔																
	연안통발 ㉕																
정치망	대형정치망 ㉖																
	소형정치망 ㉗																
잠수기	잠수기 ㉘																
	해조채취 ㉙																
제1종공동	포패(채조) ㉚																
제2종공동	휘리망 ㉛																
	지인망 ㉜																
	선인망 ㉝																
제3종공동	제3종공동채포어구 ㉞																
기타	기타어업 ㉟																

보고서식 제2호·지정통계 제24호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 ○ ○

197 . . .

일반해면어업생산고조사보고(월분)

단위 : kg 발신 ㊞

어업별 \ 어종별		성대류 (17)	갈치 (18)	도루묵 (19)	농어 (20)	능성어 (21)	눈볼대 (22)	갯장어 (23)	붕장어 (24)	망둥어류 (25)	매퉁어류 (26)	양태 (27)	볼락 (28)	양미리 (29)	숭어류 (30)	뱅어류 (31)	복어류 (32)
누계																	
합계																	
저인망	대형트롤 ①																
	동해구트롤 ②																
	대형기선저인망(2수인) ③																
	대형기선저인망(1수인) ④																
	중형기선저인망(2수인) ⑤																
	중형기선저인망(1수인) ⑥																
	기선형망 ⑦																
	범선형망 ⑧																
	범선저인망 ⑨																
선망	대형선망 ⑩																
	소형선망 ⑪																
	범선선망 ⑫																
부망	근해안강망 ⑬																
	연안안강망 ⑭																
	분기초망 ⑮																
	기타부망 ⑯																
유자망	근해유자망 ⑰																
	연안유자망 ⑱																
인망	기선권현망 ⑲																
낚시	근해채낚기 ⑳																
	연안채낚기 ㉑																
연승	근해연승 ㉒																
	연안연승 ㉓																
통발	근해통발 ㉔																
	연안통발 ㉕																
정치망	대형정치망 ㉖																
	소형정치망 ㉗																
잠수기	잠수기 ㉘																
	해조채취 ㉙																
제1종공동	포패(채조) ㉚																
제2종공동	휘리망 ㉛																
	지인망 ㉜																
	선인망 ㉝																
제3종공동	제3종공동채포어구 ㉞																
기타	기타어업 ㉟																

보고서식 제2호 • 지정통계 제24호

분류기호 :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일반해면어업생산고조사보고(월분)** 단위 : kg 197 . . . 발신 ㊞

어업별 \ 어종별		멸치류 (33)	정어리 (34)	전 어 (35)	청 어 (36)	뱀댕이 (37)	고등어류 (38)	전갱이류 (39)	삼치류 (40)	꽁 치 (41)	학꽁치 (42)	방 어 (43)	준 치 (44)	임연수어 (45)	다랑어류 (46)	송어류 (47)	산어류 (48)
누계																	
합계																	
저인망	대형트롤 ①																
	동해구트롤 ②																
	대형기선저인망(2수인) ③																
	대형기선저인망(1수인) ④																
	중형기선저인망(2수인) ⑤																
	중형기선저인망(1수인) ⑥																
	기선형망 ⑦																
	범선형망 ⑧																
	범선저인망 ⑨																
선망	대형선망 ⑩																
	소형선망 ⑪																
	범선선망 ⑫																
부망	근해안강망 ⑬																
	연안안강망 ⑭																
	분기초망 ⑮																
	기타부망 ⑯																
유자망	근해유자망 ⑰																
	연안유자망 ⑱																
인망	기선권현망 ⑲																
낚시	근해채낚기 ⑳																
	연안채낚기 ㉑																
연승	근해연승 ㉒																
	연안연승 ㉓																
통발	근해통발 ㉔																
	연안통발 ㉕																
정치망	대형정치망 ㉖																
	소형정치망 ㉗																
잠수기	잠수기 ㉘																
	해조채취 ㉙																
제1종공동	포패(채조) ㉚																
제2종공동	휘리망 ㉛																
	지인망 ㉜																
	선인망 ㉝																
제3종공동	제3종공동채포어구 ㉞																
기타	기타어업 ㉟																

보고서식 제2호 • 지정통계 제24호

분류기호 : ○ ○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일반해면어업생산고조사보고(월분)** 단위 : kg 197 . 발신 ㊞

어업별 \ 어종별		가오리류 (49)	보리멸 (50)	쥐치 (51)	아구 (52)		기타어류 (53)	소계 (54)	대하 (55)	중하 (56)	보리새우 (57)	젓새우 (58)	닭새우 (59)	기타새우류 (60)	꽃게 (61)	왕게 (62)	기타 (63)
누계																	
합계																	
저인망	대형트롤 ①																
	동해구트롤 ②																
	대형기선저인망(2수인) ③																
	대형기선저인망(1수인) ④																
	중형기선저인망(2수인) ⑤																
	중형기선저인망(1수인) ⑥																
	기선형망 ⑦																
	범선형망 ⑧																
	범선저인망 ⑨																
선망	대형선망 ⑩																
	소형선망 ⑪																
	범선선망 ⑫																
부망	근해안강망 ⑬																
	연안안강망 ⑭																
	분기초망 ⑮																
	기타부망 ⑯																
유자망	근해유자망 ⑰																
	연안유자망 ⑱																
인망	기선권현망 ⑲																
낚시	근해채낚기 ⑳																
	연안채낚기 ㉑																
연승	근해연승 ㉒																
	연안연승 ㉓																
통발	근해통발 ㉔																
	연안통발 ㉕																
정치망	대형정치망 ㉖																
	소형정치망 ㉗																
잠수기	잠수기 ㉘																
	해조채취 ㉙																
제1종공동	포패(채조) ㉚																
제2종공동	휘리망 ㉛																
	지인망 ㉜																
	선인망 ㉝																
제3종공동	제3종공동채포어구 ㉞																
기타	기타어업 ㉟																

보고서식 제2호·지정통계 제24호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 ○ ○

197 . . .

일반해면어업생산고조사보고(월분)

단위 : kg

발 신 ㊞

어업별 \ 어종별		연체동물류															
		소 계 (64)	패류								동 죽 (73)	피조개 (74)	새조개 (75)	개량조개(해방조개) (76)	홍 합 (77)	꼬막류 (78)	키조개 (79)
			패류소계 (65)	전복류 (66)	소라고둥 (67)	골뱅이 (68)	굴 류 (69)	반지락 (70)	백합류 (71)	가무락(까락조개) (72)							
누 계																	
합 계																	
저인망	대형트롤 ①																
	동해구트롤 ②																
	대형기선저인망(2수인) ③																
	대형기선저인망(1수인) ④																
	중형기선저인망(2수인) ⑤																
	중형기선저인망(1수인) ⑥																
	기선형망 ⑦																
	범선형망 ⑧																
	범선저인망 ⑨																
선망	대형선망 ⑩																
	소형선망 ⑪																
	범선선망 ⑫																
부망	근해안강망 ⑬																
	연안안강망 ⑭																
	분기초망 ⑮																
	기타부망 ⑯																
유자망	근해유자망 ⑰																
	연안유자망 ⑱																
인망	기선권현망 ⑲																
낚시	근해채낚기 ⑳																
	연안채낚기 ㉑																
연승	근해연승 ㉒																
	연안연승 ㉓																
통발	근해통발 ㉔																
	연안통발 ㉕																
정치망	대형정치망 ㉖																
	소형정치망 ㉗																
잠수기	잠수기 ㉘																
	해조채취 ㉙																
제1종공동	포 획(채 조) ㉚																
제2종공동	위 리 망 ㉛																
	저 인 망 ㉜																
	선 인 망 ㉝																
제3종공동	제3종공동채포어구 ㉞																
기 타	기 타 어 업 ㉟																

보고서식 제2호·지정통계 제24호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 ○ ○

197 . . .

일반해면어업생산고조사보고(월분)

단위 : kg

발 신 ㊞

어업별 \ 어종별		연체동물류										기타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
		패류				기타연체동물											
		가리비 (80)	맛 류 (81)		기 타 (82)	기타연체동물소계 (83)	오징어 (84)	갑오징어 (85)	문 어 (86)	쪼끄미 (87)	기 타 (88)	소 계 (89)	해 삼 (90)	성 게 (91)	갯지렁이 (92)	우렁쉥이 (93)	기타수산동물 (94)
누 계																	
합 계																	
저인망	대형트롤 ①																
	동해구트롤 ②																
	대형기선저인망(2수인) ③																
	대형기선저인망(1수인) ④																
	중형기선저인망(2수인) ⑤																
	중형기선저인망(1수인) ⑥																
	기선형망 ⑦																
	범선형망 ⑧																
	범선저인망 ⑨																
선망	대형선망 ⑩																
	소형선망 ⑪																
	범선선망 ⑫																
부망	근해안강망 ⑬																
	연안안강망 ⑭																
	분기초망 ⑮																
	기타부망 ⑯																
유자망	근해유자망 ⑰																
	연안유자망 ⑱																
인망	기선권현망 ⑲																
낚시	근해채낚기 ⑳																
	연안채낚기 ㉑																
연승	근해연승 ㉒																
	연안연승 ㉓																
통발	근해통발 ㉔																
	연안통발 ㉕																
정치망	대형정치망 ㉖																
	소형정치망 ㉗																
잠수기	잠수기 ㉘																
	해조채취 ㉙																
제1종공동	포 획(채 조) ㉚																
제2종공동	위 리 망 ㉛																
	저 인 망 ㉜																
	선 인 망 ㉝																
제3종공동	제3종공동채포어구 ㉞																
기 타	기 타 어 업 ㉟																

보고서식 제2호 · 지정통계 제24호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 ○ ○

197 . . .

일반해면어업생산고조사보고(월분)

단위 : kg 발신 ㊞

어종별 / 어업별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기타수산동물
	제1류			기타연체동물												
	가리비 (80)	맛 류 (81)		기 타 (82)	기타연체동물소계 (83)	오징어 (84)	갑오징어 (85)	문 어 (86)	쪼끄미 (87)	기 타 (88)	소 계 (89)	해 삼 (90)	성 게 (91)	갯지렁이 (92)	우렁쉥이 (93)	기타수산동물 (94)
누계																
합계																
저인망 대형트롤 ①																
저인망 동해구트롤 ②																
저인망 대형기선저인망(2수인) ③																
저인망 대형기선저인망(1수인) ④																
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2수인) ⑤																
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1수인) ⑥																
저인망 기선형망 ⑦																
저인망 범선형망 ⑧																
저인망 범선저인망 ⑨																
선망 대형선망 ⑩																
선망 소형선망 ⑪																
선망 범선선망 ⑫																
부망 근해안강망 ⑬																
부망 연안안강망 ⑭																
부망 부기초망 ⑮																
부망 기타부망 ⑯																
유자망 근해유자망 ⑰																
유자망 연안유자망 ⑱																
인망 기선권현망 ⑲																
낚시 근해채낚기 ⑳																
낚시 연안채낚기 ㉑																
연승 근해연승 ㉒																
연승 연안연승 ㉓																
통발 근해통발 ㉔																
통발 연안통발 ㉕																
정치망 대형정치망 ㉖																
정치망 소형정치망 ㉗																
잠수기 잠수기 ㉘																
잠수기 해조채취 ㉙																
제1종공동 토채(세조) ㉚																
제2종공동 퇴인망 ㉛																
제2종공동 지인망 ㉜																
제2종공동 선인망 ㉝																
제3종공동 제3종공동포여구 ㉞																
기타 기타어업 ㉟																

보고서식제 2-1 호
지정통계제 24 호

197 . . .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발신: ㊞

천해 양식업 생산고 조사보고(월분)

단위 kg

구분 / 어종별		생산량 당월	생산량 누계
총계			
어류	소계		
	방어 ①		
	복어 ②		
	기타 ③		
갑각류	소계		
	대하 ④		
	보리새우 ⑤		
	꽃게 ⑥		
	기타 ⑦		
패류	소계		
	굴 수하식 ⑧		
	굴 투석식 ⑨		
	백합 ⑩		
	반지락 ⑪		
	꼬막 ⑫		
	가무락 ⑬		
	홍합 ⑭		
	개량조개 ⑮		
	새꼬막 ⑯		
	피조개 ⑰		
	전복 ⑱		
	동죽 ⑲		
	기타 ⑳		
해조류	소계		
	김 ㉑		
	미역 ㉒		
	다시마 ㉓		
	우무가사리 ㉔		
	기타 ㉕		

비고

1. 수협 작성분은 계통판매량을 기재하고 어촌계 작성분은 비계통판매량을 기재하여 보고한다
2. 도농수산 통계사무소장이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때의 수량단위는 kg으로한다
3. 어종별 수확량은 양육당시의 생중량으로 계산하되 패류는 각부중량으로한다

(예 : 굴의각부중량 = $\frac{\text{박신중량}}{0.15}$)

4. 기타난에는 반드시 그 기타어종 명칭을 표시할 것

보고서식제 4 호
지정통계제 24 호

197 . . .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발신: ㊞

내수면 어업 생산고 조사보고

단위:kg

구분 / 어종별		어업 당월	어업 누계	양식 당월	양식 누계	kg당 연평균가격
총계						
어류	소계					
	숭어 ①					
	부루길 ②					
	산천어 ③					
	금잉어 ④					
	비단잉어 ⑤					
	잉어 ⑥					
	금붕어 ⑦					
	붕어 ⑧					
	송어류 ⑨					
	미꾸리 ⑩					
	뱀장어 ⑪					
	연어류 ⑫					
	은어 ⑬					
	웅어 ⑭					
	쏘가리 ⑮					
	빙어 ⑯					
	가물치 ⑰					
	메기 ⑱					
	송어 ⑲					
	황어 ⑳					
	기타 ㉑					
패류	소계					
	재첩 ㉒					
	대칭조개 ㉓					
	기타 ㉔					
조류	소계					
	순채 ㉕					
	기타 ㉖					
갑각류	소계					
	새우 ㉗					
	게류 ㉘					
	기타 ㉙					
기타수산동물	소계					
	개구리 ㉚					
	식용개구리 ㉛					
	기타 ㉜					

비고

어업: 내수면에서 동식물을 어획하는 어업

양식: 내수면에서양식또는 축양하는어업

보고서식 제 3 호
지정통계 제 24 호

수산물 비계통판매량 보고서(월분)

소속어협명 _____

어촌계명 _____

작 성 자 _____ ㊞

알 리 는 말 씀

1. 이 조사표에 적어넣는 내용은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안심하시고 사실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조사표는 정확한 수산물의 생산량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기재요령을 참조하시어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

농 수 산 부

수산물 비계통판매량 보고서(월분)

구분 / 분류	어업별	어로 종류명칭	어로 수량 kg	양식 종류명칭	양식 수량 kg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합계					

비고

어업별종류

저인망	근해트롤	①
	근해새우트롤	②
	원양기선 저인망 (2수인)	③
	원양기선 저인망 (1수인)	④
	근해기선 저인망 (2수인)	⑤
	근해기선 저인망 (1수인)	⑥
	범선저인망	⑦
	범선형저인망	⑧
	기선형저인망	⑨
선망	제1종선망 (기선선망)	⑩
	제2종선망	⑪
부망	제1종안강망(대형안강망)	⑫
	제2종안강망(소형안강망)	⑬
	기타부망	⑭
유자망	유자망	⑮
인망	제1종선인망 (권현망)	⑯
	제2종선인망	⑰
낚시	오징어 일본조 및 채낚기	⑱
	기타일본조	⑲
연승	연승	⑳
통발	통발	㉑
정치망	대형정치망	㉒
	소형정치망	㉓
잠수기	잠수기	㉔
	해조잠수기	㉕
1종공동	포패·채조	㉖
2종공동	부망	㉗
	저인망	㉘
	선인망	㉙
3종공동	3종공동체포어구	㉚
기타	기타어업	㉛

용어설명 :
1. 갑각류: 새우류, 가재류, 게류등을 포함한다.
2. 연체동물: 패류를 제외한 오징어류, 문어류등을 포함한다.
3. 기타수산동물: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을 제외한 수산동물 (예: 성게, 해삼, 우렁쉥이 갯지렁이등)

기요령제 :
1 수산물 비계통판매량이란 어획물중 각종 수협산하 계통조직을 통하여 계통판매되지아니한 모든 수산물을 말한다. (예 : 자가소비, 가공, 개인판매등)
2. 어업별란에는 해당하는 어업의 종류를 비고란에서 그 번호를 택하여 기재한다.
3. 어로란에는 어선어업 또는 포패채취에 의한 어획물을, 양식란에는 양식에 의한 어획물을 기재한다.
4. 종류 명칭란에는 구체적으로 그 어종명을 기재한다.
5. 수량은 생중량으로 기재한다. (패류는 패각포함)

보고서식제 5 호
지정통계제 24 호

근해포경수산업협동조합

포경 :

수신 :

발신 :

197 . . .

제목 : 근해포경어업 생산고 조사보고 (월분)

구분 / 품종별	당월 두수	당월 수량	당월 금액	누계 두수	누계 수량	누계 금액	조업위치
부라이드고래							
계							
돌고래							
밍크							
기타고래							

단위 : 두수 : 마리
수량 : 瓩
금액 : 천원

기타 고래의 경우 그 고래명칭을 기재 명시할 것.
조업위치는 해역 및 위도를 표시할 것.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이외는 절대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25호

78년어업기본통계조사

조 사 표

농 수 산 부

가구주 성명	㊞
제1차출어업조사 조사구번호	

주소	시도	구시군	동읍면
	리	번지	호

제출구분	어업 경영자 가구			어업 고용자 가구	단체사업체
	동력선 사용	무동력선 사용	어선 미사용		
기본통계조사 일련번호					
기본통계조사 조사결과					

검토자	사무소	㊞
	출장소	㊞
조사원 성명		㊞

1. 가구의 형태

어업경영자가구	동력선을 사용했읍니까?	1
	무동력선을 사용 했읍니까?	2
	어선을 사용하지 않았읍니까?	3
어업고용자가구 (어업노동자로서 고용살이만 한 가구)		4

주 : 1번은 지난 1년간에 동력선(발동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한 가구에 ○표한다.
이때 2.3.4번과 겸한 사람이 있어도 1번에만 ○ 그한다.
2번은 동력선을 전연사용하지 않고 무동력선만 사용한 가구
3번은 어선은 전연 사용하지 않고 직접자기 어업에 종사한 가구
4번은 직접자기어업을 경영한 자가 한사람도 없고 어업에 고용살이 한자가 있는 가구

2. 양식에 종사한 형태

어업경영자	김 양 식	1
	굴 양 식	2
	미 역 양 식	3
	패 류 양 식	4
	기 타 양 식	5

주 : 1항 "가구형태"중 어업 경영자 가구에 ○표된 가구중에서 양식에 종사한 형태를 물어 해당란에 ○표한다

3. 어가구의 성격

(1) 전경업별 · 지난 1년간에 가구원 전체의 수입은 (해당 ○ 표)

어업 이외에는 수입이 없다	1
어업이 주된 수입이었다	2
어업이 부된 수입이었다	3

주 : 1. 어업이외에는 전혀 수입이 없는가구
2. 어업수입이 다른직업 수입보다 많은 가구
3. 어업수입이 다른직업 수입보다 적은 가구

(2) 주된 수입원

가구의수입원에있어주된것에◎표 부된것에○표한다

자영			행상 직공	고용		
어업	농업	기타		사무원 직원	어업	어업외
1	2	3	4	5	6	7

주 : 1. "농업"에는 양축, 양봉, 양잠을 포함시키고 임업은 제외한다.
2. "기타"는 임업, 상업, 공업등 생산 사업을 말한다.
3. "행상직공"은 목수 미장이(페인트칠등) 토목공사의 인부, 직공, 행상, 무당등을 말한다.
4. "어업외"는 어업을 제외한 농업, 임업 공업등 생산사업에 고용만된것을 말한다.

4. 가 구 원

12월 1일 현재 가구에 살고있는 가구원에 대해서 해당번호 하나에 ○표

→ 만 14세 이상만 조사 한다 ←

① 가구원의 이름	② 가구주와의관계	③ 성별 남	③ 성별 여	④ 연령별 (12월 1일현재만연령) 9세이하	10~13	14~19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⑤ 어업의존도별 (종사일수로써) 어업만	어업이주	어업이부	⑥ 종사한주된 어업별 대자본어업	중소자본어업	연안어업	양식	⑦ 최종학력 국졸	중졸	고졸	전문·초급대졸	대졸이상	무학 글을단다	무학 글을모른다
1)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2)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3)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4)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5)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6)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7)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8)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9)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10)		1	2	1	2	3	4	5	6	7	8	1	2	3	1	2	3	4	1	2	3	4	5	6	7

주 : ① 가구원 : 가구주나부양가족(입원자, 요양자, 출어자 포함하며 현재 같이 살고있는 식모 머슴도 포함)
② 어업의존도별 : 가. 종사일수로 보아서 어업에 종사 했으면 "어업만"
나. 어업에 종사한 일수가 타산업에 종사한 일수보다 많으면 "어업이주"
다. 적으면 "어업이부"
③ 종사한 주된 어업별 : 가. 대자본어업, 해외어업, (원양트롤, 모선식저인망, 참치연승, 기타원양어업)
나. 중소자본어업 :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포경어업등(소형선망제외)
다. 연 안 어 업 : 대자본어업 중소자본어업에 해당되지 않는 어업을 어업, 양식별로 구분하여 ○표한다.

5. 어선(경영자가구에 한해서 조사)

(1) 78년 12월 1일현재 사용하는 어선은?

가. 무동력선

선 명	톤 수	건조년월일	선 명

나. 동력선

선 명	톤 수	건조년월일	선 명

주 : 1. 건조년월일을 알지 못할 때는 「알지못함」이라 쓴다.
2. 선명은 조사원이 건조년월일에 의하여 기재한다.

(2) 지난 1년동안 변동된 어선은?

가. 무동력선

구 분	선 명	톤 수
신규건조한 어 선		
매매한어선		
폐선된어선		

나. 동력선

구 분	선 명	톤 수
신규건조한 어 선		
매매한어선		
폐선된어선		

지정통계 제 26 호

재 고 통 계 조 사 표

조사구및 사업체번호	—	산업 분류		유고 사항	※

(197 년 월분)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사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조 직 형 태
			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동 번지 호	1. 법 인 2. 개 인

일련번호	품목번호	상품명	규격	단위 ※	월초재고량 (전월말재고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중구입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월중출하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과부족 보정량 천 백 십 일	월말재고량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									
2									
3									
4									
5									
6									
7									
8									
9									

종업원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명
	상용고용원	명
	임시고용원	명
	계	명

조사일	197 년 월 일
응답자 성명	㊞
조사자 성명	㊞
지도구 책임자	㊞

적요		
	증감 요인	
	기타	※

기입요령

1.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 병책 「지정품목분류표」에 의함.
2. 월초재고량 : 그달 초일에 사업체가 보유한 상품량 (당월초재고량 = 전월말재고량)
3. 월중구입량 : 그달 중에 외부로 부터 현금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량 (하청제조 도매상의 경우는 위탁제품량)
4. 출하량(판매량 등) : ① 외부에 판매한 것(외상 판매 포함) ② 수출 ③ 견본 또는 선물용 ④ 사무용 또는 급여용 ⑤ 자가소비(재투입)용 등으로 출고한 총량
5. 과부족 보정량 : 그달 중에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한 결손량 또는 반송등에의한 증감량을 말하며 증가(+) 감소(−) 표시한 수량을 기입.
6. 월 말 재 고 량 : 그달의 말일에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전부(이미 판매된 상품의 미출고부분도 포함) 즉 사업체의 관리대장에 기재된 일체의 재고량을 말하며 대장이 없는 업체는 현물 재고 위주로 파악함. 단, 운송 도중품은 도착지에서만 파악하고 생산자로 부터 구입시에는 현물 도착에 불문하고 소유자의 재고로 파악함.

130 재고통계조사

1977년 건설업통계조사표

지정통계 제 27 호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보장됩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지역번호	산업분류	조직형태	종업원규모	자본금규모	총공사액 규모
		※	※	※	※	※	※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소재지는 읍·면·동명과 번지·호수 및 통반까지 정확히 기입.

명 칭 :

대표자 : 전화 :

소재지 :

2. 조직형태 (해당란에 ○표)

(1) 주식회사 ( ) (2) 기타법인 ( ) (3) 개인 ( )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법인에 한하여 기입하되 1977년 12월 31일 현재 불입완료액을 기입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4. 면허종류 면허, 허가 또는 등록종류

(1) 토건, 토목 건축(제 호)
(2) 도 로 포 장(제 호)
(3) 철 강 교(제 호)
(4) 항 만 준 설(제 호)
(5) 색 도 설 치(제 호)
(6) 전 기 공 사(제 호)
(7) 수 도 공 사(제 호)
(8) 전 신 전 화 공 사(제 호)
(9) 기타국세청영업감찰(제 호)

5. 종업원수

1. 노무자를 제외한 피고용자는 매월 급여계산일 현재의 인원을 기입(단, 장기 결근자, 군복무자 제외)
2. 특히 기술자, 기술공, 기능공, 노무자 구분에 대해서는 조사기입 요령서를 잘 읽고 명확히 구분하여 기입할 것.
3.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피고용자는 조사하되 외국에서 현지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는 제외한다.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평균
(1) 피고용자	① 기 술 자														
	② 기 술 공														
	③ 기 능 공														
	노무자 월별투입연인원(A)														
	노무자 월별조업일수(B)														
	노무자 ④ 1일평균인원(A÷B)														
	⑤ 사무및기타종업원														
	소 계 ①+②+③+④+⑤														
(2) 사업주및무급가족종사자															
합 계 (1)+(2)															

6. 연간급여액

1. 연간급여액은 피고용자에게 지불한 급여의 총액으로 미불금도 포함(급료 임금, 수당, 상여금, 현물급여 등. 단, 퇴직금은 제외)
2.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나라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액은 포함하되, 외국에서 현지고용한 외국인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는 제외한다.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구 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기 술 자									(4) 노 무 자								
(2) 기 술 공									(5) 사무및기타종업원								
(3) 기 능 공									합 계								

7. 공사비용

1. 「1.」의 총공사액은 조사항목9의 「(7) 당년도 기성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2. 「213」의 직접노무비는 조사항목6의 「(4) 노무자」에 대한 연간급여액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3. 「222」의 간접노무비는 조사항목6의 연간급여액 합계에서 「(4) 노무자」에 대한 급여액을 제외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4. 「224」의 감가상각비는 조사항목10의 유형고정자산중 「(3) 연간처분및 손해액」의 합계보다 적어야 한다.

구 분				금액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총 공 사 액			당년도 기성액의 합계	
2. 공사비용	21. 직접비	211. 원재료비	발주차급	계약금액 이외에 발주자가 지급한 원재료 금액
			자급	
		212. 외주비		공사일부를 하도급주고 그 댓가로 지불한 가공임 (加工賃)
		213. 직접노무비		공사에 직접 종사한 일용노무자에 대한 급여 (해외공사의 경우 외국인 노무자에 대한 급여는 제외)
		214. 기타직접비		특정공사에 사용한 설계비, 연구비등
		소 계		211+212+213+214
	22.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	221. 간접재료비		내용연수 1년이하 및 상당액 이하의 공구·기구·비품등과 소모품의 구입비용
		222. 간접노무비		공사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기술자, 기술공, 사무직, 잡급등에 대한 급여(해외공사의 경우 외국인 피고용자에 대한 급여제외)
		223. 복리후생비		퇴직금, 각종 위생·보건·레크리에이션의 비용
		224. 감가상각비		유형고정자산의 연간감가상각비
		225. 임차료	장비임차료	건설기계, 장비등을 외부에서 임차한 경우에 지급한 임차료
			지대·집세등	지대, 집세등 기타 임차료(해외공사의 경우 외국인에게 지불한 것은 제외)
		226. 조세공과		영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과 공과금 (해외공사의 경우 외국 정부등에 지불한 것은 제외)
		227. 수선비		유형고정자산의 수리를 외부에 의뢰한 경우에 지급한 경비
		228. 전력·용수·연료·광열		전력·가스 및 동력용 제연료비와 광열비
		229. 기타간접비		여비, 교통비, 운반비, 광고비, 통신비, 접대비, 보험료, 잡비등.
		소 계		221+222+… …229
	합 계			21 + 22
※				1-2

8. 연초, 연말 재고액

1. 평가는 장부가격에 의하되 불능시에는 시가로 평가한다.
2. 하도급공사를 위해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제외한다.
3. (2) 연간증감액 중 감소의 경우에는 수치 앞에 △표를 한다.

구 분	(1) 연초재고(1977. 1. 1. 현재액)							(2) 연간 증감액							(3) 연말재고(1977. 12. 31. 현재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원 재 료																					
(2) 연 료																					
(3) 저 장 품																					
합 계																					

9. 건설공사 내역

1. 공사의 계약년도나 대금수령 여하에 관계없이 당년도에 시공한 완공공사와 차년도로 이월된 계속공사도 기입한다(직영공사 포함).
2. 공사명 기입순서는 건축, 토목, 전문직 공사순으로 기입하고 공종별로 각각 소계를 기입한다.
3. 개별공사별로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약, 착공 및 완공이 동일년도로서 공종, 발주자 및 공사지역의 3개분류와 계약종류가 동일할 경우 여러 공사의 금액을 합산 기입해도 무방함.
4. 계약종류가 하도급인 경우 기성액 및 수주액은 재료비를 제외한 공임, 즉 하도급수입액만을 기입한다.
5. 당년도 기성액과 수주액은 국내원도급공사로서 발주자금원자재(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포함한다. (신가로 환산)
6. 국내건설업체가 아닌 상사회사나 외국의 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만을 경우에는 원도급 공사로 간주한다.
7. 계약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금액란에 최종 확정된 금액을 기입한다.
8. 해외공사인 경우 외화(外貨)표시금액은 연말현재의 한국은행집중기준율에 의한 원화 환산치를 기입한다.
9. 당년도 기성액의 합계는 조사항목7.의 「1.총공사액」과 일치해야 한다.

(1) 일련번호	(2) 공사명 (건축, 토목, 전문직공사 순으로 기입하고 공종별로 각각 소계를 기입)	(3) 공종 분류 (부호기입)	(4) 발주자명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입)	(5) 발주자 분류 (부호기입)	(6) 계약종류 (해당란에○표) 원도급	하도급	(7) 당년도 기성액 (공사완성·대금수회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금 원자재를 포함한 당년도 시공액을 기입)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8) 계약년도	(9) 착공년도	(10) 완공년도	(11) 공사지역 (부호기입)	(12) 수주액 (발주자금 원자재비를 계약금액에 포함기입)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3) 미기성액 (공사대장의 미수령과는 상관없이 발주자금 원자재를 포함한 수주액중 차년도 이월액을 기입)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2							
					1	2							
					1	2							

10. 유형고정자산

1. 연초·연말총액 : 연초·연말현재의 장부가격에 의하되 불가능할 때는 시가에 의함.
2. 연간취득액 및 증개축액 : 구입한 것은 운임·설치비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양수받은 것은 양수당시의 싯가로, 자가건설의 완료인 경우에는 연간 지출한 모든 비용을 기입한다.
3. 연간처분및 손해액 : 매각, 양도, 재해, 도난등으로 인한 감소액과 연간감가상각액을 포함한다. 따라서 연간 처분및 손해액의 합계는 조사항목 7 의 「224. 감가상각비」보다 커야 한다.
4. (4)=(1)+(2)−(3)

구 분	(1) 연초총액(1977. 1. 1 현재액)							(2) 연간취득 및 증개축액							(3) 연간처분 및 손해액							(4) 연말총액(1977. 12. 31 현재액)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토 지																																
2. 건 물																																
3. 구 축 물																																
4. 중 기																																
5. 차량·선박·운반구																																
6. 공구. 기구. 비품																																
7. 건설가계정및기타																																
합 계																																

11. 주요건설기계 보유대수

1. 타업체에 대여한 자기소유 장비는 포함하나 대여받은 장비는 제외한다.
2. 해외반출 소유장비도 포함한다.

구분	기 계 명		분류번호	보유대수 백	보유대수 십	보유대수 일	구분	기 계 명		분류번호	보유대수 백	보유대수 십	보유대수 일
운반기계	덤프트럭	8t 미만	01				굴착기	만능(쇼벨)	1 m³미만	14			
		8t 이상	02					굴착기	1 m³이상	15			
	스크레이퍼	자주식	03				포장기계	콘크리트믹서		16			
		견인식	04					콘크리트휘니셔		17			
	로우더 (적립기)	타이어식	0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8			
		무한궤도식	06					쇄석기(크러셔)		19			
	불도저 (타이어,무한궤도)	10t 미만	07					아스팔트휘니셔		20			
		10 − 19 t	08					콘크리트펌프		21			
		20t 이상	09					생콘크리트수송차		22			
정지전압기계	모터그레이더		10				크레인류	크레인	타이어식	23			
	로오드스태빌라이저		11						무한궤도식	24			
	로오드로울러		12					타우어크레인		25			
공기기계	공기압축기(콤프레서)		13					합 계		26			

12. 적 요

〔기입시 주의사항〕

1. ※ 표가 있는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2. 금액은 천원단위로 기입한다.
3. 공사내역의 공종분류와 발주자분류는 기입요령서를 잘 읽고 명확히 구분하여 그 부호를 기입한다.
4. 하도급공사일지라도 원도급자가 국내건설업체가 아닌 상사회사 또는 외국건설업체인 경우에는 원도급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것.
5. 조달청이 공공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발주자를 확인하여 발주자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6. 조사항목간에는 다음 수식이 성립해야 한다.
   가. 「6. 연간급여액」의 합계
   =「7. 공사비용」의 「213. 직접노무비」+「222. 간접노무비」
   나. 「5. 연간급여액」의 「4. 노무자」에 대한 연간급여액
   =「7. 공사비용」의 「213. 직접노무비」
   다. 「7. 공사비용」의 「1. 총공사액」
   =「9. 건설공사내역」의 「(7) 당년도 기성액」의 합계
   라. 「7. 공사비용」의 「224. 감가상각비」 < 「10. 유형고정자산」의 「(3) 연간처분및 손해액」의 합계.

작성일자 197 . . .

작성자소속 :

전화번호 :

성 명 : ㊞

조사담당자 : ㊞

지도구책임자 : ㊞

심사자성명 : ㊞

별지 제5호서식 (갑)

지정통계 (지정번호 제28호, 건축물착공통계)

기 재 상 주 의
1. ※난은 기재하지 마시오.
2. ⑧⑨⑩⑪ 란은 해당기호(숫자)에 ○표하시오.

처 리 기 간
즉 시

1. 착 공 신 고 서

※ 접수처리확인	
일련번호	
성 명	(인)(직급)

①건 축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②공사감리자	성 명		자 격	
	주 소		전 화	
③공사시공자	성명 및 상호		자 격	건설업 면허 제 호
	주 소		전 화	
④허가번호	□□□□□	⑤허가일자 □□ 년 □□ 월 □□ 일		
⑥공사 예정기간	□□ 년 □□ 월 □□ 일 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⑦건축장소	시도 구시군 동리 ※ □□□□			
⑧지 역	0. 녹지지역 1. 주거전용지역 2. 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상업지역 5. 공업지역 6. 준공업지역 7. 전용공업지역 8. 비지정지역 9. 비도시 계획구역			
⑨지 구	01. 풍치지구 02. 미관지구 03. 고도지구 04. 교육 및 연구지구 05. 업무지구 06. 임항지구 07. 공지지구 08. 보존지구 09. 주차장정비지구 10. 공항지구 11. 자연환경보존지구 12. 특정가구정비지구 13. 방화지구 14. 미지정지구 15. 비도시 계획구역			
⑩건 축 주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4. 영리법인 5. 비영리법인 6. 개인 7. 기타			
⑪공사종별	1. 신축 2. 증축 3. 개축 4. 기타			
⑫주요용도	용건축물 (구체적으로 기입) ※ □□□			
신축공사의경우	⑬대지면적 □□□□□□ 평방미터	⑭건축면적 □□□□□□ 평방미터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197 년 월 일

신고인 인

귀 하

구비서류	수 수 료
동당건축내용	없 음

2803-01-6 (2-1) E (2)
1975. 4. 11 승인

190mm × 268mm (인쇄용지특급 70g/m²)

기 재 상 주 의

1. 용도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입하되 ※ 한 부분은 기재하지 마시오.
2. ⑯⑰⑱㉓㉔㉕㉖ 난은 해당번호에 ○표하시오.
3. ㉓ 이하의 난은 착공신고대상에 주택또는 주택부분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오.
4. 전항에 따라 기재하는 경우에 ㉗ 이하의 난은 이용 구분별로 해당하는 난에만 기재하시오.
   (예 : 자택이면 자택난의 ㉗㉘㉙ 난만 기재)
5. 소숫점 이하는 반올림하시오.

2. 동 당 건 축 내 용

⑬ 용 도		※ □□□□□
골구조	⑯ 골 조	1. 철골조 2. 철골. 철근콘크리트 3. 철근콘크리트조 4. 조적조 5. 목조 6. 기타.
	⑰ 벽 체	1. 세멘트벽돌 2. 적벽돌 3. 콘크리트블록 4. 철근콘크리트 5. 기타
	⑱ 지 붕	1. 스라브 2. 기와 3. 스레트 4. 기타
⑲ 공사부분의연면적		□□□□□ 평방미터
⑳ 건축공사비예정액 (건축설비비포함)		□□□□□□□ 천원

층 수	㉑ 지 상	□□ 층	㉒ 지 하	□□ 층

주택 또는 주택을 포함 할 때

㉓ 공 사 자 금	1. 국민주택자금 2. 민영주택자금 3. 주택공사자금 4. 개인 5. 기타				
㉔ 주 택 의 종 류	1. 전용 2. 1종병영 3. 2종병용				
㉕ 주 택 의 형 태	1. 단독 2. 연립 3. 아파트 4. 기타				
㉖ 이 용 구 분	1. 자 택	2. 급 여	3. 분 양	4. 임 대	5. 기 타
㉗ 주 택 의 호 수					
㉘ 주거전용 바닥면적의 합계					
㉙ 주택 1 호당면적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지정통계 제29호

건설업 수주통계 조사표

(197 년 월분)

제출기한 : 매월 15일

사업체 번호	

Ⅰ. 수주총액 (외부계약액+직영공사액)

단외부계약액은 발주자급원자재 지급계획액포함

(단위 : 천원)

경 제 기 획 원 조 사 통 계 국

발주자별 \ 공종별			1. 건축 ① 주택	1. 건축 ② 사무실, 점포, 숙박시설, 오락장	1. 건축 ③ 공장 창고	1. 건축 ④ 관공서, 학교, 병원	1. 건축 ⑤ 기타 건축	1. 건축 ⑥ 소계 건수	1. 건축 ⑥ 소계 금액	2. 토목 ① 치산치수	2. 토목 ② 농림수산	2. 토목 ③ 도로교량	2. 토목 ④ 항만공항	2. 토목 ⑤ 철도궤도	2. 토목 ⑥ 상하수도	2. 토목 ⑦ 방천, 송전, 변전, 배전	2. 토목 ⑧ 토지조성, 공원, 경기장	2. 토목 ⑨ 댐	2. 토목 ⑩ 기계설치	2. 토목 ⑪ 기타토목	2. 토목 ⑫ 소계 건수	2. 토목 ⑫ 소계 금액	3. 전문직별 건수	3. 전문직별 금액	4. 합계 (1+2+3)
1. 국내공공부문	정부	01																										
	지방자치단체	02																										
	국영기업체	03																										
	기타공공단체	04																										
	계	09																										
2. 국내민간부문	제조업 음식료품	11																										
	제조업 섬유류	12																										
	제조업 화학석유	13																										
	제조업 철강업	14																										
	제조업 기계류	15																										
	제조업 기타제조업	16																										
	제조업 소계	77																										
	비제조업 운수보관	21																										
	비제조업 상업·서비스 금융·보험	22																										
	비제조업 부동산	23																										
	비제조업 광업	24																										
	비제조업 기타비제조업	25																										
	비제조업 소계	88																										
	계	99																										
3. 국내외국기관		00																										
4. 국내합계(1+2+3)		99																										
5 해외수주		00																										
6. 총계(4+5)		99																										

※ 본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산업통계과(74-8176)으로 문의하십시요.

(뒤면에도 기재사항이 있음)

Ⅱ. 국내외 건설공사 수주내역 (직영공사제외)

※모든 공사 내역을 기입할것.

공종세분류	공사명	발주자명(국명)	발주자외주업무(주생산품)	수주액(천원) 합계	수주액(천원) 계약금액	수주액(천원) 발주자급원자재지급계획액	예상공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Ⅲ. 직영공사 (계획 또는 착공) 내역

공종세분류	공사명	발주자명	발주자외주업무(주생산품)	총공사액(천원)

Ⅳ. 비고

기입시 주의사항

1. 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입한다.
2. 본 조사의 수주액에는 ①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액, ② 발주자급 원자재지급 계획액 (해외공사 수주액 조사시에는 제외, 계약당시 실가로 환산) 및 ③ 조사대상 건설업체, 모기업 또는 산하기업의 직영공사액도 포함한다.
3. 모든 건설공사 수주 내역은 조사표 후면의 Ⅱ, 또는 Ⅲ.에 공사건별로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표 전면의 Ⅰ.수주액의 합계금은 조사표 후면의 Ⅱ.및 Ⅲ.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4. 직영공사는 계획액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시는 착공액으로 한다.
5. 국내 타 건설업체로 부터 하도급 받은 수주액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하도급 받은 경우일지라도 외국 건설업체나 국내 종합무역상사 등으로 부터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된다.
6. 해외수주액은 계약당시의 환율(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치로 기입한다.
7.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발생월의 증감액만을 조사표 전면의 공종 및 발주자 세분류 란에 기입하되 증액시에는 (+) 기호를, 감액시에는 (−) 기호를 증감액분 앞에 표시하고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8. 단 한건의 수주액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되 만일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누락분을 즉시 보고 하거나 익월 조사시 포착 조사 기입하고 그 내역을 비고란에 기입한다.
9. 조달청이 공동기관을 대행 발주한 경우에는 원 발주자(실수요자)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10. Ⅱ.항에서 해외공사인 경우 발주자란에 발주국가명을 기입한다.
11. Ⅲ.항의 발주자명은 방제회사의 건설공사를 계약에 의하지 않고 직공할 때의 실수요 회사명을 기입한다.

작성자 :	조사원성명 : ㊞
사업체명 :	
소속 :	
성명 : ㊞	기도원성명 : ㊞
전화번호 :	

지정통계
제 31 호

통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본 기재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 강 통 계 조 사 표

한국철강협회 회장 귀하

지정통계 제 31 호에 의거 철강통계조사표(197 년 월)를 별지와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1. 월중조업일수 일
2. 종업원수
   ① 총 계 _____ 명 ② 사무직 _____ 명 ③ 생산직 _____ 명
3. 급여액
   ① 총 액 _____ 원 ② 사무직 _____ 원 ③ 생상직 _____ 원

조사표 작성자 소 속: (Tel)
성 명: ㊞

19 년 월 일

사업체명 _____

대표자명 _____ ㊞

1010 銑 鐵 統 計

会社名:

作成者: ㊞ 電話

(単位: mt) (月分)

品 目	番号	前月在庫 A	生 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 出 D	国内販売 E	其 他 F	計 G	月末在庫 H
製鋼用銑	11								
鋳物用銑	12								
計	13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1020 合金鉄統計

会社名:

作成者: ㊞ 電話

(単位: mt) (月分)

品 目	番号	前月在庫 A	生 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 出 D	国内販売 E	其 他 F	計 G	月末在庫 H
Fe - Mn	11								
Fe - Si	12								
Si - Mn	13								
Fe - Cr	14								
其 他	15								
計	16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1030 粗 鋼 統 計

会社名:

作成者: ㊞ 電話

(単位: mt) (月分)

品 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転 爐 B	電気爐 C	平 爐 D	計 E	自家消費 F	出荷 輸 出 G	国内販売 H	其 他 I	計 J	月末在庫 K
鋼塊	圧延用	11											
	普通鋼	12											
	特殊鋼	13											
	鍛造用	14											
	普通鋼	15											
	特殊鋼	16											
	小 計	17											
連続鋳造鋼	普通鋼	18											
	빌 뷧	19											
	불 룸	20											
	슬 랩	21											
	特殊鋼	22											
	小 計	23											
鋳鋼	普 通 鋼	24											
	特 殊 鋼	25											
	小 計	26											
計	普 通 鋼	27											
	特 殊 鋼	28											
	合 計	29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1040 鋼半製品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普通鋼	빌렛	11								
	슬랩	12								
	블룸	13								
	쉬이트바	14								
	小計	15								
特殊鋼	빌렛	16								
	슬랩	17								
	블룸	18								
	쉬이트바	19								
	小計	20								
其他		21								
計		22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註：1030 粗鋼統計中 連続鋳造鋼(19 ～ 21)빌렛，슬랩，블룸을 包含.

1050-1 普通鋼 熱間圧延 鋼材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軌条	重軌条	11								
	軽軌条	12								
	附属品	13								
	計	14								
鋼矢板		15								
形鋼	大形	16								
	中形	17								
	小形	18								
	計	19								
棒鋼	大形	20								
	中形	21								
	小形	22								
	計	23								
鐵筋		24								
線材		25								
合計		26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 棒鋼：丸鋼．角鋼．六角鋼．平鋼包含

1050-2 普通鋼 熱間圧延 鋼材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鋼板	厚板	27								
	中板	28								
	薄板	29								
	計	30								
硅素鋼板		31								
廣幅帯鋼		32								
狭幅帯鋼		33								
外輪		34								
其他品目		35								
		36								
		37								
合計		38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1060 普通鋼冷間圧延鋼材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冷延鋼材	広幅帯鋼	11								
	狭幅帯鋼	12								
	冷延薄板	13								
	硅素鋼板	14								
	小計	15								
鍍金鋼材	錫鍍鋼板	16								
	亜鉛鍍鋼板	17								
	其他鍍金鋼板	18								
	小計	19								
簡易鋼矢板		20								
軽量形鋼		21								
計		22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1070 鋼管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無継目鋼管	11								
鍛接鋼管	12								
電気熔接鋼管	13								
アヨ熔接鋼管	14								
小計	15								
冷間引抜鋼管	16								
鍍金鋼管	17								
小計	18								
計	19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1080 鋼管用途別 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普通鋼鋼管	配管用鋼管	11								
	特殊配管用鋼管	12								
	油井用鋼管	13								
	電線管	14								
	構造用管	15								
	其他	16								
	小計	17								
特殊鋼鋼管		18								
合計		19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1090 鋳鐵管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直管	11								
異形管	12								
其他	13								
計	14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2000 鋳鍛鋼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鋳鋼品	普通鋼		11								
	特殊鋼		12								
	計		13								
鍛鋼品	普通鋼	自由鍛造	14								
		型鍛造	15								
		小計	16								
	特殊鋼	自由鍛造	17								
		型鍛造	18								
		小計	19								
	計		20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2010 特殊鋼用途別統計

会社名：

作成者： ㊞ 電話

(単位：mt)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工具鋼	炭素工具鋼	11								
	合金工具鋼	12								
	高速度工具鋼	13								
	中空鋼	14								
	其他工具鋼	15								
	小計	16								
構造用鋼	機械構造用炭素鋼	17								
	構造用合金鋼	18								
	小計	19								
特殊用途鋼	Spring鋼	20								
	軸受鋼	21								
	Stainless鋼	22								
	耐熱鋼	23								
	快削鋼	24								
	Piano線材	25								
	高張力鋼	26								
	高Mn鋼	27								
	小計	28								
計		29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 Stainless鋼: Stainless鋼板包含

2020 特殊鋼圧延鋼材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月分)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熱間圧延	形鋼	11								
	棒鋼	12								
	線材	13								
	鋼板	14								
	帯鋼	15								
	小計	16								
冷間圧延	広幅帯鋼	17								
	狭幅帯鋼	18								
	冷延鋼板	19								
	小計	20								
計		21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 冷延鋼板：Stainless鋼板 包含

2030 鋳物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月分)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出荷 国内販売 E	出荷 其他 F	出荷 計 G	月末在庫 H
鐵鋳物	銑鐵鋳物 銑鐵鋳物	11								
	銑鐵鋳物 球状黒鉛鋳鐵	12								
	銑鐵鋳物 小計	13								
	鋳鐵管	14								
	可鍛鋳鐵	15								
	鋳鋼	16								
	小計	17								
非鐵鋳物	銅合金	18								
	軽合金	19								
	ダイカスト	20								
	小計	21								
合計		22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2040 鋳物用途別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mt) (月分)

		番号	産業機械器具用	土木建設鉱山機械	金属工作加工機械用	로울러用	繊維機械器具用	鋳型鋳型定盤用	農機具漁具用	電気機器通信機器用	自動車用	産業車輌自転車鐵道用	港湾船舶用	日用品用	其他用	合計
鐵鋳物	銑鐵鋳物 銑鐵鋳物	11														
	銑鐵鋳物 球状黒鉛鋳鐵	12														
	銑鐵鋳物 小計	13														
	鋳鐵管	14														
	可鍛鋳鐵	15														
	鋳鋼	16														
	小計	17														
非鐵鋳物	銅合金	18														
	軽合金	19														
	ダイカスト	20														
	小計	21														
合計		22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3010 二次製品統計

会社名：

(単位：mt)　　(　　月分)　　作成者：　　(印)　電話

品目		番号	前月在庫 A	生産 B	自家消費 C	出荷 輸出 D	国内販売 E	其他 F	計 G	月末在庫 H
普通鋼	磨棒鋼	11								
	鐵線	12								
	硬鋼線	13								
	熔接棒心線및電信用素線	14								
	亜鉛鍍鐵線	15								
	亜鉛鍍硬鋼線	16								
	小計	17								
特殊鋼	磨棒鋼	18								
	P・C鋼線	19								
	Spring	20								
	Stainless鋼線	21								
	其他特殊鋼線	22								
	小計	23								
加工製品	鋼索	24								
	鐵網	25								
	網	26								
	電気熔接棒	27								
	Expanded Metal	28								
	食罐및雑罐	29								
	熔接H形鋼	30								
	小計	31								
計		32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3020 鐵構造物需給統計

会社名：

(単位：mt)　　(　　月分)　　作成者：　　(印)　電話

品目		番号	前月在庫	生産	自家消費	出荷 輸出	国内販売	其他	計	月末在庫
鐵骨	建物	11								
	工場	12								
	小計	13								
鐵橋		14								
鐵塔		15								
水門		16								
TAHK類		17								
其他		18								
計		19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4010 用途別受注統計

会社名：

(単位：mt)　　(　　月分)　　作成者：　　(印)　電話

用途分類		番号	品目 A	B	C	D	E
製造業 a	組立金属製品機械装備 組立金属製品製造用	11					
	機械製造用	12					
	電気機械器具製造用	13					
	運送装備製造用 船舶建造및修繕用	14					
	鉄道装備製造用	15					
	自動車製造用	16					
	Motor cycle및自転車製造用	17					
	航空機製造및修繕用	18					
	其他	19					
	小計	20					
	其他専門科学測定및制御	21					
	写真및光学製品製造用	22					
	其他製造業	23					
	計	24					
建設業 b	建築建設用	25					
	土木建設用	26					
	其他建設用	27					
	計	28					
c 鐵鋼業内部流通		29					
d 販売業者(都売業者)用		30					
e 輸出		31					
計 (a+b+c+d+e)		32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註：A, B …… E란에는 品目名을 記入

5010 原副材料需給統計

会社名：

(単位：mt)　　(　　月分)　　作成者：　　(印)　電話

品目	番号	前月在庫	国内購入	輸入	自家発生	計	自家消費	出荷 国内販売	輸出	計	自当使用量	月末在庫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註：生産品에 投入되는 原副材料 品目名을 記入

6010 鐵鋼材(鑄物類包含)輸出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金額：$，物量：mt)　　(　　月分)

品目	CCCN	区分	計	国別 A 美国	B	C	D	E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註：A.B.……E란에는　輸出　国名을　記入.　物量(MT)　金額($)

6020 鐵鋼材輸入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単位：金額：$，物量：mt)　　(　　月分)

品目	CCCN	区分	計	国別 A 日本	B	C	D	E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物量						
		金額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註：A.B……E란에는　輸入国名을　記入：物量(MT)　金額($)

7010 燃料　및　用水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　　月分)

区分	単位	番号	前月在庫	輸入(国内購入)	生産(発生)	消費 製銑	合金鐵	製鋼	圧延	鋼管	鑄鋼(物)	鍛鋼(造)	加工	コークス製造			計	月末在庫
Bunker-油	kℓ	11																
重油	〃	12																
軽油	〃	13																
燈油	〃	14																
コークス	t	15																
酸素	千N㎥	16																
高爐GAS	〃	17																
コークス爐GAS	〃	18																
電力 契約電力	千kwH	19																
電力 自家発電	〃	20																
電極棒	t	21																
用水	千㎥ ㎥=t	22																
其他(　　)		23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　註：用水는　工業用水임

8010 労動統計

会社名：

作成者：　　(印)　電話

(　　月分)

従業員数	職級別	計	生産従業員	事務其他従業員								
	学歴別	計	大卒以上	高卒以上	高卒未満							
	年齢別	計	20歳未満	20～25歳	26～30歳	31～35歳	36～40歳	41～45歳	46～50歳	50歳以上		
	分野別	計	製銑	合金鐵	製鋼	圧延	鋼管	鑄鋼	鍛造	加工	生産補助	行政支援
総労動時間												
賃金		計	生産従業員	事務其他従業員								
	月人当平均											
	総額											
災害		計	製銑	合金鐵	製鋼	圧延	鋼管	鑄鋼	鍛造	加工	生産補助	行政支援
	死亡											
	重傷											
	軽傷											
	不休業											
	強度率											
	度数率											

増減要因　및　特記事項

註：強度率 $= \frac{\text{死傷者数}}{\text{総労動時間数}} \times$ 百萬，　度数率 $= \frac{\text{労動損失日数}}{\text{総労動時間数}} \times$ 千

경제기획원장관승인 지 정 통 계	제32호

한국전자공업실태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 8조 및 9조에 의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귀업체의 비밀은 보호됩니다.

197 년 월분

(1)사 업 체 명		(2)소 재 지	본 사		(3)전화	
			공 장		(4)전화	
(5)대 표 자 명		(6)작 성 자	소속 : 직명 : 성명			
(7)설립년월일		(8)투 자 별	내국인업체	합 작 업 체	외국인업체	
(9)부 지	m² ( ) 평	(11)자 본 금	총 액	내 자	외 자	
(10)건 물	m² ( ) 평		천원	천원	천 $	

(1)사 업 체 명 : 전자공업등록시 공장등록증에 기록된 공장명을 기록하십시요.

(2)소재지 : 현 위치의 주소를 적되 본사와 공장을 구분하여 정확한 주소를 기록하시요.

(3)(4)전화 : 공장 및 본사 전화 번호를 구분하여 기입하시요.

(5)대 표 자 명 : 귀업체의 소속장 성명을 한자로 기입하시요.

(6)작성자 : 담당부서의 과장 명을 기입하시요.

(7)설립년월일 : 전자공업등록증에 기록된 설립년월일을 기록하시요.

(8)투자별 : 투자형태에 따라 해당부문 아래에 O표로 표기하시요.

(9)부 지 :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 일체를 말합니다.

(10)건 물 : 공장건물 평수만을 기록하시요

(11)자본금 : 총액～(내자)＋(외자)
내자～자기자본 및 국내융자 및 차입금 포함
외자～외국은행차입금 및 합작투자금

제출기한 : 매월 10일까지

한 국 정 밀 기 기 센 터

1. 생산 및 출하

(12)품목번호 : 별책(부록)에 기재된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 Cord No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13)품 목 명 : 귀업체에서 있는 제품명을 별책(부록)에서 찾아 정확한 Cord No와 제품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14)생산능력 : 월간 전공장을 가동했을때의 최대생산량을 기입하시요. 금액은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기록하시요.
(15)월초재고 : 월말에 귀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전재고품 당월초재고량＝전월말재고량
(16)생 산 : 월 1 일부터 말일까지 총생산실적을 기록하시요.
(17)출하(판매량) : (수출)＋(시판)
(18)수출 : 통관기준 수량과 금액을 말함
국 명 : 수출국명을 정확히 기록하십시요.
(19)시 판 :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된량을 말하며 타업체에 판매했을때나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도 포함시킵니다. (Local 수출도 포함시켜야 됨)
(20)자 가 소 비 : 1차제품을 다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한량(재투입량)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21)과부족보정 : 월중 재해도난등에 의한 결손량
(22)월 말 재 고 : [(월초재고량)＋(생산)]－[(출하량)＋(자가소비량)＋과부족보정

(12)품목번호	(13)품 목 명	※유고사항	규격	단위	(14)월생산능력		(15)월 초 재고(전월말재고)		(16)생 산		(17)출하(판매)								(20)자 가 소 비(재 투 입)		(21)과부족보정		(22)월말재고	
													국 명	(18)수 출		(19)시 판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 $	수 량	금 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II. 원재료 조달

(23)원재료명 : 수입면장(I/L)에 기록된 원재료명 기록난 초마시는 I/L Copy 첨부우송
(24)구 분 : 수입조달은 2 에 국내조달은 1에 각각 구분하여 ○표 하시오.
(25)월초재고 : (15)항과 동일
(26)구 입 : 월중 외부로부터 구입했거나 수입한량.
(27)자가생산 : 직접 생산한 원재료량을 기록하시요.
(28)사 용 :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량을 말함.
(29)과부족보정 : (21)와 동일.
(30)월 말 재 고 : (22)와. 동일.

(23)원 재 료 명	※유고사항	규격	단위	(24)구 분		(25)월초재고(전월말재고)		(26)구 입		(27)자 가 생 산		(28)사 용		(29)과부족보정		(30)월말재고	
				국 산	수 입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천원)	수 량	금 액(천원)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경 유			M/T	1													
중 유			Kℓ	1													
방 카 c 유			Kℓ	1													
전 력			KWH	1													

Ⅲ. 고용 및 급여

(31) 중 역 :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만을 말합니다.
(32) 기술자 : 이공계 대학출신자 또는 동등의 자격을 가진자
(단) 기술업무를 기획 감독, 집행하는자 엔지니어)
(33) 기술공 : 이공계 전문학교 및 이공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전문분야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소지자
(단) 기능공의 직상위자로서 기기시험, 점검 및 보수업무 종사자)
(34) 기능공 : 단순기기 및 부품조립공으로서 기술공직 하위자를 말함
(35) 사무직 : 중역을 제외한 일반 사무원으로서 기술업무를 실무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을 말합니다. (예 : 총무과원, 경리과원, 업무과원등)
(36) 기 타 : 기술적인면을 떠난 노무자로서 예를들면 잡부(청소원 수위, 목공등)
(37) 생산종업원 : 직종별로 남여구분하여 기록하여 주십시요.
(38)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 : 보수를 받지 않는 사업주 및 가족
(39) 소 계 : 생산종업원과.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를 남여로 구분한 소계입니다.
(40) 월중근무인원수 : 1일1인8시간 기준함
(41) 월중급여액 : 직종별로 원에 지급된 급여액을 말합니다.

구 분			(31) 중 역	(32) 기술자	(33) 기술공	(34) 기능공	(35) 사무직	(36) 기 타	계
고용자	(37) 생산종업원	남							
		여							
	(38) 자영업주및 무급종사자	남							
		여							
	(39) 소 계	남							
		여							
(40)월중근무 인원수 (명)		남							
		여							
(41)월중급여액 (천원)		남							
		여							

(42) 월간 작업 일수(　　일)
※ 1일 8시간 기준
(1개월간 전가동시간÷8) = 월간작업일수

가 일반적인유의사항

1.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잉크나 볼펜으로 기입란에 정확히 맞도록 깨끗이 작성할 것.
2. 숫자는 1. 2. 3……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할 것
   기입한 숫자는 혼돈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여 기입할 것
3. 각수량과 금액은 단위미만은 4사5입하여야 한다.
4. 단위는 조사표 상우단( )에 또는 단위란에 명시된 단위를 사용하고 업체와 상의할 때는 지정단위로 한다.
5. 오기사항을 정정할 때는 전색으로 횡선을 두줄로 긋고 바로위에 청색 볼펜으로 기입한다.
   단, 오기된 사항은 칼로 지워서는 안된다.
6. 작성담당자명은 담당과에 과장이 된다.
7. 사업체명, 대표자명은 한문으로 써야 한다.
8. ※표가 있는 곳은 기입하지 말 것

(43) 〈생산〉
※ 해당사항에 ○표를 하십시요
○ 계절적수요(증가, 감소)
○ 해외주문 (증가, 감소)
○ 시설(증설, 보수 또는 노후)
○ 원재료구입(월활, 부진)
○ 기타(구체적사항기업)

(44) 〈출하〉
※ 해당사항에 ○표를 하십시요
○ 계절적수요(증가, 감소)
○ 수출 (증가, 감소)
○ 가격(등락, 하락) (증가, 감소)
○ 기타 (구체적 사항기입)

○ 이조사표에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본 FIC 조사통계과로 연락하여 주십시요

전화 (직) 86－8839
(교) 85－0611－0615

본 넬 곳
150－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222－13
한국정밀기기센터
전자사업부
조사통계과

지정통계일람표

지정번호	지정통계의 명칭	조사실시기관	고시년월일	고시번호
1	인구센서스	경제기획원	62. 6. 1	3호
2	주택센서스	〃	〃	〃
3	인구동태조사	〃	〃	〃
4	경제활동인구조사	〃	〃	〃
5	농업센서스	농수산부	〃	〃
6	광공업센서스	경제기획원	〃	〃
7	상주인구조사	서울시·부산시 각도	62. 6. 16	4호
8	농가경제조사	농수산부	62. 12. 8	6호
9	농산물생산비조사	〃	〃	〃
10	가계조사	경제기획원	〃	〃
11	생산동태조사	〃	64. 10. 23	16호
12	농촌물가 및 임료금조사	농협중앙회	65. 1. 22	17호
13	전국소매물가조사	경제기획원	67. 2. 27	1호
14	도소매업센서스	〃	67. 5. 29	2호
15	식량작물생산량조사	농수산부	〃	〃
16	농업기본통계조사	〃	68. 4. 18	25호
17	광공업통계조사	경제기획원	〃	〃
18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노동청	68. 4. 18	25호
19	매월노동통계조사	〃	〃	〃
20	직종별임금조사	〃	〃	〃
21	국부통계조사		68. 11. 21	51호
21의 1호	정부공공단체자산부문조사	한국은행	〃	〃
21의 2호	법인자산부문조사	한국산업은행	〃	〃
21의 3호	개인자산부문조사	농수산부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	〃
21의 4호	가계자산부문조사	경제기획원	〃	〃
22	어업센서스	농수산부	69. 4. 11	2호
23	광공업동태조사	경제기획원	70. 3. 23	2호
24	어업생산고조사	농수산부	70. 12. 2	5호
25	어업기본통계조사	〃	71. 7. 9	1호
26	재고통계조사	경제기획원	74. 11. 13	2호
27	건설업통계조사	〃	〃	3호
28	건축물착공통계	건설부	75. 3. 28	2호
29	건설업수주통계조사	경제기획원	76. 7. 26	6호
30	가축통계조사	농수산부	76. 12. 17	9호
31	철강통계조사	한국철강협회	77. 3. 21	13호
32	한국전자공업실태조사	한국정밀기기센터	77. 12. 29	19호